

연구보고서	2003-02
-------	---------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유길상, 김복순, 성재민

책머리에 부쳐

고용보험제도의 핵심사업인 실업급여는 가장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노력을 약화시켜 실업기간을 늘리고 실업률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칠 수도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 제한 등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대신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실업 기간, 재취업의 방법과 구직 노력 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실업급여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실업급여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본 연구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실업급여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실업급여의 발전에 필요한 매우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최초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의 자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DB의 자료에 없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취업 행태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취업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 자료의 참신성과 정확성 면에서도 우리나라 실업급여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는바, 본 연구가 실업급여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본 연구는 본원의 유길상 부원장 겸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분석은 김복순 연구원과 성재민 연구원이 유길상 부원장을 도와 수행하였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추적조사는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한 후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매우 어려운 조사였는데, 어려운 실태조사를 잘 수행해 준 조사업체와 응답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고용보험 DB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협조해 주신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관계자와 연구수행 과정에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학계 및 노동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필자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아울러 자료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박혁 연구원과 나지은 연구조원, 출판을 담당한 박찬영 전문위원과 정철 책임연구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필자들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3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원 덕

목 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6
제3절 보고서의 구성	9
제2장 실업급여의 개요와 지급 추이	11
제1절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개요	11
1. 구직급여	11
2. 취직촉진수당	13
제2절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지급액 추이	16
1. 개 요	16
2. 구직급여 수혜율 추이	19
3.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추이	23
4.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평균 실업급여 수급일수 및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비중	24
5.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	27
제3절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급률 간의 상관관계	30

제3장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35
제1절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	35
1.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 I : 빈도분석	36
2.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 II : 로짓(Logit) 분석	45
제2절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	52
1.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 I: 빈도분석	52
2.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II: 로짓분석	57
제3절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성	63
1.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성 I: 빈도분석	63
2.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성II: 로짓분석	68
제4장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행태	72
제1절 실업급여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73
1. 직장탐색이론	73
2. 균형이론	75
3. 실업급여의 효과에 관한 주요 실증연구	76
제2절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취업 행태 비교	79
1.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취업 상태	79
2.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이직사유 및 재취업 준비 여부 비교	81
3.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구직활동 비교	82
제3절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 비교	89
1.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탈출률	89
2. 고용보험 DB 자료를 활용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탈출률	93
제4절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98

1.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98
2. 취업알선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105
3.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	111
제5장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규모와 특성	127
제1절 반복수급자의 규모 및 동향	127
제2절 반복수급자의 특성	130
제6장 미취업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134
제1절 미취업자의 특성	134
1. 미취업자의 특성 I: 빈도분석	134
2. 미취업자의 특성 II: 로짓분석	142
제2절 미취업자의 재취업 행태	145
제7장 결론 및 정책과제	156
참고문헌	170
부 록 :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설문지	175

표 목 차

<표 2-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13
<표 2- 2> 실업급여의 종류	15
<표 2- 3> 실업급여 내역별 수급자수 및 지급액 추이	17
<표 2- 4> 구직급여 연장제도의 연도별 수급자 및 지급액 추이	18
<표 2-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별 분포 현황	19
<표 2- 6> 실업급여 신청자 및 실업 인정자 비율 추이	20
<표 2- 7> 구직급여 수혜율 추이(1996년 하반기~2001년)	21
<표 2- 8> 특별연장급여 신청 시점별 특별연장급여 소진율	24
<표 2- 9>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일수별 분포	25
<표 2-10> 구직급여 수급자 대비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비중	26
<표 2-1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평균실업급여 수급일수	26
<표 2-12>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추이	28
<표 2-13> 구직급여일액별 분포 및 평균구직급여일액 추이	29
<표 2-14> 실직 후 구직급여 신청시까지 평균 소요기간	31
<표 2-15> 실업자수와 구직급여 수급자수 간의 상관관계	31
<표 2-16> 실업률과 구직급여 수급률 간의 상관관계	33
<표 2-17>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급률 간의 상관관계	34
<표 3- 1> 성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피보험자의 분포	36
<표 3-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성별·사업장 규모별 비자 발적 이직자의 비중(2000년)	37
<표 3- 3> 학력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피보험자의 비중	38
<표 3- 4> 학력별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중	38
<표 3- 5> 전 직장 사업장 규모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피보험자 비중	39

<표 3- 6> 직종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피보험자 비중	40
<표 3- 7> 연령계층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피보험자 비중	41
<표 3- 8> 전 직장 근속기간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비중	41
<표 3- 9> 피보험기간 및 연령계층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수급자 비중(2001년 상반기)	42
<표 3-10> 피보험기간 및 연령계층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2001년 상반기)	43
<표 3-11> 산업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피보험자의 비중	43
<표 3-12> 구직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월평균임금의 분포	44
<표 3-13> 변수의 정의 및 분포	47
<표 3-14>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48
<표 3-15>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여부별 분포(2001년)	55
<표 3-16>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집단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비중(2001년)	57
<표 3-17>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여부별 이직 전 월평균임금 (2001년)	57
<표 3-18>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I (2001년)	61
<표 3-19>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II: 성·연령·학력 통제(2001년)	62
<표 3-20> 구직급여 수급자 중 특별연장급여 수급 여부별 분포	66
<표 3-21> 특별연장급여 수급 여부별 이직 전 평균임금수준·이직 직장 근속기간	67
<표 3-23>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70
<표 4- 1>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취업 상태 비교	80
<표 4- 2> 이직 후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구직활동 내용(재취업 경험자 대상)	84

<표 4- 3> 이직 후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구직활동 기간	84
<표 4- 4> 이직 후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알아본 일자리 수	85
<표 4- 5> 이직 후 한 달 이내에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구하게 된 배경	85
<표 4- 6>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87
<표 4- 7> 2000년 상반기 구직급여 신규 수급자의 구직급여 소진율	88
<표 4- 8> 실업급여 소진 후의 구직활동 노력의 변화	88
<표 4- 9>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실업기간 경과에 따른 탈출률	91
<표 4-10> 소정급여일수별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으로부터 취업으로의 탈출률(2000년)	94
<표 4-11> 재취업 경험 유무에 대한 로짓분석	103
<표 4-12> 재취업률에 관한 해저드 분석 결과	104
<표 4-13> 취업상담 받은 사람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110
<표 4-14> 취업상담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와 취업 상담 받은 이유의 교차빈도	111
<표 4-15> 재취업자의 성별·연령계층별 이직 전후 월평균 임금 수준 변화	113
<표 4-16> 재취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이직 전후 월평균 임금수준의 변화	113
<표 4-17> 재취업자 중 이직사유별 이직 전후 월평균 임금수준	115
<표 4-18> 재취업시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116
<표 4-19> 이직 후 재취업 경험자 중 첫 직장 계속 근무 여부	118
<표 4-20> 재취업자의 재취업 후 첫 직장에서의 계속 근무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119
<표 4-21>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직장 고용형태	120
<표 4-22>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직장 근무시간 형태	120
<표 4-23> 이직 후 재취업 경험자 중 재실업자 비율	120

<표 4-24> 재취업 경험자 중 재실업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121
<표 4-25> 이직 후 재취업한 첫 직장의 이직사유	123
<표 4-26>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직장 만족도	124
<표 4-27>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직장에 대한 종합 만족도	125
<표 4-28>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직장 유지 희망 여부	125
<표 5- 1>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규모 추이	128
<표 5- 2> 실업급여 반복수급 횟수별 인원 및 구성비	129
<표 5- 3> 반복수급자의 수급간 기간분포	129
<표 5- 4> 반복수급자 특성 분석	132
<표 6- 1> 미취업자의 특성	135
<표 6- 2> 미취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재취업 경험 유무	137
<표 6- 3> 미취업자의 이직 전 월평균임금, 희망임금 및 의중 임금	139
<표 6- 4> 미취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여부별 성별 이직전 월평균 임금과 의중임금수준	140
<표 6- 5> 미취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여부별 연령계층별 이직전 월평균임금과 의중임금 수준	141
<표 6- 6> 미취업자 중 이직사유별 이직 전 월평균임금과 의중 임금 수준	141
<표 6- 7> 미취업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144
<표 6- 8> 미취업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 및 실망실업자 비율	146
<표 6- 9>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I)	146
<표 6-10>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II)	148
<표 6-11>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	148
<표 6-12>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의 희망 고용형태	149
<표 6-13>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무시간 형태	149
<표 6-14>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150

<표 6-15> 재취업자의 구직방법	151
<표 6-16> 취업 제의를 받아본 횟수	152
<표 6-17> 취업 제의를 거절한 이유	152
<표 6-18> 미취업자 스스로 생각하는 재취업 가능성	154
<표 6-19> 미취업자의 월평균 희망임금 및 의중임금 수준	154

그림목차

[그림 2- 1] 구직급여 수혜율의 월별 추이(1996년 7월~2001년 12월)	21
[그림 2- 2] 실업급여 신규수급자 중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비중	23
[그림 2- 3] 월별 실업자수와 구직급여 수급자수 추이 (1996년 7월~2001년 12월)	32
[그림 2- 4] 월별 실업률과 구직급여 수급률 추이 (1996년 7월~2001년 12월)	32
[그림 2- 5] 월별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급률 추이 (1996년 7월~2001년 12월)	33
[그림 4- 1] 취업 제의를 받은 곳에 취업하지 않은 이유	83
[그림 4- 2] 이직 후 구직방법	86
[그림 4- 3]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실업기간 경과에 따른 탈출률	92
[그림 4- 4] 일본의 45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 경과에 따른 재취업률	92
[그림 4- 5] 소정급여일수별 탈출률(전체, 90일, 120일)	95
[그림 4- 6] 소정급여일수별 탈출률(전체, 90일, 150일)	96
[그림 4- 7] 소정급여일수별 탈출률(전체, 90일, 180일)	96
[그림 4- 8] 소정급여일수별 탈출률(전체, 90일, 210일)	97
[그림 4- 9] 소정급여일수별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으로부터 취업으로의 탈출률	97
[그림 4-10] 임금수준 및 직장탐색기간의 결정	106
[그림 4-11] 고용정보제공이 구직자의 임금 및 직장탐색기간에	

미치는 영향	107
[그림 4-12]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 성별 이직 전후 임금변화율 비교	114
[그림 4-13]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직장 만족도	125
[그림 6- 1] 미취업자 스스로 생각하는 구직시의 장애요인	155

요약

199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써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계를 안정시켜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 노력을 약화시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업급여가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실업급여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의 지급 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업급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가, 실업급여가 과연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이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구직활동 노력을 약화시키고 실업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 서비스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이직 후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미취업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6가지 관점에서 고용보험 DB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

ii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추적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이직 전 임금의 50%이지만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은 약 45%이며,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시행된 바 있었던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66.4%가 받았고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의 평균지급기간을 35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업급여 수급자수와 수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청년층에 비하여 중·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성(gender)과 연령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취약계층인 여성과 중·고령자의 보호에 실업급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과 학력수준의 측면에서는 저임금·저학력의 사회적 한계계층보다는 고임금·고학력의 사회적 상위계층이 실직급여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특별연장급여는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 등 한계실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보다도 고학력자인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으며,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단순노무직보다도 더 높고, 이직 전 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주로 대기업과 금융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고임금·고학력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

도 한계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수혜자들을 보면 사회적 우위계층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연유한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사회적 한계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는데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비수급자에 비하여 실업기간이 길고 재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2000년 4~6월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 조사 결과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및 노동시장의 여건, 기업의 채용 및 고용조정 관행 등의 변화,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시점의 조사 결과만으로 실업급여가 수급자의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분석 결과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별로는 실업급여 비수급자를 제외하면 여자의 재취업 경험이 남자에 비하여 낮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며, 여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남자에 비하여 높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의 연령계층에 비해 50대 이상의 연령계층의 재취업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고,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재취업 경

험과 재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직 후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수입은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수입이 없더라도 실업기간 동안에 생계의 위협을 덜 느끼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수입이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수입이 없으면 실업기간 동안에 생계의 위협을 크게 느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되고 배우자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배우자의 수입이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에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실업급여가 시간을 갖고 보다 적합한 직장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는 달리 구직급여를 모두 소진한 시점을 전후하여 재취업률이 급증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게을리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업급여는 실업기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재취업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취업한 직장의 임금, 취업의 안정성, 근로환경,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사고과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하여 비수급자의 만족도가 미세하나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지후생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

급자의 만족도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재의 직장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에 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다소 낮았다.

넷째,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알선 서비스의 효과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실업인정 과정의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저연령·고학력의 남성이 주로 취업알선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취업알선 서비스가 필요한 여성과 중·고령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과 상담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알선 서비스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소극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취업상담을 받은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받은 사람이 취업상담의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안정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구직자의 태도가 재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섯째, 1996년 7월부터 2001년 말까지의 5년 반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사람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4.1%로서 미국의 40.1%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그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9.9%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문제는 주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노동이동이 잦은 청년층이나 교육수준과 숙련 정도가 낮고 임금이 낮은 주변노동력계층이 아니라 전 직장의 임금이 비교적 높고 연령이 많으며 전문대학 정도의 학력을 가진 계층의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미취업자 중 고령 등을 이유로 취업을 완전히 포기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미취업 실업급여 수급자의 15.4%, 미취업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24.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미취업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재취업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업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취업자의 특성을 보면 실업급여 비수급자보다는 수급자가, 성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연령계층별로는 30세 미만에 비하여 30세 이상이 미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는 중졸 이하의 학력자가 미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나 비수급자 모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의 미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는 재취업을 위해 의중임금을 이직 전의 임금에 비해 크게 낮추고 재취업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의 절대적인 부족, 학력·기술·기능의 부족, 연령 및 성에 의한 차별, 취업·창업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재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성 및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노동시장정보체계의 효율화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업급여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재취업의 행태, 그리고 재취업된 직장의 질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기간과 재취업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실업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길고 재취업률도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고학력자, 정규직, 고임금근로자 등 사회적 상위계층이 더 높다는 사실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실업급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계계층의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최소화하여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수준, 소정급여일수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은 물론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노동시장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수준, 소정급여일수 등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실업급여제도를 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고용안정, 상담 공간 등의 시설 확충, 상담원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상담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한계근로자를 집중적으로 취업알선할 수 있는 실업자 프로파일링제도의 시행, 인터넷을 통한 노동시장정보 제공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의 혁신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인프라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매우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 나타난 문제점 중의 상당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해소된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나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실업급여제도는 가장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으로 인한 비용과 고통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intensity)를 약화시켜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늘리고 실업률을 높일 가능성과 함께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한결같이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칠 수도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제한제도 등을 매우 조심스럽게 설계하여 운용하고 있다. 즉 실업이 발생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수급요건(qualifications)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자발적 이직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자,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수강 권고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2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실증연구에서는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때로는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다¹⁾.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업급여가 초래할지도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요건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대신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이직 전 18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31조). 일정한 기준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의 피보험기간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다. 이 요건은 생업을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비교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실업급여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일시적·간헐적으로만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가 고의로 실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직 전 18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을 새로이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32조 제4항 제1호 및 제41조 제3항). 이 규정은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향이 강하다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이 채택한 것으로서 악의적인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며, 2주에 한 번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지난 2

1) 당시에는 실업발생 전 18월의 기준기간 중 12월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95. 7.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자도 1996. 7. 1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주 동안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있다는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용보험법 제33조 및 제34조). 이러한 실업의 인정과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은 하지 않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려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상담원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을 하여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넷째, 구직급여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3월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의 단기간 동안만 지급하되, 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과 연계하여 연령이 많고 피보험기간이 긴 수급자격자가 상대적으로 더 오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용보험법 제41조).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replacement rate)을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50%로 한 것은 과도한 실업급여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선진국의 경험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계한 것은 실업이 없이 고용보험에 오랫동안 가입한 피보험자를 우대하여 피보험자 스스로 본인의 실업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젊은 연령계층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당해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기간 동안에는 2년까지 구직급여의 지급을 연장하여 훈련수강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수강을 유도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여섯째,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적절한 취업알선이나 직업지도·직업훈련수강 등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일시 정지하여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일곱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 및

4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추징금을 징수한다(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

여덟째,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의 취직촉진수당 제도를 두고 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내지 제53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요건은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는 대신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실업급여가 초래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실업기간, 재취업의 방법과 구직노력 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실업급여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실업급여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의 지급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업급여가 수급자에게 어느 정도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수,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실업급여 발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실업의 발생확률은 사회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므로 어떤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가를 분석하여 실업급여제도가 사회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실업을 당하지 않은 피보험자와 실업은 되었으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비수급자²⁾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성, 연령,

2) 본 연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라 함은 이직일 이전 18월의 기간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차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실업급여 비수급자' 또는 '비수급자'라 함은 이직일 이전 18월의 기간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차적인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실업급여 비수급자' 또

학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한계근로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이 우리나라에서 맞는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특별연장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차례대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실업기간, 재취업 노력과 구직방법, 재취업의 질 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즉 실업급여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업급여의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재취업에 대한 준비가 없이 회사 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실업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실업기간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 가능성이 높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재취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사람의 비중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재취업을 하더라도 이직 전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재취업된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지난 2주 동안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였음을 입증하고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받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은 비수급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을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실업기간, 재취업률, 재취업의 질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하여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발

는 ‘비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직일 이전 18월의 기간 중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차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에 비하여 피보험고용기간 자체가 달라 본 연구의 ‘실업급여 비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6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과정을 통해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서비스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의 촉진에 정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직업안정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향후 직업안정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섯째, 선진국의 경우 일부 계층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향이 강한지를 분석하여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여섯째, 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미취업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 행태는 취업자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미취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방안의 모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주로 실업급여에 관한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업급여제도의 실적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주로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용보험 DB의 자료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성, 연령, 학력, 채용경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 및 상실사유, 피보험자격 취득시 및 이직 당시의 임금, 산업, 직종, 사업장 규모, 실업급여를 받은 금액과 기간, 퇴직금 수령액 등의 피보험자 및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실업급여 지급실적에 대한 분석은 고용보험 DB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재취업 과정에서

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이직 후 재취업 과정과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재취업된 일자리의 질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일차적으로는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나 고용보험 DB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직자의 이직 당시의 임금 정보가 없고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재취업기간, 구직방법, 의중임금 수준, 비수급자의 이직 당시의 임금수준, 재취업 제의를 거절한 사유 등 재취업 행태와 미취업 사유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가 없다. 이러한 고용보험 DB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전국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해 추적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2000년 4~6월의 기간 중에 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 1,002명과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으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비수급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아주 늦게 신청한 사람이라도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하였을 시점인 200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1년 9월 3일부터 10월 27일의 기간 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특히 2000년 4~6월의 기간 중에 이직한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은 보통 이직 후 40여 일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고 이직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할 필요성과 본 연구를 위한 설문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국 노동연구원에서 1998년 4~6월의 기간 중에 이직한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두 연구를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00년 2/4분기는 실업률이 3.8%로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 상태에서 상당히 벗어난 시점이었으나,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 계속되었던 시점이다.

추적조사를 위한 표본은 고용보험 DB에서 무작위 추출(random sam

8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pling)하되 지역별·성별 비례할당 추출이 되도록 하였다. 이직자에 대해 이직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응답하게 하는 추적조사의 특성상 주소와 전화번호의 변경자가 많고 응답을 거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실제 조사대상 인원의 10배를 1차 추출한 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성, 연령계층, 지역별로 모집단 분포를 감안하여 2차, 3차 추출을 하였다. 2000년 4~6월의 기간 중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람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약 10%였다. 따라서 수급자에 비해 비수급자가 훨씬 많은 모집단의 특성상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비율을 맞추어 표본을 추출하면 수급자 표본이 너무 작아져 수급자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기 힘들게 되므로, 수급자를 비수급자에 비해 9배 과다추출하여 각각 1,000명 내외를 조사하되 추적조사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비수급자를 수급자에 비하여 9배의 가중치(weight)를 주어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표본으로 선정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추적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료를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로 칭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실업급여에 관한 실증자료에 의한 분석뿐만 아니라 각 주제에 대한 문헌 연구와 이론적 연구도 부분적으로 병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업급여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이외에 계량분석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짓분석(logit analysis)과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학계전문가, 정부의 정책담당 공무원,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계자, 일선 공공직업안정기관인 고용안정센터의 실업급여 및 취업알선담당 공무원 및 상담원, 고용보험 DB를 관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설 중앙고용정보원의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연구방법 및 활용자료의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 및 시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3절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는 본 보고서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특별연장급여가 실업급여의 수급일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구직급여의 실제 임금 대체율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실업급여 수급률과 실업률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성, 학력, 연령, 이직 전의 임금수준, 직종, 산업, 근속기간 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조기재취직수당 및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업급여가 수급자의 구직기간, 구직방법, 재취업된 직장의 질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 후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재취업상황,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등을 비교분석하고 실업상태로부터 재취업으로의 탈출률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적 방법에 의해 실업급여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행태 및 재취업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취업알선서비스는 실업자의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아온 사람의 규모와 동향을 분석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반복수급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6장에서는

10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이직 후 14~1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미취업자에 대해 그 특성과 재취업 행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 실업급여의 개요와 지급 추이

제1절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개요

1. 구직급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대별된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핵심적 제도로서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 지급된다.

구직급여 수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고,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최초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8년 2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일액의 70%로 규정되었다가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다시 90%로 상향조정되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초기에는 35천원으로 설정되었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임금수준이 하락을 반영하여 1999년 2월 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99년 7월부터 30천원으로 낮추어졌다가 외환위기 극복에 따른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2000년 12월 30

12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1년 1월부터 다시 35천 원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 까지 받을 수 있다(표 2-1). 또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상병급여를 구직급여에 같음하여 소정급여일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90~240일로 규정하면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는 연장급여제도(extended benefits)를 두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장급여제도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세 종류가 있다.

훈련연장급여제도는 수급자격자가 특별한 기능이 없고, 이직 전 경력, 기능, 자격, 연령,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 지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법 제42조). 훈련연장급여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다.

개별연장급여제도는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급여기초임금일액,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인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최저임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를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법 제42조의 2 및 시행령 제52조의 2). 개별연장

〈표 2-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 령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주: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급여제도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에서 일종의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특별연장급여제도는 실업의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에 한해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외환위기로 인하여 고실업이 사회문제화되었던 1998년에 도입되어 동년 7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2. 취직촉진수당

취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에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 잔여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일시불로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50조,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2).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5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①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단서).

14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②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③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 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단서).

④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단서)

⑤ 취직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고용보험법 제50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이 종전에는 실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직한 경우에 잔여 구직급여액의 3분의 1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98년부터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을 잔여 구직급여액의 2분의 1 인상하였다. 또한 2001년 7월 7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취직할 경우 잔여급여액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로의 재취업을 촉진하였다. 조기재취직수당의 요건도 완화되었는데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던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1999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00년부터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1일 5천원을 지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고용보험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64조).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50km이상 떨어진 곳의 직장에 구직활

동을 하게 될 때 소요비용을 지급하여 광역에 걸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고용보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5조), 이주비는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66조).

구직급여는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의 핵심으로서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하며, 취직촉진수당은 구직급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부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

〈표 2-2〉 실업급여의 종류

	요건	수급액
구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 전 12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최고 : 35,000원/1일, 최저 : 최저임금의 90%)
상병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일액과 동일
훈련연장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일액의 70% - 최대 2년까지 지급
개별연장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임금수준, 부양가족, 직업소개, 훈련수강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 범위내
특별연장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 범위 내
조기재취직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긴 채 재취업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
취직촉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5,00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노동관서 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임 및 숙박료
이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경비

제2절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지급액 추이

1. 개요

1996년 7월 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실업급여는 실업자에 대한 제1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까지는 실업률이 2%대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18월의 기준기간 중 12월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재직한 후 이직하여야 하는 비교적 엄격했던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의 충족, 제도 시행 초기의 실업급여에 대한 홍보 미흡,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던 실업급여의 적용범위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매우 적었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인원(實人員)이 56천여 명에 불과하였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787억 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의 급증, 실업급여 적용범위의 확대³⁾, 실업급여 신청요건의 완화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확대⁵⁾, 특별연장급여제도의

3) 실업급여 적용범위는 1997. 12. 31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의 근로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998. 1. 1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의 근로자로, 1998. 3.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의 근로자로, 1998. 10. 1부터는 1인 이상 사업의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4)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신규적용 피보험자들의 실업시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98. 2. 20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1998. 3. 1부터 기존의 기준기간(18개월)과 피보험 단위기간(12개월)을 각각 12개월과 6개월로 2000. 6.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며, 1999. 12. 31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다시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을 2001. 1. 1부터 각각 18개월과 180일로 추가적으로 완화하였다.

5)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에 직면하여 1998. 2. 20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5세 미만인 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120일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여 25세 미만인 자도 30세 미만의 자로 통합하여 소정급여일수를 60~150일로 조정하여 1998. 3. 1부터 시행하였고, 1998. 3. 1부터 수급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이직자에 대해서 이직 당시 연령과 관계없이 60일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1999. 12. 31 고용보험법

실시) 등으로 인해 1998년의 실업급여 수급자 실인원이 431천 명, 1999년에는 483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2000년에는 실업률이 다시 하락함에 따라 330천 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감소하였다가 2001년에는 다시 423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1998년에는 7,992억 원, 1999년에는 9,36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에는 4,708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는 8,451억 원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에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2001년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비자발적 이직자 비

〈표 2-3〉 실업급여 내역별 수급자수 및 지급액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전 체	구직 급여	취직촉진수당					상병 급여
				소계	조기 재취직 수당	능력 개발 수당	이주비	광역 구직 활동비	
1996	수급자수	8,063	7,192	832	815	14	-	3	39
	지급액	10,459	9,958	473	469	4.0	-	0.1	28
1997	수급자수	55,774	50,964	4,542	4,487	51	2	2	268
	지급액	78,733	75,943	2,578	2,558	19.4	0.1	0.1	212
1998	수급자수	431,237	412,600	17,361	17,318	28	10	5	1,276
	지급액	799,155	782,865	15,274	15,257	15.1	1.6	0.1	1,016
1999	수급자수	483,238	462,635	19,310	19,243	11	46	10	1,293
	지급액	936,185	911,308	22,237	22,222	5.0	9.1	0.4	2,640
2000	수급자수	330,353	303,631	24,763	24,712	2	38	11	1,959
	지급액	470,793	443,545	24,884	24,877	0.4	6.7	0.2	2,363
2001	수급자수	422,858	374,286	44,180	44,001	8	163	8	4,392
	지급액	845,110	783,861	57,150	57,120	2.2	28.1	0.2	4,099

주 : 1) 1996년도의 수치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월 통계치로 기재.

2) 수급자수는 당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실인원임.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년도.

개정에서는 모든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를 30일 확대하여 종전의 60~210일을 90~240일로 조정하여 2000.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6)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에 직면하여 고실업 시기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60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제도를 1998. 2. 20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의 기간 동안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실시하였다.

18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중의 증가로 인한 신규 수급자의 증가, 임금인상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의 인상으로 인한 1인당 평균 구직급여일액의 증가, 1998년 신규 적용자의 소정급여일수 30일 증가로 인한 평균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⁷⁾

실업급여의 수급자수를 내역별로 보면 <표 2-3>에서 본 바와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96~98%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 면에 있어서도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93% 내외를 점하고 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1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특징 중의 하나는 취직촉진수당제도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직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재취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취직촉진수당 일부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3 참조).

실업급여 연장제도의 수급자수 및 지급실적을 보면 고실업 시기에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특별연장급여를 제외한 훈련연장급여제도와 개별연장급여제도는 지급실적이 극히 미약하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연장급여제도와 개별연장급여제도의 수급자수와 지급액은 극히 미약하다. 특히 훈련연장급여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실업급여 수

<표 2-4> 구직급여 연장제도의 연도별 수급자 및 지급액 추이

(단위: 명, 천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훈련 연장급여	수급자수	7	31	17	3	2	11
	지급액	7,000	37,000	105,000	45,000	2,200	5,600
개별 연장급여	수급자수	-	3	4	496	1,011	676
	지급액	-	1,000	2,000	198,000	620,000	482,000
특별 연장급여	수급자수	-	-	186,084	361,041	-	-
	지급액	-	-	82,525,000	215,929,000	-	-

자료: 노동부.

7)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2002년 봄호.

급자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 동안 71명에 불과하여 훈련연장급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1998년 7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말까지 고실업 시기에 시행된 특별연장급여의 수급자는 1998년 하반기에 186천 명, 1999년에는 361천 명으로서 고실업 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구직급여 수혜율 추이

실업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하 ‘구직급여 수혜율’이라 한다)은 실업급여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구직급여 수혜율은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실업급여의 요건과 지급제한의 정도, 소정급여일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

〈표 2-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별 분포 현황

(단위: 명, %)

		상실자	180일 미만 · 자발적 상실	180일 미만 · 비자발적 상실	180일 이상 · 자발적 상실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상실 (실업급여 신청가능자)
1999년	상반기	1,098,860 (100.0)	346,278 (31.5)	104,427 (9.5)	399,818 (36.4)	248,337 (22.6)
	하반기	1,031,000 (100.0)	242,000 (23.5)	52,000 (5.0)	520,000 (50.4)	217,000 (21.0)
2000년	상반기	1,329,131 (100.0)	302,101 (22.7)	53,834 (4.1)	722,871 (54.4)	250,325 (18.8)
	하반기	1,149,200 (100.0)	234,674 (20.4)	46,298 (4.0)	638,209 (55.5)	230,019 (20.0)
2001년	상반기	1,237,392 (100.0)	207,149 (16.7)	35,906 (2.9)	686,826 (55.5)	307,511 (24.9)
	하반기	1,242,307 (100.0)	218,672 (17.6)	39,775 (3.2)	706,044 (56.8)	277,816 (22.4)

주: 1) 본 분석에서 상실자는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전체 상실자 중 고용보험 비적용 등의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 치임.

2) 분석과정 중 각 특성별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전체 상실자 수치와 상 이할 수 있음.

자료: 고용보험 DB;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20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1997년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었고 1998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도 1998년 2월까지의 이직 전 18월 중 피보험기간이 12월 이상, 1998년 3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이직 전 18월 중 피보험기간이 6월 이상, 그리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이직 전 18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자 및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직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직자의 약 70%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이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을 가진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 내외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실업급여 신청자의 비율 추이를 보면 <표 2-6>에서 보듯이 1997년까지는 극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외환위기로 실업률이 급등한 1998년에 22.2%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 비자발적 이직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시 크게 낮아져 10% 전후에서 변동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실업인정자의 비중은 변동이 거의 없이 99%선을 유지하

<표 2-6> 실업급여 신청자 및 실업 인정자 비율 추이

(단위: %)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실업급여 신청자 비율	실업급여 신청자 중 실업 인정자 비율
1996 하반기	2.3	97.6
1997	3.7	99.6
1998	22.2	99.0
1999	13.1	99.2
2000	8.7	99.4
2001	10.8	99.5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1996년도 수치는 고용보험 DB.

〈표 2-7〉 구직급여 수혜율 추이(1996년 하반기~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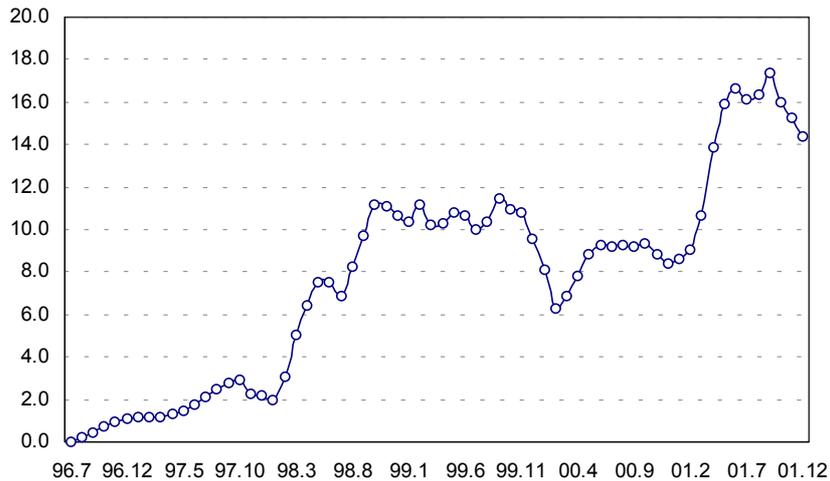
(단위 : %)

		실업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의 비중			
		전체 실업자 대비	실업기간 1년 미만 전직 실업자 대비	실업기간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였던 실업자 대비	실업기간 1년 미만의 전직 상용·임시직 임금근로자였던 실업자 대비
1996	하반기	0.6	-	-	-
1997	상반기	1.3	-	-	-
	하반기	2.4	-	-	-
1998	상반기	5.6	6.9	8.1	11.9
	하반기	9.6	11.7	14.0	22.2
1999	상반기	10.6	13.6	16.1	28.2
	하반기	10.5	13.5	15.9	27.8
2000	상반기	7.7	9.9	11.7	20.2
	하반기	9.0	11.3	13.3	21.4
2001	상반기	12.0	15.5	18.1	29.0
	하반기	15.9	20.0	23.6	36.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그림 2-1〕 구직급여 수혜율의 월별 추이(1996년 7월~2001년 12월)

(단위 :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22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고 있다(표 2-6 참조)⁸⁾. 즉, 실업급여 신청자의 약 99% 이상이 실제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실업급여 신청자의 비율이 10% 전후로 매우 낮은 것이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을 낮추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구직급여 수혜율의 추이를 보면 <표 2-7>과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1999년 하반기부터 감소한 후, 2000년부터 다시 소폭 증가하다가 200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하반기 현재 구직급여 수혜율은 15.9%로 미국의 37.3%(2000년), 영국의 약 20%(2000년), 캐나다의 약 40%(2000년), 일본의 39%(1997년), 독일의 43.6%(2000년) 등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 실업급여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편이다. 구직급여 수혜율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실업발생 확률이 높은 일용근로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전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2001년 하반기 현재 50.7%로서 선진국의 90% 이상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이직자의 약 70%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이며,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상대적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을 가진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20% 내외에 불과하다는 데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유길상 외, 2000).

한편 실업기간이 1년 미만인 전직실업자를 기준으로 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비중은 20.0%이고, 실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실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였던 실업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의 비중은 23.6%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용직근로자까지 제외한 실업기간 1년 미만의 전직 상용·임시직근로자였던 실업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36.1%까지 증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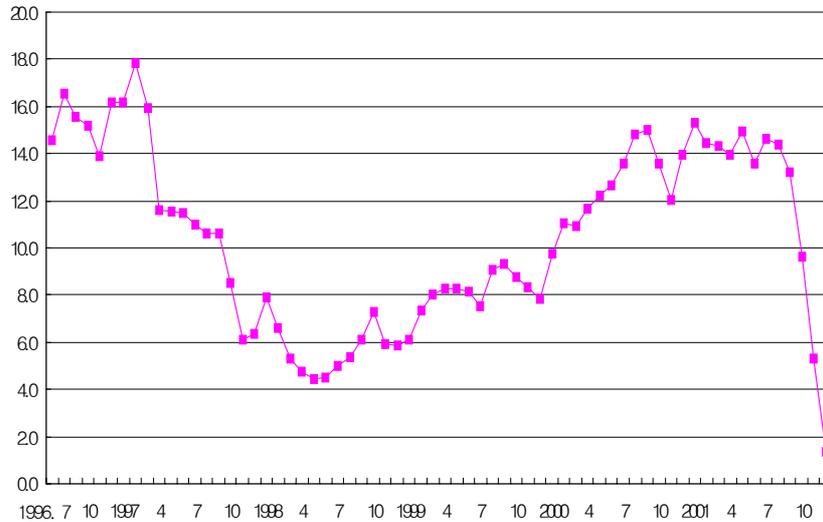
8) 일본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 중 실업인정자의 비율은 1996년에 97.9%, 1997년에 98.3%, 1998년에 98.6%, 1999년에 98.8%, 2000년에 98.6%로서 우리나라에 비하여 약 1%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유길상 외, 2002).

3.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추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비중은 [그림 2-2]에서와 같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16%대였으나 1997년 4월부터 12% 미만으로 떨어져 1997년 9월까지 그 추이가 유지되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와 실업률의 급등으로 인하여 1998년과 1999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비중이 4~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2000년부터 경기회복에 따른 실업률의 하락과 더불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30일씩 늘림에 따라 2000년부터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비중은 1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2-2] 실업급여 신규수급자 중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비중

(단위: %)



주: 2001년 10월 신규 수급자부터는 실수급기간이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과소계산된 수치임.

자료: 고용보험 DB.

4.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평균 실업급여 수급일수 및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비중

1998년 7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특별연장급여를 받은 사람은 <표 2-4>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36만 명이었다. 이들 중 특별연장급여의 소정급여일수 60일을 모두 소진하여 특별연장급여를 받은 사람은 26만 명으로서 전체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72.3%였다 (표 2-8 참조). 특별연장급여는 1999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으므로 특별연장급여의 소정급여일수 60일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999년 11월 1일까지는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했어야 가능하다. 1999년 11~12월에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제외한 특별연장급여의 소

<표 2-8> 특별연장급여 신청 시점별 특별연장급여 소진율

(단위: %)

특별연장급여 신청시점	특별연장급여 소진자 비율
1998년 7월	81.2
8월	80.7
9월	79.5
10월	76.2
11월	74.6
12월	78.1
1999년 1월	78.9
2월	76.4
3월	79.4
4월	79.6
5월	76.3
6월	79.1
7월	80.3
8월	79.1
9월	77.6
10월	74.7
11월	6.0
12월	-
전 체	72.3(78.4)

주: () 안의 숫자는 1999년 11~12월의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및 급여소진자를 제외하였을 경우의 특별연장급여 소진율임.

자료: 고용보험 DB.

〈표 2-9〉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일수별 분포

(단위:%)

특별연장급여 수급일수	비 중	누적 백분율
4일 이내	0.8	0.8
5~9일	1.8	2.6
10~14일	1.7	4.3
15~19일	0.9	5.3
20~24일	1.1	6.3
25~29일	2.1	8.5
30~34일	1.5	10.0
35~39일	1.9	11.9
40~44일	1.0	13.0
45~49일	1.1	14.1
50~54일	1.3	15.4
55~59일	5.1	20.5
60일	79.5	100.0
전 체	100.0	

자료: 고용보험 DB.

진율은 79.5%였다. 즉,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79.5%가 특별연장급여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일수별 분포를 보면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79.5%가 60일의 특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재취업하지 못하였으며, 55일 이상 특별연장급여를 받은 사람이 84.6%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연장급여 수급일수가 30일 미만인 사람은 8.5%에 불과하였다.

<표 2-10>은 1998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특별연장급여 수급으로 이어진 사람의 비중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표의 각 집단(cell)별로 분석한 것이다. 평균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66.4%가 특별연장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 수표의 각 집단별로 보면 30세 미만으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5년 미만인 실업급여 수급자와 50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피보험기간을 가진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확

26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표 2-10〉 구직급여 수급자 대비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비중

(단위 : %)

		피보험기간			전 체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연령	30세 미만	68.0	70.9	78.0	72.0
	30세 이상 50세 미만	75.0	67.1	63.4	66.7
	50세 이상	76.1	61.4	53.7	60.3
	전 체	73.1	66.7	63.4	66.4

자료: 고용보험 DB.

률이 가장 높은 78.0%였으며, 50세 이상으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확률이 53.7%로 가장 낮았다. 30세 이상에서는 대체로 소정급여일수가 긴 집단이 특별연장급여로 이어질 확률이 낮았다.

특별연장급여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체 구직급여수급자의 평균구직급여일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1998년 7월부터 1999년 10월 사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의 평균구직실업급여수급일수를 계산하였다. 1999년 11월과 12월에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특별연장급여의 소정급여일수 60일을 모두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분석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표 2-1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평균실업급여 수급일수

(단위 : 일)

	수급자의 연령	피보험기간			전 체
		6개월~1년	1~3년	3~5년	
특별연장 급여 제외시	30세 미만	49.8	49.8	79.9	56.7
	30~49세	53.0	76.3	103.8	83.6
	50세 이상	54.0	102.5	133.4	108.5
	전 체	52.2	75.3	106.5	82.7
특별연장 급여 포함시	30세 미만	83.7(+33.9)	86.4(+36.6)	121.1(+41.2)	94.0(+37.3)
	30~49세	92.1(+39.1)	111.2(+45.7)	138.0(+34.2)	118.7(+35.1)
	50세 이상	95.0(+41.0)	133.4(+30.9)	163.4(+30.0)	140.0(+31.5)
	전 체	90.0(+37.8)	109.8(+34.5)	140.9(+34.4)	117.6(+34.9)

자료 : 고용보험 DB.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연장급여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구직급여수급자의 평균구직급여수급일수는 82.7일이었는데 반해, 특별연장급여를 포함할 경우에는 평균구직급여수급일수가 34.9일 증가한 117.6일로 나타났다. 즉 특별연장급여의 시행이 전체 구직급여일수를 평균적으로 34.9일 만큼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수급자격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별로 보면 피보험기간이 짧거나 연령이 젊은 계층에서 특별연장급여로 인한 구직급여수급일수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정급여일수가 이들 계층에서 짧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

가.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추이

구직급여의 수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고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은 최초에는 최저임금일액의 50%였으나 1998년 2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1998년 3월 1일부터 최저임금일액의 70%로 규정되었다가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00년 1월 1일부터 다시 최저임금일액의 90%로 상향조정되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제도 도입 당시에는 35천 원으로 설정되었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임금수준의 하락을 반영하여 1999년 2월 1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1999년 7월 1일부터 30천 원으로 낮추어졌다가 외환위기 극복에 따른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2000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35천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와 같이 구직급여일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임금대체율이 50%이지만 이직 전 임금수준이 매우 낮아 구직급여일액이 하한액 미만인 사람들의 임금대체율은 50%를 넘을 것이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의 임금대체율은 50%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28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표 2-12>는 1996년 이후 2001년까지의 실제 임금대체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직급여의 실제 임금대체율은 43~45%선에서 소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급 초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많아 임금대체율이 43.2%였지만 1998년에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이들 신규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직하기 시작한 1999년 상반기의 임금대체율은 44.9%로 상승하였다. 1999년 하반기 이직자부터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이 3만 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상한액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늘어나 다시 43.5%로 하락하였다. 2001년 1월부터 상한액이 다시 35천 원으로 환원되면서 임금대체율이 45.5%로 상승되었다. 만약 상한액이 3만 원이었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2001년의 임금대체율은 43.3%로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12>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추이

(단위: 원, %)

	평균 구직급여일액 (A)	평균 임금일액 (B)	임금대체율 (A/B)
1996	25,446	-	-
1997	24,945	57,808	43.2
1998	24,396	56,061	43.5
1999	21,611	48,179	44.9
1999 상반기	22,885	51,312	44.6
1999 하반기	19,972	44,151	45.2
2000	21,129	48,627	43.5
2001	23,411	51,439	45.5
	(22,266)		(43.3)

주: 1) 1999년 6월 30일까지의 이직자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35,000원이었고, 19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말 이직자는 30,000원, 2001년 이직자부터 다시 35,000원으로 조정됨.

2) 당해연도 이직자를 기준으로 계산.

3) () 안의 숫자는 2001년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이 2000년과 같이 30,000원이라는 가정하에 재산정한 구직급여일액과 임금대체율.

자료: 고용보험 DB.

나. 구직급여 수급자의 구직급여일액 분포

구직급여 수급자의 구직급여일액별 분포를 보면 <표 2-13>과 같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에 해당되는 사람의 비율은 1998년까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3~4%선을 유지하였다. 1998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의 적용확대로 인해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이직자들이 1999년부터 대거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1998년 3월 1일부터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이 최저임금일액의 70%로 상향 조정되고 다시 200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일액의 90%로 상향 조정되면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에 해당되는 사람의 비율이 1999년에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17.5%까지 급등한 후 2000년에는 소폭 하락하였다가 2001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1999년 상반기까지는 35천 원, 1999년 하반기와 2000년에는 30천 원, 2001년부터는 35천 원)에 해당되는 사람의 비율은 1996년에는 35.1%에 이르렀으나 1997년에는 27.9%로 하락한 후 실

<표 2-13> 구직급여일액별 분포 및 평균구직급여일액 추이

	구직급여일액별 분포(%)						전 체	평균구직 급여일액
	19,999원 이하 최저일액	20,000~ 24,999원	25,000~ 29,999원	30,000~ 34,999원	35,000원 이상			
1996	33.3	4.3	12.5	10.3	8.8	35.1	100.0	25,446
1997	33.7	2.9	15.8	12.7	9.8	27.9	100.0	24,945
1998	35.8	3.8	16.5	12.9	9.6	25.3	100.0	24,396
1999 상반기	43.8	17.5	15.3	11.8	7.7	21.4	100.0	22,885
1999 하반기	54.2		16.3	11.0	18.5		100.0	19,972
2000	48.6	11.5	16.1	11.8	23.5		100.0	21,129
2001	42.0	16.7	17.4	12.9	9.3	18.6	100.0	23,411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구직급여일액의 하한과 상한에 해당되는 사람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음.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은 1998년 3월부터 최저임금의 70%로 처음 설정된 후 2001년 1월부터 최저임금의 90%로 상향 조정되었음.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1999년 6월까지 35천 원이었고, 1999년 7월부터 30천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가 2001년 1월부터 다시 35천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자료: 고용보험 DB;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업급여의 적용범위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 199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1998년에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에 해당되는 사람의 비율이 25.3%, 1999년 상반기에는 21.4%로 하락하였다. 1998년의 명목임금 하락에 따라⁹⁾ 1999년 하반기에는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이 3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에 해당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비중은 18.5%로 하락하였다. 2000년에는 경제회복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에 해당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비중은 23.5%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이 35천 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에 해당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비중은 18.6%로 하락하였다.

제3절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급률 간의 상관관계

실업급여 수급자수와 실업급여 수급률¹⁰⁾은 노동시장의 변동과 직결되어 있다. 즉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상승(하락)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업급여 수급자수와 실업급여 수급률이 증가(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실업자 중에서도 구직급여를 곧바로 신청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업자수 및 실업률의 변화와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 수급자 및 수급률의 변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표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직 후 평균 43~44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실업자수 또는 실업률의 변화와 월평균 구직(실업)급여

9) 1998년의 비농전산업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2.5%, 제조업 명목임금 상승률은 -3.1%였다.

10) 실업급여 수급률 = {실업급여 수급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실업급여 수급자수)} × 100.

〈표 2-14〉 실직 후 구직급여 신청시까지 평균 소요기간

(단위: 일)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32.1	55.9	44.0	44.0	43.2	43.8

자료: 고용보험 DB.

〈표 2-15〉 실업자수와 구직급여 수급자수 간의 상관관계

	당해 월 수급자수	당해 월 실업자수	1월 전 실업자수	2월 전 실업자수	3월 전 실업자수
당해 월 수급자수	1.000				
당해 월 실업자수	0.879	1.000			
1월 전 실업자수	0.921	0.976	1.000		
2월 전 실업자수	0.941	0.921	0.976	1.000	
3월 전 실업자수	0.939	0.855	0.923	0.9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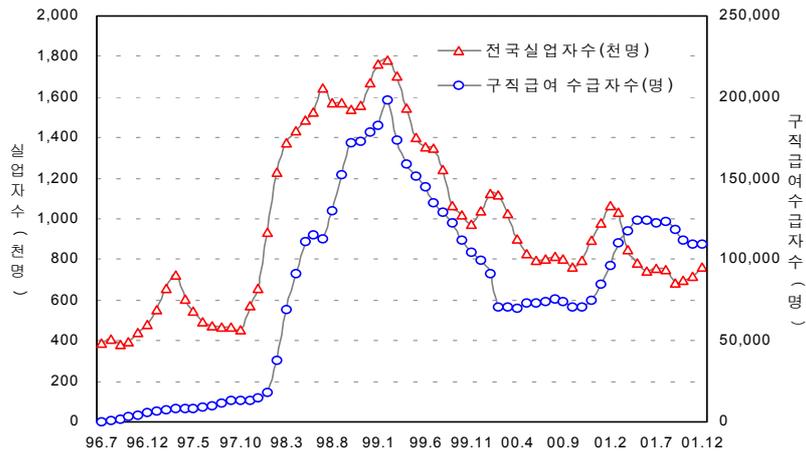
수급자수 또는 구직(실업)급여 수급률의 변화 간에는 약 43~44일의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2-3]을 보면 전국 실업자수와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실업자수와 구직급여 수급자수 간의 상관관계를 <표 2-15>에서 보면 당해 월의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2개월 전의 실업자수와의 상관계수가 0.9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3개월 전 실업자수(상관계수 0.939), 1개월 전 실업자수(상관계수 0.921), 당해 월 실업자수(상관계수 0.8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자수가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업급여 수급자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과 구직급여 수급률의 상관관계를 [그림 2-4]와 <표 2-16>에서 보면 당해 월 구직급여 수급률은 2개월 전의 실업률과 상관계수 0.919로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1개월 전 실업률(상관계수 0.910), 3개월 전 실업률(상관계수 0.907), 당해 월 실업률(상관계수 0.88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급률의 상관관계를 [그림 2-5]와 <표 2-17>에서 보면 당해 월 실업급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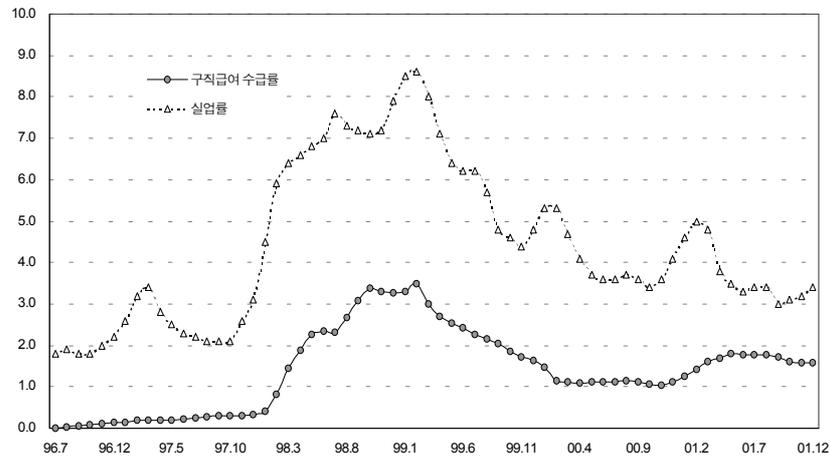
32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그림 2-3) 월별 실업자수와 구직급여 수급자수 추이(1996년 7월~2001년 12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그림 2-4) 월별 실업률과 구직급여 수급률 추이(1996년 7월~2001년 12월)
(단위:%)



주: 1) 구직급여 수급률 = {구직급여 수급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구직급여 수급자수)} × 100.

2) 구직급여 수급자에는 상병급여 수급자도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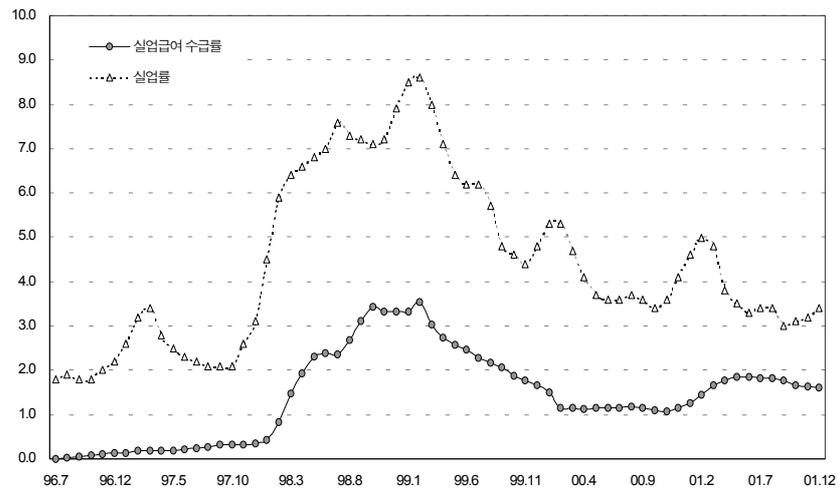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표 2-16〉 실업률과 구직급여 수급률 간의 상관관계

	당해 월 수급률	당해 월 실업률	1월 전 실업률	2월 전 실업률	3월 전 실업률
당해 월 수급률	1.000				
당해 월 실업률	0.881	1.000			
1월 전 실업률	0.910	0.972	1.000		
2월 전 실업률	0.919	0.910	0.973	1.000	
3월 전 실업률	0.907	0.838	0.912	0.973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그림 2-5) 월별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급률 추이(1996년 7월~2001년 12월)
(단위: %)



주: 실업급여 수급률 = {실업급여 수급자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실업급여 수급자수)}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률은 2개월 전의 실업률과 상관계수 0.916으로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1개월 전 실업률(상관계수 0.906), 3개월 전 실업률(상관계수 0.905), 당해 월 실업률(상관계수 0.87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4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표 2-17〉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급률 간의 상관관계

	당해 월 수급률	당해 월 실업률	1월 전 실업률	2월 전 실업률	3월 전 실업률
당해 월 수급률	1.000				
당해 월 실업률	0.877	1.000			
1월 전 실업률	0.906	0.972	1.000		
2월 전 실업률	0.916	0.910	0.973	1.000	
3월 전 실업률	0.905	0.838	0.912	0.973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수 및 실업률은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구직(실업)급여 수급자수와 구직(실업)급여 수급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제1절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

어떠한 사람들이 실업의 위험이 높으며, 누가 실업급여를 받아 가는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약근로계층인가 아니면 고임금계층인가? 이러한 의문은 실업급여제도의 도입 이전부터 제기된 의문이었으며, 실업급여제도의 향후 발전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주요 관심사항이다.

실업 발생의 위험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 즉 청년층, 중고령자, 저학력·저숙련층, 여성, 영세기업의 근로자, 건설업과 같은 고용불안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Johnson and Layard, 1986). 실업의 위험이 높은 계층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확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과연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은가는 성, 연령, 학력수준, 임금수준, 이직사유,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 여부, 가구주 여부, 근속기간, 직종, 업종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우선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들의 특성을 빈도(frequency) 분석을 통해 살펴본 다음 빈도분석에서 나

타난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을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한 로짓(Logit)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1.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 I : 빈도분석

가. 성

구직급여 수급자의 성별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성별 분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성별 분포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해 보면 된다.

<표 3-1>을 보면 남성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의 비중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남성의 비중에 비해 낮은 데 반하여 여성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 여성의 비중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의 비중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의 구직급여 수급확률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7년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이 피보험자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1998년부터 그 차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의 구직급여 수급확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을 보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여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98년 1, 3, 10월에 각각 단행된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조치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를 이직사유, 성별, 사업장 규모별로 요약한 <표 3-2>는

<표 3-1> 성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피보험자의 분포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남성	수급자 중 비중	73.1	68.9	66.0	62.1	62.1
	피보험자 중 비중	73.2	71.5	70.0	68.7	68.2
여성	수급자 중 비중	26.9	31.1	34.0	37.9	37.9
	피보험자 중 비중	26.8	28.5	30.0	31.3	31.8

자료: 고용보험 DB.

〈표 3-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성별·사업장 규모별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중(2000년)

(단위: %)

	5인 미만	5~ 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건설 공사	전 체
남성	35.7	30.1	29.2	25.9	24.9	31.0	38.1	38.0	56.6	32.1
여성	39.1	33.6	31.4	27.3	27.4	29.2	31.6	36.7	62.7	32.7

자료: 고용보험 DB 10% 표본.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성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았다. 3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여성 구직급여 수급자의 비중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학력

〈표 3-3〉을 보면 초졸·중졸 같은 저학력계층의 경우 피보험자에서의 비중보다 구직급여 수급자에서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졸, 전문대졸, 대학원졸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며, 대졸의 경우 2001년에만 수급자에서의 비중이 더 높다. 이는 저학력자들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초졸·중졸 등 저학력 계층이 비자발적 실업의 가능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4〉를 보면 초졸 이하의 경우 모든 연도에서 다른 학력에 비해 높은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을 보였고, 중졸도 1998년을 제외하면 고졸 이상에 비해 높은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표 3-3〉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까지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학력자와 고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조정이 이

<표 3-3> 학력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피보험자의 비중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초졸	수급자 중 비중	12.7	11.1	6.6	5.0	4.9	4.8
	피보험자 중 비중	5.8	5.2	4.2	3.6	3.4	3.0
중졸	수급자 중 비중	20.7	17.4	11.6	9.6	9.7	9.4
	피보험자 중 비중	12.8	12.0	10.4	9.5	8.6	7.9
고졸	수급자 중 비중	46.4	44.8	48.9	51.6	51.8	49.5
	피보험자 중 비중	49.8	49.6	52.5	54.0	53.7	53.3
전문대졸	수급자 중 비중	5.4	7.5	9.9	11.9	12.4	12.7
	피보험자 중 비중	9.3	10.0	11.0	11.4	12.0	12.8
대졸	수급자 중 비중	13.9	18.2	21.8	20.8	20.2	22.3
	피보험자 중 비중	20.3	21.2	20.3	19.9	20.6	21.2
대학원 이상	수급자 중 비중	0.9	1.0	1.2	1.1	0.9	1.2
	피보험자 중 비중	2.0	2.1	1.8	1.7	1.7	1.8

자료 : 고용보험 DB.

<표 3-4> 학력별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중

(단위: %)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전 체
1997	31.9	24.6	15.5	15.6	20.2	16.1	18.2
1998	58.3	49.9	41.6	44.6	52.6	45.8	45.5
1999	51.5	41.2	33.3	34.9	39.8	35.0	35.8
2000	50.0	39.7	30.5	30.4	33.8	28.5	32.3
2001	52.0	42.6	32.5	33.1	40.6	38.3	35.4

자료 : 고용보험 DB 10% 표본.

루어진 결과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종전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고교,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종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이직 전 사업장 규모

<표 3-5>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분포와 피보험자의 분포를 비교해 보

면 10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공사의 경우 피보험자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이 높은 반면, 그 이상 규모에서는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 이직 전 직종

피보험자의 직종별 분포와 구직급여 수급자의 직종별 분포를 <표 3-6>에서 비교해 보면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사무직원,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단순노무직에서 피보험자의 비중보다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이 더 높았으며, 1998년 이후 사무직원,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에 비해 수급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사무직원,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단순

<표 3-5> 전 직장 사업장 규모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피보험자 비중

(단위 : %)

		1998	1999	2000	2001
5인 미만	수급자 중 비중	1.1	13.1	16.9	15.9
	피보험자 중 비중	7.6	13.3	14.8	16.0
5~9인	수급자 중 비중	3.4	9.6	11.3	12.8
	피보험자 중 비중	6.8	8.6	9.7	10.5
10~29인	수급자 중 비중	13.3	18.6	19.3	19.9
	피보험자 중 비중	15.0	15.0	15.3	15.5
30~99인	수급자 중 비중	25.3	19.1	17.6	17.9
	피보험자 중 비중	17.7	16.4	16.0	15.8
100~299인	수급자 중 비중	16.9	14.6	12.1	12.1
	피보험자 중 비중	16.6	14.7	14.1	14.0
300~499인	수급자 중 비중	6.5	5.3	4.2	3.9
	피보험자 중 비중	6.2	5.4	5.2	4.9
500~999인	수급자 중 비중	8.5	5.5	5.1	4.4
	피보험자 중 비중	7.3	6.4	6.0	6.0
1000인 이상	수급자 중 비중	24.1	11.5	9.9	10.9
	피보험자 중 비중	22.0	18.7	17.5	16.2
건설공사	수급자 중 비중	0.9	2.6	3.5	2.2
	피보험자 중 비중	0.8	1.6	1.4	1.3

자료 : 고용보험 DB.

40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표 3-6> 직종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피보험자 비중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수급자 중 비중	10.0	6.9	6.3	5.7	5.6
	피보험자 중 비중	5.8	5.3	4.5	4.1	3.8
전문가	수급자 중 비중	2.8	4.0	4.2	4.1	5.0
	피보험자 중 비중	4.5	4.7	4.7	5.0	5.1
기술공 및 준전문가	수급자 중 비중	7.3	8.6	10.0	10.1	9.8
	피보험자 중 비중	9.0	10.5	10.6	11.0	11.3
사무직원	수급자 중 비중	25.4	36.1	34.8	33.5	34.6
	피보험자 중 비중	29.8	29.8	29.2	29.4	30.1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 시장 판매근로자	수급자 중 비중	4.9	6.1	8.1	7.5	6.5
	피보험자 중 비중	8.5	9.1	9.9	9.9	10.0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수급자 중 비중	0.4	0.3	0.6	0.9	0.8
	피보험자 중 비중	0.3	0.3	0.3	0.2	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수급자 중 비중	26.9	20.4	17.6	17.8	17.8
	피보험자 중 비중	23.9	22.3	21.8	20.8	19.9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수급자 중 비중	4.9	3.8	3.2	2.8	3.0
	피보험자 중 비중	6.9	5.8	5.5	5.2	4.9
단순노무직근로자	수급자 중 비중	17.5	13.7	15.3	17.7	17.0
	피보험자 중 비중	11.2	12.0	13.5	14.5	14.7

자료: 고용보험 DB.

노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 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의 구직급여 수급확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연령 및 근속기간

연령계층별로 피보험자 비중과 구직급여 수급자의 비중을 <표 3-7>에서 비교해 보면 40대 이상의 연령계층에서는 피보험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연령계층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40대 이상의 중장년 연령계층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50대 연령계층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 연령계층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피보험자 비중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세 미만	수급자 중 비중	0.0	0.1	0.0	0.0	0.0
	피보험자 중 비중	3.0	2.3	2.3	2.2	1.7
20~24세	수급자 중 비중	2.1	4.9	4.1	3.4	3.5
	피보험자 중 비중	13.5	12.7	12.3	12.1	11.6
25~29세	수급자 중 비중	10.0	17.7	19.5	18.5	18.5
	피보험자 중 비중	21.4	21.9	21.8	21.4	20.6
30~39세	수급자 중 비중	26.3	32.1	31.3	31.2	32.2
	피보험자 중 비중	32.9	34.1	33.9	33.4	33.8
40~49세	수급자 중 비중	25.4	22.2	21.8	23.1	23.4
	피보험자 중 비중	18.8	19.1	19.7	20.6	21.7
50~59세	수급자 중 비중	28.0	18.7	17.8	18.1	16.8
	피보험자 중 비중	9.1	9.0	9.1	9.4	9.4
60세 이상	수급자 중 비중	8.2	4.4	5.5	5.7	5.5
	피보험자 중 비중	1.3	0.9	0.9	1.0	1.1

자료: 고용보험 DB.

〈표 3-8〉을 보면 이직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이직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비수급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표 3-8〉 전 직장 근속기간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비중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6월 미만	수급자 중 비중	2.9	3.1	4.0	6.6	6.3
	비수급자 중 비중	28.4	23.0	38.4	40.7	37.1
6월 이상 1년 미만	수급자 중 비중	4.6	10.2	18.7	21.8	20.9
	비수급자 중 비중	14.5	15.4	18.6	19.3	20.0
1년 이상 3년 미만	수급자 중 비중	30.6	29.1	33.7	33.3	35.6
	비수급자 중 비중	29.6	29.3	24.5	23.8	27.0
3년 이상 5년 미만	수급자 중 비중	15.0	15.1	14.3	13.6	11.8
	비수급자 중 비중	11.4	11.9	8.3	7.5	6.7
5년 이상 10년 미만	수급자 중 비중	19.1	19.5	13.7	13.1	13.2
	비수급자 중 비중	9.8	11.1	6.1	5.7	5.7
10년 이상	수급자 중 비중	27.8	23.0	15.6	11.7	12.3
	비수급자 중 비중	6.3	9.5	4.0	3.0	3.5

자료: 고용보험 DB.

42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확인할 수 있다. 즉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 되는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직 전 18월의 기준기간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직급여 신청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9>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계층별로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을 보면 같은 연령계층에서는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같은 피보험기간 구간 내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이 높아진다. 특히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0~49세이면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표 3-10>을 보면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자와 30~49세 연령계층에 속하면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40%를 초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50대 이상이고 근속이 비교적 긴 사람, 30~49세이면서 장기근속자인 사람들에게 기업구조조정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령이 길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도 높아지고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표 3-9> 피보험기간 및 연령계층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수급자 비중(2001년 상반기)

(단위: %)

	피보험기간				전 체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30세 미만	7.5	9.9	11.2	16.9	7.6
30~49세	13.4	15.9	15.7	23.7	14.9
50세 이상	14.9	22.8	27.3	43.0	24.3
전 체	10.3	13.4	15.2	26.1	12.4

자료: 고용보험 DB.

〈표 3-10〉 피보험기간 및 연령계층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2001년 상반기)

(단위: 명, %)

	피보험기간					전 체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30세 미만	10.2	20.0	22.3	22.8	29.6	19.4
30~49세	19.9	32.2	31.7	29.3	44.1	32.3
50세 이상	26.1	40.0	44.1	47.0	62.1	46.0
전 체	14.7	26.2	27.9	28.6	45.0	27.6

자료: 고용보험 DB.

바. 산업

구직급여 수급자와 피보험자의 비중을 <표 3-11>에서 보면 농수림어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피보험자

〈표 3-11〉 산업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피보험자의 비중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농수림어업	수급자 중 비중	0.4	0.2	0.5	0.7	0.6
	피보험자 중 비중	0.3	0.3	0.3	0.3	0.3
광공업·전기가스 수도	수급자 중 비중	61.9	47.5	34.5	34.0	37.9
	피보험자 중 비중	49.7	43.5	42.0	40.4	38.9
건설업	수급자 중 비중	9.8	10.6	11.7	12.9	10.3
	피보험자 중 비중	5.4	6.9	7.7	7.6	7.7
도소매·숙박	수급자 중 비중	7.3	8.1	12.8	12.6	12.5
	피보험자 중 비중	8.1	11.7	13.0	13.2	13.8
운수창고 및 통신	수급자 중 비중	4.8	4.1	7.9	5.5	5.5
	피보험자 중 비중	11.4	10.0	9.1	8.7	8.4
금융 및 보험	수급자 중 비중	5.5	13.9	7.5	6.8	4.8
	피보험자 중 비중	9.2	7.2	6.4	5.8	5.5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수급자 중 비중	7.2	11.7	17.3	17.6	18.8
	피보험자 중 비중	10.1	11.7	12.4	13.4	14.1
공공국방·교육·보 건·기타공공	수급자 중 비중	3.2	3.8	7.7	10.0	9.7
	피보험자 중 비중	5.8	8.5	9.1	10.5	11.2

자료: 고용보험 DB.

44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중 비중에 비해 수급자 중 비중이 높아 이들 업종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활발했던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이 피보험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에 비해 현저히 높아 구직급여 수급확률이 매우 높은 산업이었으나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01년에는 피보험자 비중보다 수급자 비중이 낮게 나타나, 금융업의 고용이 안정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이직 전 임금수준

고용보험 DB에는 이직 전 임금 정보가 없으므로 2000년 구직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2001년에 추적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이직 전 직장 임금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3-12>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의 이직 전 월평균임금은 145만 원, 비수급자의 월평균임금은 102만 원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임금이 높았다.

<표 3-12> 구직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월평균임금의 분포

(단위: 명, %)

	수급자	비수급자
60만 원 미만	39(3.9)	99(9.9)
6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	229(23.1)	326(32.7)
90만 원 이상 120만 원 미만	193(19.5)	202(20.3)
12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77(17.9)	147(14.7)
150만 원 이상 180만 원 미만	146(14.7)	110(11.0)
180만 원 이상 210만 원 미만	89(9.0)	68(6.8)
210만 원 이상 240만 원 미만	19(1.9)	9(0.9)
24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	35(3.5)	15(1.5)
27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4(0.4)	2(0.2)
300만 원 이상 330만 원 미만	29(2.9)	8(0.8)
330만 원 이상	30(3.0)	11(1.1)
전 체	990(100.0)	997(100.0)
월평균 임금(만원)	135.64	109.9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또한 월평균임금액 구간별로 보면 120만 원 미만인 자에서는 비수급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120만 원 이상에서는 수급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의 전 직장에서의 임금이 비수급자의 임금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 II : 로짓(Logit) 분석

앞서 빈도분석의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이, 이직 전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직 전의 직종에 있어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사무직원,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그리고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에 있어서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이직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별로는 근속기간 1년 이상의 피보험자가, 산업별로는 농수림어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근로자가, 그리고 이직 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구직급여 수급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누가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는가이다.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중·고령자,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 저숙련 및 단순노무직 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영세사업장 및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등이 주로 구직급여를 받는지,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청·장년층, 고학력자 등이 주로 구직급여를 받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보호에 충실한가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1 사회취약계층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즉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중·고령자,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 저숙련 및 단순노무직 근로자, 저임금근로자 등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남성, 청장년층, 고학력자, 고

46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임금근로자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한편 이직하기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경향이 강한 자발적 이직자에 비하여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람은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일수록 실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직한 사람일수록 구직급여 수급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2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직한 사람은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직한 사람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낮을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에서 이용한 변수의 정의와 변수별 분포는 <표 3-13>과 같다.

<표 3-14>는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들이 구직급여를 받는지를 로짓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종속변수는 구직급여를 받았으면 1,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0으로 하였다. <표 3-14>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위에서 설정한 가설들이 우리나라에서 타당한 주장인지 검정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구직급여 수급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 이하의 연령계층에 비해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계층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한계계층인 여성과 중·고령자가 남성 및 청년층에 비해 구직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3〉 변수의 정의 및 분포

(단위: %)

		전 체	수급자	비수급자
성별	여성(1)	37.2	37.2	37.2
	남성	62.8	62.8	62.8
연령별	30대 이하(1)	57.3	47.3	67.3
	40대	19.2	21.5	16.9
	50대 이상	23.4	31.2	15.8
학력별	고졸(1)	42.6	38.6	46.6
	초, 중졸 이하	18.4	20.3	16.5
	전문대, 대졸	37.8	40.0	35.6
	대학원 이상	1.2	1.0	1.4
가구주 여부	가구주(1)	56.2	60.8	51.6
	가구주 아님	43.8	39.2	48.4
직종별	전문직종 및 숙련기능원(1)	44.4	42.9	46.0
	고위임직원 등	3.6	5.5	1.7
	사무직	30.8	35.5	26.2
	농어업 숙련근로자	0.5	0.8	0.2
	단순노무직	20.7	15.3	26.0
업종별	광공업 등(1)	66.5	64.1	68.9
	농수림어업	0.4	0.6	0.3
	건설업	7.3	9.0	5.6
	금융 및 보험	5.2	7.8	2.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0.6	18.5	22.6
사업체 규모별	100~299인(1)	13.0	12.7	13.3
	10인 미만	26.9	27.3	26.6
	10~99인	40.2	38.3	42.0
	300~999인	9.7	10.8	8.6
	1,000인 이상	7.5	8.0	7.0
	건설공사	2.7	2.9	2.5
이직사유별	비자발적 이직(1)	55.2	79.0	31.6
	자발적 이직	44.8	21.0	68.4
재취업준비 여부	준비(1)	19.0	10.2	27.8
	준비 안함	81.0	89.8	72.2
고용형태	비정규직(1)	19.0	13.9	75.9
	정규직	81.0	86.1	24.1
퇴직금 수령 여부	수령(1)	53.1	68.6	37.8
	수령 안함	46.9	31.4	62.2
전 체		100.0	100.0	100.0

주: 표 안의 (1)은 로짓분석시 기준 변수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48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표 3-14>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구직급여 수급=1, 비수급=0)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수준	Exp(B)
절편	-5.416***	0.529	0.000	0.004
여성	0.529***	0.122	0.000	1.697
연령(30대 이하)			0.000	
40대	0.475***	0.112	0.000	1.607
50대 이상	1.221***	0.131	0.000	3.390
학력(고졸)			0.000	
초중졸 이하	-0.253**	0.126	0.044	0.776
전문대, 대졸	0.464***	0.092	0.000	1.590
대학원 이상	-0.243	0.397	0.540	0.784
직종(전문직종 및 숙련기능원)			0.000	
고위임직원 등	0.965***	0.208	0.000	2.625
사무직	0.337***	0.094	0.000	1.400
농어업숙련근로자	0.709	0.492	0.149	2.032
단순노무직	-0.737***	0.117	0.000	0.478
산업(광공업 등)			0.003	
농수림어업	0.453	0.542	0.403	1.574
건설업	0.117	0.146	0.421	1.124
금융 및 보험	0.598***	0.181	0.001	1.81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151	0.102	0.138	0.860
규모별(100~299인)			0.006	
10인 미만	-0.330**	0.135	0.014	0.719
10~99인	-0.320**	0.125	0.011	0.726
300~999인	-0.002	0.161	0.992	0.998
1,000인 이상	-0.565***	0.196	0.004	0.568
건설공사	-0.047	0.257	0.855	0.954
이직 전 임금(로그)	0.128	0.112	0.256	1.136
정규직	0.529***	0.115	0.000	1.696
비자발적 이직	2.140***	0.090	0.000	8.497
이직 전 재취업 준비	-1.028***	0.122	0.000	0.358
가구주	-0.068	0.121	0.573	0.934
근속기간(월)	0.004***	0.001	0.000	1.004
퇴직급 수령	1.066***	0.088	0.000	2.903
N	1,986			
-2Log Likelihood	4731.927			
R ²	0.158			

주: 1)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표본은 2,012명이나, 일부 변수들의 결측치로 인하여 관찰치는 1,986명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학력별로는 고졸자에 비해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자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가설 3-1에서 예상한 대로 더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가설 3-1과는 반대로 고졸자에 비해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이 오히려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전문대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고졸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직 전 사업장의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및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직 전 임금수준과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을 보면 이직 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1에서 예상한 “임금수준이 낮은 피보험자일수록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의 종사자에 비하여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에만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림어업과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의 종사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높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의 종사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사유별로는 비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자발적 이직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회귀계수값이 가장 높은 변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 여부별로 보면 가설 3-2에서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로 재취업 준비를 한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가구주 여부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을 보면 가구주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가구주가 아닌 사람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피보험자의 이직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별로는 이직 전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할 당시 퇴직금 수령 여부별로 보면 퇴직금을 수령한 이직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직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계층별로는 30대 이하 비하여 40대 이상, 학력 수준별로는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가,

직종별로는 전문직종 및 숙련기능원에 비해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원이,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가,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하여 정규직 근로자가, 이직사유별로는 자발적 이직자에 비해 비자발적 이직자가, 근속기간별로는 장기근속자일수록, 퇴직금 수령 여부별로는 퇴직금 수령자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집단임이 밝혀졌다. 반면에 중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 99인 이하의 영세사업장 및 1,000인 이상의 대규모사업장 이직자, 그리고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직 한 사람들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청년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예상했던 바다. 또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자발적 이직자에 비하여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전문직종 및 숙련기능원에 비하여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단순노무직보다도 높고, 이직 전 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에 우선해야 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성은 실업 발생의 위험과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즉 특정 시점에 구조조정이 활발한 업종의 중·장년층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의 위험이 특히 높고 이들은 근속기간도 길고 비자발적 실업자들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998년 이후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던 금융업의 40세 이상의 고연령·고학력·고임금자는 실업 위험이 매우 높았고 이들은 장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비자발적 실업자일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확

률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시행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고용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외환위기 이후에 30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적용은 200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white collar) 근로자들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단순노무직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한계계층의 근로자들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하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한계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실업급여의 적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내실화가 이루어지면 실업급여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기능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

1.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 I : 빈도분석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재취직수당을 받고 조기에 재취업한 수급자와 조기에 재취업하지 못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지 못한 수급자간에는 어떠한 특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조기재취직수당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표 3-15>는 2001년에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특성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은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비율이 74.5%로 비수급자 비율 60.0%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반면에 여성은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가 25.5%로 비수급자 비율 40.0%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즉 성별로는 남성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여성에 비하여 높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비율이 39.7%로서 같은 연령계층의 비수급자 비율 30.8%에 비하여 현저히 높는데 반하여 50대 이상에서는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20대와 40대에서는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분포와 비수급자 분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30대의 구직급여 수급자는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다른 연령계층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학력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비율이 비수급자의 비율에 비하여 낮은 반면에 전문대졸 이상의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비율이 비수급자의 비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종별로는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비율이 13.5%로 비수급자 비율 9.2%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임을 보여주고 있고,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 전문직과 기술직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에 사무직,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분포는 14.0%로 비수급자 분포 18.4%에 비해 크게 낮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직종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 종사했던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54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국방·교육·보건·기타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했던 구직급여 수급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9인 사업장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인 미만의 사업장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별로는 3년 미만의 근속기간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높고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동일한 집단별로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비중을 요약하고 있다. 같은 연령계층에서는 피보험기간이 길어질수록 조기재취직수당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다가 5년 이상 피보험기간에 이르면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조기재취직수당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소정급여일수가 피보험기간에 따라 길어지게 설계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반면, 5년 이상 피보험기간을 가진 사람들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률이 다소 낮게 나오는 것은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지위를 차지했던 사람들로 이직한 후에도 유보임금이 높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같은 피보험기간 구간 안에서는 6월 이상 1년 미만 구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9세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6월 이상 1년 미만 구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비중이 오히려 떨어지는데, 이는 다른 피보험기간 구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30일씩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지만 이 구간에서만은 모두 90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과 관계가 깊어 보인다.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시까지 소요된 기간별로 보면 이직 후 1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상

〈표 3-15〉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여부별 분포(2001년)

		전 체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조기재취직수당 비수급자
성 별	남성	61.6	74.5	60.0
	여성	38.4	25.5	40.0
연령별	24세 이하	3.8	4.0	3.8
	25~29세	18.6	17.2	18.8
	30~39세	31.9	39.7	30.8
	40~49세	23.5	23.3	23.5
	50~59세	16.8	12.2	17.4
	60세 이상	5.5	3.6	5.7
학력별	초졸	4.8	1.9	5.2
	중졸	9.5	6.5	9.8
	고졸	50.8	47.4	51.2
	전문대졸	12.5	14.8	12.2
	대졸	21.4	27.7	20.5
	대학원 이상	1.1	1.6	1.1
직종별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2	5.5	5.2
	전문가	4.8	6.4	4.6
	기술공 및 준전문가	9.7	13.5	9.2
	사무직원	33.6	33.3	33.6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 시장 판매근로자	6.7	5.2	6.8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0.8	1.2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18.2	17.8	18.2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0	3.1	3.0
	단순노무직근로자	17.9	14.0	18.4
산업별	농수렵업	0.3	0.2	0.3
	어업	0.4	0.5	0.4
	광업	0.5	0.3	0.5
	제조업	36.1	36.1	36.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2	0.2	0.2
	건설업	11.0	14.3	10.6
	도소매 및 소비자	10.6	9.6	10.7
	숙박 및 음식점	2.0	1.3	2.0
	운수창고 및 통신	5.8	5.4	5.8
	금융 및 보험	5.0	2.6	5.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8.6	23.0	18.0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1.5	0.6	1.7
	교육서비스	2.3	1.3	2.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9	2.6	3.0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	2.9	2.1	3.0
	가사서비스	0.0	0.0	0.0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0.0	0.0	0.0

〈표 3-15〉의 계속

		전 체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조기재취직수당 비수급자
사업장 규모별	5인 미만	16.0	12.9	16.4
	5~9인	13.2	14.5	13.1
	10~29인	19.8	22.5	19.5
	30~99인	18.0	20.7	17.7
	100~299인	12.6	13.3	12.5
	300~499인	4.1	3.3	4.2
	500~999인	4.9	4.3	4.9
	1000인 이상	11.3	8.5	11.7
근속 기간별	6월 미만	7.2	9.1	6.9
	6월 이상~1년 미만	22.2	23.8	21.9
	1년 이상~3년 미만	35.0	36.9	34.7
	3년 이상~5년 미만	11.6	11.6	11.6
	5년 이상~10년 미만	12.5	11.6	12.6
	10년 이상	11.6	7.1	12.2
이직후 실업 급여 신청시 까지의 소요 기간	1주일 이내	6.4	9.1	6.0
	1주일 이상 15일 미만	15.0	20.3	14.3
	15일 이상 1월 미만	33.0	36.2	32.6
	1월 이상 2월 미만	25.5	22.1	26.0
	2월 이상 3월 미만	8.6	6.3	8.9
	3월 이상 4월 미만	4.1	2.7	4.3
	4월 이상 5월 미만	2.4	1.4	2.5
	5월 이상 6월 미만	1.6	0.8	1.7
	6월 이상	3.4	1.2	3.7
소정 급여 일수	90일	27.9	23.7	28.4
	120일	24.1	25.1	23.9
	150일	19.1	20.8	18.9
	180일	20.4	25.0	19.8
	210일	8.6	5.4	9.0
전 체		100.0	100.0	100.0

자료: 고용보험 DB.

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직 후 1개월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별로 보면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집단과 210일인 집단은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소정급여일수가 120일, 150일, 180일인 집단은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

〈표 3-16〉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집단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비중(2001년)
(단위: %)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전 체
30세 미만	14.1	14.7	14.8	11.3	14.3
30~49세	10.0	14.7	20.7	18.6	16.3
50세 이상	7.3	11.7	12.8	9.1	10.3
계	10.8	14.2	17.6	14.7	14.5

자료: 고용보험 DB.

〈표 3-17〉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여부별 이직 전 월평균임금(2001년)
(단위: 원)

	평균임금	표준편차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1,210,354	1,583,150
조기재취직수당 비수급자	1,102,675	1,616,304
전 체	1,115,064	1,612,888

자료: 고용보험 DB.

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이직 전 월평균임금이 121만 원인 데 비수급자의 월평균임금은 110만 원으로서 고임금계층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 II : 로짓분석

<표 3-15>의 빈도분석의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30대가,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직종별로는 기술공 및 준전문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등 전문기술직이, 산업별로는 건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종사자가,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9인 사업장으로부터의 이직자가, 근속기간별로는 3년 미만 근속자가, 이직 후 구직급여 신청시까지의 소요기간별로는 1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별로는 120일, 150일, 180일인 집단이 조기에 재취직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관심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 조기재취직수당이 없더라도 조기에 재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남성, 청·장년층, 고학력자가 주로 받는지,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어 조기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 고연령계층, 저학력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주로 받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3-3을 설정하여 검정하기로 한다.

가설 3-3 노동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계층이 한계계층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즉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청·장년층이,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2001년도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에 대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2001)」 자료에서는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가 88명에 불과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었다. <표 3-18>의 분석 결과는 위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하여 관련된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한 것으로서 모형Ⅱ는 모형Ⅰ에 비하여 ‘연령*이직 전 임금’의 변수를 추가한 것이며, 모형Ⅲ은 모형Ⅰ에 비하여 소정급여일수의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표 3-19>는 <표 3-18>의 모형Ⅲ을 다시 성과 학력에 대해 통제한 것으로서 두 번째 모형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남성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만을 추출하여 이들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여부를 분석한 것이며, 세 번째 모형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남성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 중 다시 고졸 학력자만을 추출하여 이들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표 3-18>에 의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3-14>에

서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높았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로서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이다.

연령계층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연령계층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장년층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도 통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표 3-14>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표 3-14>와 <표 3-18>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연령이 많을수록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조기재취직수당을 받고 조기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하여 초·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의 경우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표 3-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력별로는 저학력자에 비하여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확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9>에서 성과 연령만을 통제하여 남성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모형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계층이 한계계층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3-3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청·장년층이,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직종별로 보면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에 비하여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무직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3-19>에서 성과 연령과 학력을 통제한 남성으로서 연령계층이 30~39세이고 고졸 학력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에 비하여 회귀계수의 값이 커져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표 3-18>에서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3-19>에서 성과 연령과 학력을 통제한 남성으로서 연령계층이 30~39세이고 고졸 학력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표 3-18>의 모형 I 과 모형 II에서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3-19>에서는 성과 연령과 학력을 통제한 남성으로서 연령계층이 30~39세이고 고졸 학력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 등에 비하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했던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상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99인 사업장에 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했던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과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을 보면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하지만 소숫점 셋째 자리의 값도 영(zero)이 나올 정도로 극히 작은 양(positive)의 값을 가져, 아주 미미한 효과만이 있었다.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과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실업급여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은 낮아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I (2001년)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0.871***	0.241	-7.239***	0.882	-0.329	0.238
남성	0.650***	0.019	0.688***	0.018	0.629***	0.019
연령(30세 미만)			1.283***	0.183	-0.223***	0.009
30대	-0.036*	0.021				
40대	-0.129***	0.020				
50세 이상	-0.406***	0.024				
학력(고졸)						
초중졸 이하	-0.250***	0.027	-0.282***	0.027	-0.269***	0.027
전문대, 대졸	0.211***	0.017	0.207***	0.017	0.217***	0.017
대학원 이상	0.310***	0.064	0.320***	0.063	0.304***	0.064
직종(서비스근로자 등)						
기술공 및 준전문가	0.131***	0.027	0.126***	0.027	0.135***	0.027
사무직	-0.060***	0.021	-0.071***	0.021	-0.080***	0.021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0.000	0.025	-0.008	0.025	0.007	0.025
단순노무직	-0.076***	0.027	-0.089***	0.027	-0.036	0.027
산업(운수창고·통신업 등)						
제조업	0.275***	0.020	0.280***	0.020	0.233***	0.021
건설업	0.454***	0.028	0.459***	0.028	0.431***	0.02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0.115***	0.028	0.107***	0.028	0.098***	0.02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402***	0.023	0.373***	0.023	0.391***	0.023
규모(10~99인)						
10인 미만	-0.257***	0.018	-0.259***	0.018	-0.181***	0.018
10~299인	0.076***	0.023	0.082***	0.023	0.032	0.024
300~999인	-0.145***	0.028	-0.140***	0.029	-0.207***	0.029
1000인 이상	-0.281***	0.028	-0.274***	0.028	-0.361***	0.029
비자발적 이직	0.360***	0.038	0.364***	0.038	0.397***	0.038
실업급여 신청소요기간 (1주 이내)						
1주~2주 이내	-0.040	0.031	-0.045	0.031	-0.042	0.031
2주~한 달 이내	-0.249***	0.029	-0.256***	0.029	-0.252***	0.029
한 달~두 달 이내	-0.488***	0.030	-0.494***	0.030	-0.472***	0.030
두 달 이상	-0.843***	0.032	-0.847***	0.032	-0.797***	0.032
근속기간(월)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이직 전 임금(로그)	0.028	0.017	0.523***	0.065	0.025	0.017
연령*이직 전 임금			-0.103***	0.013		
소정급여일수(90일)						
120일					0.341***	0.021
150일					0.533***	0.025
180일					0.796***	0.028
210일					0.710***	0.043
N	84,172		84,172		84,172	
-2Log Likelihood	109,007.09		108,986.25		108,160.10	
R ²	0.083		0.083		0.092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고용보험 DB.

62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표 3-19〉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II : 성·연령·학력 통제(2001년)

	남성·30~39세		남성·30~39세·고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1.250***	0.455	-0.580	0.726
학력(고졸)				
초, 중졸 이하	-0.112	0.093		
전문대, 대졸	0.279***	0.029		
대학원 이상	0.469***	0.091		
직종(기타)				
기술공 및 준전문가	0.163***	0.043	0.269***	0.068
사무직	0.026	0.035	0.151**	0.059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0.004	0.042	0.104*	0.056
단순노무직	-0.096	0.059	-0.060	0.074
산업(기타)				
제조업	0.279***	0.039	0.206***	0.057
건설업	0.635***	0.048	0.32*0**	0.07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0.178***	0.050	0.145**	0.07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310***	0.045	0.282***	0.072
규모(10~99인)				
10인 미만	-0.214***	0.032	-0.230***	0.048
10~299인	0.060	0.045	0.114*	0.063
300~999인	-0.208***	0.051	-0.360***	0.077
1000인 이상	-0.308***	0.050	-0.540***	0.082
비자발적 이직	0.320***	0.081	0.447***	0.105
실업급여 신청소요기간(1주 이내)				
1주~2주 이내	0.08	0.055	0.087	0.083
2주~한 달 이내	-0.086	0.051	-0.040	0.076
한 달~두 달 이내	-0.376	0.053	-0.370***	0.079
두 달 이상	-0.633	0.057	-0.610***	0.085
근속기간(월)	0.000***	0.000	0.000***	0.000
이직 전 임금(로그)	0.037	0.032	-0.020	0.051
소정급여일수(90일)				
120일	0.419***	0.039	0.493***	0.061
150일	0.665***	0.043	0.732***	0.066
180일	0.900***	0.047	0.873***	0.076
210일	0.427**	0.207	0.499*	0.281
N	26,432		11,692	
-2Log Likelihood	34,928.88		15,365.29	
R ²	0.063		0.060	

주: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고용보험 DB.

이직 전의 임금수준과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을 살펴보면 <표 3-18>의 모형 I 과 모형 II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III과 <표 3-19>에서 성, 연령, 학력을 통제 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II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령과 이직 전 임금을 동시에 고려하여 ‘연령*이직 전 임금’이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령도 많고 이직 전 임금도 높았던 사람들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며, 연령도 적고 이직 전 임금도 낮았던 사람들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III에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별로 살펴보면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집단에 비하여 120일, 150일, 180일, 210일인 집단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값을 보면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나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인 집단은 180일인 집단보다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성

1.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성 I : 빈도분석

특별연장급여제도는 1998년 7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고실업 시기에 한시적으로 실시된 제도이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이 급증하는 등 실업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60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별연장급여제도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이라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하기 전에 재취업한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표 3-20>은 구직급여수급자 중 최초실업인정일이 1998년 5월 15일부터 1999년 10월 31일¹¹⁾ 기간 동안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특성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개인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은 63.7%로 나타나, 비수급자의 74.2%에 비해 낮은 반면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중 여성은 36.3%를 차지함으로써 비수급자의 25.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에 비하여 27.4%포인트 높지만 비수급자 중 남녀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여성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계층별 분포를 보면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중 30대가 32.7%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27.2%, 40대가 19.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20대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7.5%포인트 높은 반면에 40대에서는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4.2%포인트 낮고, 50대에서도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6.3%포인트 낮다. 즉 특별연장급여는 고연령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연령계층에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수준별 분포를 보면,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49.6%가 고졸 학력자였으며, 초·중졸을 포함한 고졸 이하 학력자가 66.4%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연장급여 비수급자 또한 고졸 이하가 67.8%를 차지함으로써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에 비해 다소 높지만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중은 수급자에 비해 1.4%포인트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연장급여 수급 여부별 학력별 분포는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나,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계층과 전문대 졸업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이전 직장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중 사무직 종사자가 35.4%로 나타나 여타 직종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가 19.3%,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1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연장급여

11) 상정한 기간(1998. 5. 15.~1999. 10. 31)은 최초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까지 지급되므로 동 기간을 상정한다.

여 비수급자 또한 수급자의 직종별 분포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고위임 직원 및 관리자·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집단인 전문직종 종사자가 21.3%로 수급자의 18.5%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중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중은 15.3%로 비수급자의 13.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노무직 종사자나 서비스·판매직종 종사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중 제조업 종사자가 43.7%로서 제조업의 비수급자 비중 38.1%에 비해 5.6%포인트 높고,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장 규모별 분포를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9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비수급자의 비중에 비하여 높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낮다. 즉 특별연장급여는 9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이직자에 비하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별 분포를 보면, 이전 직장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을 제외하고는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비중에 비하여 비수급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일 경우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별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의 차이를 보면 소정급여일수가 60일과 90일인 경우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비수급자의 비중에 비하여 높고, 소정급여일수가 120일 이상인 경우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비수급자의 비중에 비하여 낮다. 즉 소정급여일수가 60일과 90일인 경우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소정급여일수가 120일 이상인 경우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다.

한편, <표 3-21>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이직 전

〈표 3-20〉 구직급여 수급자 중 특별연장급여 수급 여부별 분포

(단위: %)

		전 체	수급자	비수급자
성별	여성	31.9	36.3	25.8
	남성	68.1	63.7	74.2
연령별	20세 미만	0.0	0.0	0.1
	20~29세	24.0	27.2	19.7
	30~39세	31.8	32.7	30.5
	40~49세	21.6	19.8	24.0
	50~59세	17.8	15.2	21.5
	60세 이상	4.7	5.0	4.3
학력별	초졸	5.7	6.3	4.9
	중졸	10.5	10.5	10.6
	고졸	50.7	49.6	52.3
	전문대졸	10.8	11.5	9.8
	대졸	21.1	21.1	21.0
	대학원 이상	1.2	1.0	1.4
직종별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6.4	5.5	7.6
	전문가	4.0	4.0	4.0
	기술공 및 준전문가	9.3	9.0	9.7
	사무직원	35.4	35.4	35.3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 시장판매근로자	7.1	7.6	6.5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0.4	0.3	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19.5	19.3	19.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3.7 14.3	3.7 15.3	3.6 13.1
산업별	농수림업	0.1	0.1	0.2
	어업	0.2	0.2	0.3
	광업	0.5	0.5	0.6
	제조업	41.3	43.7	38.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7	0.3	1.2
	건설업	10.9	11.7	9.9
	도소매 및 소비자 숙박 및 음식점	8.5 1.5	9.1 1.7	7.7 1.4
	운수창고 및 통신	5.8	4.0	8.3
	금융 및 보험	10.8	9.1	13.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등	14.2 5.3	14.5 5.3	13.8 5.4
규모별	5인 미만	5.1	5.3	4.9
	5~9인	6.3	6.6	5.9
	10~29인	16.6	17.5	15.4
	30~99인	23.2	24.3	21.6
	100~299인	16.0	16.0	16.1
	300~499인	6.0	5.5	6.7
	500~999인	7.3	7.0	7.7
	1000인 이상	19.4	17.8	21.7
전 체		100.0	100.0	100.0

〈표 3-20〉의 계속

		전 체	수급자	비수급자
이전직장 근속기간	6개월 미만	3.5	3.5	3.6
	6개월 이상 1년 미만	13.7	14.3	12.9
	1년 이상 3년 미만	31.6	34.2	28.1
	3년 이상 5년 미만	15.0	16.5	12.8
	5년 이상 10년 미만	17.1	20.1	12.9
	10년 이상	19.1	11.3	29.7
실업급여 신청소요 기간	1주 이내	6.7	6.9	6.5
	1주~2주 이내	17.1	16.9	17.2
	2주~한 달 이내	33.4	31.9	35.4
	한 달~두 달 이내	21.5	21.4	21.6
	두 달 이상	21.4	22.9	19.2
소정 급여 일수	30일	0.4	0.4	0.4
	60일	30.5	34.5	25.1
	90일	27.5	30.1	23.8
	120일	31.3	27.2	36.8
	150일	10.3	7.8	13.8
전 체		100.0	100.0	100.0

주: 구직급여 수급자 중 최초실업인정일이 1998. 5. 15~1999. 10. 31.인 경우만 상정함.

자료: 고용보험 DB.

〈표 3-21〉 특별연장급여 수급 여부별 이직 전 평균임금수준·이전 직장 근속기간
(단위: 원)

	평균임금	표준편차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973,295	993,710
특별연장급여 비수급자	1,082,888	935,521
전 체	1,019,339	971,195

주: 구직급여 수급자 중 최초실업인정일이 1998. 5. 15~1999. 10. 31.인 경우만 상정함.

자료: 고용보험 DB.

평균임금은 97만 원으로 비수급자의 108만 원에 비해 10.1%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임금계층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성 II: 로짓분석

<표 3-20>의 빈도분석을 통해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계층별로는 20대와 30대가,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가, 이직 전의 직종별로는 서비스·판매직종과 단순노무직종이, 이직 전의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이직 전 사업장의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수가 99인 이하의 사업장이,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별로는 6월 이상 10년 미만의 근속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별로는 60일과 90일인 집단이 구직급여를 소진하고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관심은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저학력자, 고연령자 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고학력자, 청·장년층 등에 비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급여일수만큼의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재취업하지 못하여 고실업 시기에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4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저학력자, 고연령자 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고학력자, 청년층 등에 비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표 3-22>는 최초실업인정일이 1998년 5월 15일~1999년 10월 31일인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연장급여 수급 여부에 대하여 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표본은 각각 10% 임의추출한 것으로 개인적인 인적 특성과 이직 전 사업장 특성, 실업급여의 제도적 특성을 통제하여 분석한 것이다.

먼저 개인의 인적 특성 변수를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특별연장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30세

미만에 비하여 50세 이상가 회귀계수 값이 가장 크고 다른 연령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0세 미만에 비하여 30대와 40대가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과 연령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고연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과 청년층 등에 비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4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수준별로는 고졸자에 비해 초·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3-4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도 고졸자에 비해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여성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같은 학력수준의 남성은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농업·숙련근로자에 비해 높은 반면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수급 가능성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사무직과 기능원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한 여성 이직자의 경우 남성과는 정반대로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이직 전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는 농수림어업, 전기·가스, 통신 등의 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이나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 모든 업종에서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남성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수가 많을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시근로자수가 30~99인 사업장에 비하여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을 뿐 그 이외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전체		여성		남성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2.706***	0.366	0.920	0.696	2.966***	0.507
여성	0.358***	0.024				
연령(30세 미만)						
30대	0.169***	0.030	-0.079	0.049	0.360***	0.040
40대	0.158***	0.035	-0.109**	0.066	0.393***	0.046
50세 이상	0.479***	0.043	0.644***	0.091	0.582***	0.053
학력(고졸)						
초, 중졸 이하	0.200***	0.031	0.225***	0.061	0.171***	0.037
전문대, 대졸	0.135***	0.023	0.180***	0.045	0.117***	0.028
대학원 이상	-0.137	0.088	0.470*	0.271	-0.210**	0.095
직종(농어업숙련근로자 등)						
사무직	0.095*	0.052	-0.201	0.127	0.170***	0.058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0.011	0.051	-0.177	0.126	0.043	0.057
고위임직원·(준)전문가·기술공	0.075	0.053	0.042	0.139	0.082	0.059
서비스·판매직	0.026	0.060	-0.301**	0.137	0.127*	0.069
단순노무직	-0.110**	0.054	-0.219*	0.125	-0.112*	0.062
규모(30~99인)						
30인 미만	-0.161***	0.027	-0.155***	0.050	-0.168***	0.032
100~299인	0.061**	0.030	0.074	0.057	0.042	0.036
300~999인	0.146***	0.033	0.225***	0.063	0.103***	0.039
1,000인 이상	0.190***	0.032	0.218***	0.060	0.128***	0.038
산업(농수림어업, 전기·가스·통신 등)						
제조업	0.380***	0.031	0.356***	0.057	0.365***	0.038
건설업	0.361***	0.040	0.300***	0.089	0.367***	0.047
도소매·숙박업	0.290***	0.041	0.317***	0.072	0.273***	0.05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111***	0.037	0.131**	0.067	0.090**	0.045
금융 및 보험	0.113***	0.042	0.243***	0.071	-0.025	0.055
비자발적 이직	0.255***	0.051	0.356***	0.085	0.194***	0.065
이직 전 임금(로그)	-0.201***	0.025	-0.081	0.050	-0.239***	0.029
근속기간(월)	-0.006***	0.000	-0.006***	0.000	-0.006***	0.000
실업급여 신청 소요기간(1주 이내)						
1주~2주	0.010	0.041	0.063	0.084	-0.005	0.047
2주~한 달	-0.059	0.038	0.035	0.077	-0.089**	0.044
한 달~두 달	-0.059	0.040	0.069	0.080	-0.105**	0.047
두 달 이상	0.002	0.041	0.079	0.079	-0.019	0.048
소정급여일수(30일)						
60일	0.603***	0.142	0.489***	0.163	0.735**	0.307
90일	0.589***	0.142	0.716***	0.164	0.525*	0.308
120일	0.285**	0.144	0.042	0.173	0.355	0.308
150일	0.071	0.149	0.010	0.193	0.109	0.311
N	52,615		16,855		35,760	
-2Log Likelihood	67,088.54		20,581.26		46,226.60	
R ²	0.083		0.058		0.084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고용보험 DB.

이전 직장 이직사유를 보면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이직한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특별연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직 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 전 근속기간이 길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별로는 소정급여일수 30일인 집단에 비하여 소정급여일수가 60일, 90일, 120일인 집단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30세 미만의 연령 계층에 비하여 30대 이상의 연령계층이, 고졸자에 비해 초·중졸 이하와 전문대·대졸자가, 직종별로는 사무직종 종사자가,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종사자가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또한 이직 전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이직 전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저학력자, 고연령자 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고학력자, 청년층 등에 비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3-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제4장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행태

실업급여의 지급은 수급자에게 실업의 고통과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줄여주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노력은 비수급자에 비하여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은 비수급자에 비하여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길게 하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나라들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준 등을 매우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비수급자들에 비하여 구직방법, 구직기간,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의 강도(強度), 재취업했을 때의 임금수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실업급여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1. 직장탐색이론

실업급여 지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인 모형으로서 직장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바, 이는 Lippman and McCall(1979), Burdett(1979), Mortensen(1977, 1986)의 연구에 잘 요약되어 있다. 직장탐색이론은 실업자는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수준에 관한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직장을 탐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하에서 실업자는 본인의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직장탐색 활동의 노력의 강도(job search intensity)와 수용 가능한 임금수준(acceptable wage), 즉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을 조절하게 된다. 실업자는 본인의 의중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구인자가 있을 때 직장탐색 활동을 중단하고 그곳에 취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직장탐색이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가정은 첫째, 임금 제의(wage offers)의 분포는 외생적(外生的)으로 결정된다는 것과 둘째, 구인자로부터 제의 받은 임금이 구직자의 의중임금보다 높을 경우 취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직자는 본인이 기대하는 임금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임금 제의를 받아들여 취업하거나 의중임금 수준을 충족시키는 직장을 계속 탐색하게 된다. 그러나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중임금 수준도 점차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직장탐색이론하에서는 실업이란 다분히 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직장탐색이론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업의 비용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를 낮추거나 의중임금 수준을 높이게 되고, 이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 제의를 받아들일 확

률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업기간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높이게 된다고 주장한다(Feldstein, 1973; Ehrenberg and Smith, 1988). 즉,

실업급여 지급 → 의중임금수준 상향조정 → 실업기간 증가 → 실업률 증가

그런데 직장탐색이론에서는 실업급여가 기간의 제한 없이 지급되며 실업기간 중 구직자의 구직노력이 일정하다고 가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제도에서나 실업급여의 지급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지급 되기 때문에 소정실업급여 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의중임금 수준이 하락하게 되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기의 의중임금 수준이 너무 높았었음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지급이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실업급여의 제도적인 면을 크게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Hansen, 1977; Burdett, 1979). 실업급여의 지급이 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경력과 기능의 부조화로 인한 또 다른 이직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주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해 줄 경우 실업급여가 실업률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Usategui, 1989; Haber and Murray, 1966)).

직장탐색이론에서 실업기간 중 구직자의 구직 노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도 비현실적임에 틀림없다. 특히 구직자의 구직노력은 외생적이라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생변수(內生變數)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바, Mortensen(1977), Barron and Mellow(1979), Kim (1992)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Tannery(1983), Flemming(1978), Ben-Horin and Zuckerman(1987) 등은 실업급여의 지급은 구직에 필요한 채용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구직성과를 높이고 실업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Kahn and Low(1985)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한 실업인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실업급여의 지급 →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적극적 취업알선 → 구직성과 향상 → 실업기간 단축 → 실업률 감소

직장탐색이론은 전체 거시경제모형 중에서 노동시장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용자측은 고려하지 않고 구직자측만 고려했다는 점에서 Rothschild(1973)는 직장탐색이론을 ‘부분-부분균형이론’(partial-partial equilibrium theory)이라고 일컫고 있다.

2. 균형이론

균형이론의 대표적인 것으로 Albrecht and Axell(1984)의 모형에서는 여가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체계가 상이한 두 종류의 근로자군(群)이 존재하고 기업에도 생산력이 상이한 두 종류의 군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두 가지의 균형임금이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 실업급여의 수준이 증가하면 고임금부문의 균형임금은 실업급여의 증가분만큼 상승하고 저임금부문의 균형임금은 실업급여의 증가분보다 낮게 상승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결국 실업급여의 증가로 인하여 균형 실업률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균형이론에 의하면 실업급여의 증가가 고임금부문과 저임금부문 간의 임금격차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저임금근로자들의 상대임금을 증가시키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괴리현상은 실업자는 고임금부문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이른바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모형 속에서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Atkinson and Micklewright, 1991).

균형이론은 구직자의 행태에만 초점을 맞춘 직장탐색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했으나 고용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탐색이론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균형이론의 분석체계 내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제도적 측면을 반영한 모형으로서는 Burdett and Mortensen(1980)의 모형이 있다. 이 모형의

핵심적인 가정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자격이 없다는 제도적인 요소를 반영한다. 이 모형이 예측하는 바를 요약하면, 실업급여가 시행되면 고용주의 해고비용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고용주는 고용을 많이 하게 되고 노동시장에의 신규 진입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직장탐색을 하게 되므로 경제 전체의 실업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Pissarides(1979)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고 실업자의 직장탐색 활동은 공공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며, 구인자도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하게 되므로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구인·구직자가 보다 원활히 연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은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조건으로 하므로 구직자의 구직활동 노력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를 새로 시행하거나 실업급여를 증가시킨다고 하여 반드시 실업이 늘지 않는다고 Pissarides(1979)는 결론짓고 있다.

3. 실업급여의 효과에 관한 주요 실증연구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Ehrenberg and Oaxaca(1976), Fields(1977), Marston(1975), Lininger(1963), Holen and Horowitz(1974), Burgess and Kingston(1981), Moffitt and Nicholson(1983), Mortensen(1977), Danziger, Haveman and Plotnick(1981), Lancaster and Nickell(1980), Hamermesh(1977), Welch(1977), Classen(1977), Topel and Welch(1980), Feldstein(1978), Moffitt(1985), Katz and Meyer(1990)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일중·최공필, 1994). Lancaster and Nickell(1980)에 의하면 실업급여액에 대한 실업기간의 탄력성은 약 0.6으로 추정되었다. Moffitt and Nicholson(1982)에 의하면 실업급여의 실업 발생 전 임금에 대한 비율인 임금대체율(wage replacement rate)이 10%포인트 증가할 때 실업기간은 약 1

주(남자 0.98주, 여자 0.84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주일 확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0.1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ffitt(1985)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준을 10% 인상하면 실업기간을 0.5주 증가시키고,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주 확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0.15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lon(1985)의 분석에 의하면 임금대체율이 10%포인트 증가할 때 실업기간은 약 0.5~1주일 증가하고,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1주 확대되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0.3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yer(1990)의 분석에 의하면 임금대체율을 10%포인트 증가시키면 실업기간은 1.5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tz and Meyer(1990)에 의하면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1주 확대되면 실업기간이 0.16~0.20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dson and Woodbury(1995)의 분석에 의하면 임금대체율이 10%포인트 증가할 때 실업기간은 약 0.3~1.1주 증가하고,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1주 확대되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0.05~0.20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tkinson and Micklewright(1991)는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적 요인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 나라마다 실업급여의 지급이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강화하고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실업급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업급여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Burgess and Kingston(1981)은 실업급여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업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백인보다는 흑인 등 유색인종에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넷째,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실업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물론 실업기간 자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Burdett(1980)은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실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그 영향이 감소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Katz and Meyer(1990)와 Ham and Rea (1987)는 실업급여의 종료 시점을 전후하여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상태로부터 벗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거의 다 소진할 시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급여 혜택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유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종종 주장되고 있다. 즉 실업으로 인한 고통의 수준이 감소함으로써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Johnson and Layard(1986)는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자발적 이직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Nickell (1982)과 Stern(1986)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Moffitt and Nicholson(1992), Moffitt(1985), Ham and Rea (1987), Corson and Nicholson(1988), Katz and Meyer(1990)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실업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Katz and Mayer(1990)는 실업기간의 단축만을 위해서라면 실업급여의 기간을 줄이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액을 줄이는 것보다 2배 정도의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urtless(1990) and Bjorklund (1978)의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이 총체적인 노동공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tkinson(1990)은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준이나 급여기간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직장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즉 실업급여의 지급과 더불어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고용정보의 제공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은 구인·구직자 간의 보다 합리적인 결합(better job matching)의 확률을 높여줌으로써 적재적소 취업으로 근로자의 노동생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공급 형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Hamermesh, 1977, 1979 및 Clark and Summers, 1982).

제2절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취업 행태 비교

1.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취업 상태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0년 4~6월의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1,002명과 비수급자 1,010명을 200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취업상태를 추적조사하여 조사시점 현재의 취업상태를 비교분석하였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취업 경험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50.9%가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재취업 경험을 갖고 있는 반면,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경우는 75.7%가 재취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재취업 경험이 24.8%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시점 현재의 취업상태에 있어서는 수급자의 경우 58.5%가 미취업 상태에 있는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는 40.3%만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조사시점 현재 임금근로자로 취업해 있는 경우가 68.6%로 전체 수급자의 34.9%를 차지하였고, 비수급자의 경우 조사시점 현재 임금근로자로 취업해 있는 비율은 69.3%로 전체 비수급자의 52.5%로 조사되었다. 즉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임금근로자로 취업해 있는 사람의 비중은 실업급여 수급

자와 비수급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전체 수급자에서 비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이직 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되는 비율이 약 18%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시점 현재 자영업자로 취업해 있는 비율은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각각 6.4%와 6.7%로 거의 비슷하였다.

〈표 4-1〉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취업 상태 비교

	재취업 경험	조사시점 현재 취업상태	고용보험 적용사업 취업 여부
수급자 (n=1,002)	경험 있음 (50.9%, n=510)	임금근로자 (취업 경험자의 68.6%, n=350) (전체 수급자의 34.9%)	적용(81.3%, n=338) (전체 수급자의 33.7%)
		자영업자 (취업 경험자의 12.6%, n=64) (전체 수급자의 6.4%)	비적용(18.7%, n=78) (전체 수급자의 7.8%)
		무급가족종사자 (취업 경험자의 0.4%, n=2) (전체 수급자의 0.2%)	
		미취업자 (취업 경험자의 18.4%, n=94) (전체 수급자의 9.4%)	미취업(n=586) (전체 수급자의 58.5%)
	경험 없음 (49.1%, n=492)	미취업자 (49.1%, n=492) (전체 수급자의 49.1%)	
비수급자 (n=1,010)	경험 있음 (75.7%, n=765)	임금근로자 (69.3%, n=530) (전체 비수급자의 52.5%)	적용(83.9%, n=506) (전체 비수급자의 50.1%)
		자영업 (8.9%, n=68) (전체 비수급자의 6.7%)	비적용(16.1%, n=97) (전체 비수급자의 9.6%)
		무급가족종사자 (0.6%, n=5) (전체 비수급자의 0.5%)	
		미취업 (21.2%, n=162) (전체 비수급자의 16.0%)	미취업(n=407) (전체 비수급자의 40.3%)
	경험 없음 (24.3%, n=245)	미취업 (24.3%, n=245) (전체 비수급자의 24.3%)	

주: 2000년 4~6월 이직자를 대상으로 200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재취업하였을 때 고용보험 적용사업으로 재진입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자의 81.3%, 전체 수급자의 33.7%이며, 비수급자는 재취업자의 83.9%, 전체 수급자의 50.1%로 나타났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재취업하였을 때 고용보험 적용사업으로의 재진입률이 8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만을 볼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이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직을 했는가 등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의 단순비교에 주의를 요한다.

2.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이직사유 및 재취업 준비 여부 비교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주로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해 재취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수급자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거나 자기사업을 하기 위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하고 사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직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2001. 11)」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N=1,002)의 이직사유는 ‘회사 사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79.0%로 ‘개인 사정’ 때문이라는 응답 21.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비수급자(N=1,010)는 ‘개인 사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68.4%로 ‘회사 사정’ 때문이라는 응답 31.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직사유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이직 전에 새로운 직장이나 자영업 등을 미리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한 후 이직을 하는가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2001. 11)」에 의하면 이직 이전에 새로운 직장 또는 자영업 등을 미리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한 후 이직을 하는 비율이 실업급여 수급자는 10.2%인 반면 비수급자는 27.7%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준비 없이 이직한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직사유 및 이직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준비 여부에 있어서의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차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이직 전 준비의 불충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소요기간을 비수급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게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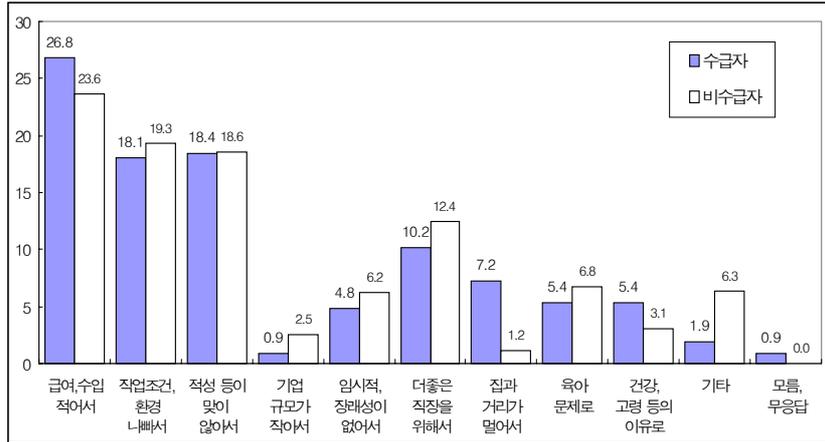
3.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구직활동 비교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구직활동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2001. 11)」 자료를 이용하여 우선 이직 후 첫 직장 또는 창업을 하기 전까지 취업 제의를 받아 본 경험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취업 제의를 받아 본 적 있다’라는 응답에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N=1,002)는 44.1%, 비수급자(N=1,010)는 52.6%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2주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과 취업알선을 받아야 하는데 취업 제의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55.9%나 된다는 것은 현재의 실업인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취업 제의를 받아 본 사람 중에서 취업 제의를 받은 곳에 취업한 비율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N=442)는 24.9%로 매우 낮은 반면에 비수급자(N=765)는 69.7%가 응답하여 취업 제의를 받은 곳에 취업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 제의를 받은 곳에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자(N=332)와 비수급자(N=161) 모두 ‘급여 또는 수입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26.8%,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작업조건과 환경이 나빠서’,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직 후 좋은 일자

(그림 4-1) 취업 제의를 받은 곳에 취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리로의 재취업이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표 4-1>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50.9%와 비수급자의 75.7%가 ‘이직 후 재취업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재취업 경험의 차이가 구직활동의 차이에 기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의 기회비용이 실업급여 금액만큼 상쇄되어 비수급자에 비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기울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強度)를 비교해 보면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직 후 재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직 후 다음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의 비율이 예상과는 달리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즉 이직 후 재취업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이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각각 87.1%, 82.7%로 재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재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직 후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구직활동을 한 기간을 비교해 보면 <표 4-3>에서 보듯이 이직

84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표 4-2> 이직 후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구직활동 내용(재취업 경험자 대상)

(단위: %)

	수급자	비수급자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87.1	82.7
구직활동을 하다 말다(간헐적으로) 하였다	12.9	17.3
전 체	100.0 (N=510)	100.0 (N=76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4-3> 이직 후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구직활동 기간

(단위: %)

	3개월 이하	4~6개월	7~12개월	13개월 이상	전 체
수급자	38.6	28.8	25.9	6.7	100.0 (N=510)
비수급자	80.3	12.0	6.9	0.8	100.0 (N=76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에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35.6%이고 비수급자는 80.3%였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재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직 후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입사원서를 제출하였거나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본 횟수에 대해 비교해 보면 <표 4-4>와 같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5군데 이하의 비율이 53.9%인 데 반하여 비수급자의 경우 89.7%가 5군데 이하를 알아보고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이 훨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조사시점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이직 후 1개월 이내에 구한 일자리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6.3%에 불과했으나 비수급자는 38.2%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직 후 1개월 이내에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표 4-4〉 이직 후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알아본 일자리 수

	5군데 이하	6~10군데	11~20군데	21군데 이상
수급자 (N=510)	53.9	23.9	16.9	5.3
비수급자 (N=765)	89.7	7.2	1.8	0.8

주: 비수급자 중에는 무응답이 0.5%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구한 사람들이 이직 후 1개월 이내에 현재의 일자리를 구하게 된 동기를 보면 <표 4-5>에서 보듯이 이직 전에 이미 현재의 일자리에 취업이 약속되어 있었거나 준비했던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실업급여 수급자는 15.6%에 불과하나 비수급자는 49.7%에 달하는 등 재취업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차이가 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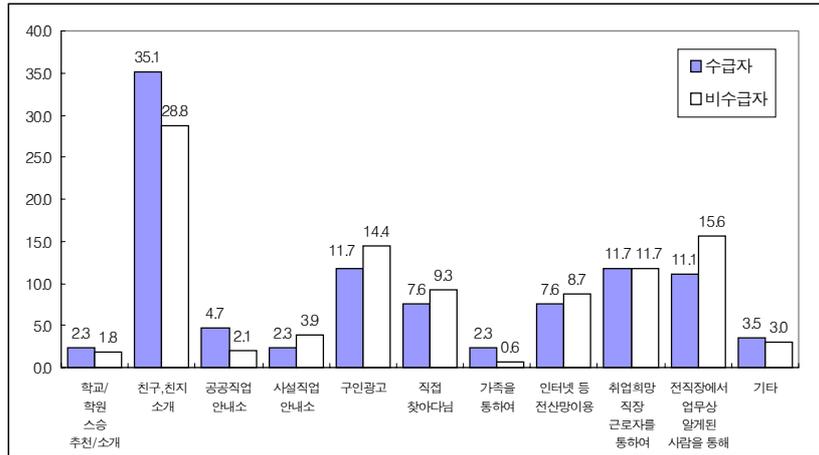
〈표 4-5〉 이직 후 한 달 이내에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구하게 된 배경
(단위: %)

	수급자 (N=32)	비수급자 (N=292)
- 직장을 나오기 전부터 이미 취업 약속 또는 준비하였던 일자리에 취업(창업)하였다	15.6	49.7
- 직장을 나오기 전에 이미 취업 약속 또는 창업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직을 대비하여 충분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기에 재취업(창업)할 수 있었다	18.8	18.2
- 이직자에 대비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직하게 되었지만 이전 직장과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에 취업(창업)할 수 있었다	50.0	24.3
- 이직에 대비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직하게 되었지만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창업)할 수 있었다	9.4	5.5
- 기 타	6.2	2.3
전 체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그림 4-2] 이직 후 구직방법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한편 이직 후 구직방법을 보면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친구나 친지의 소개에 의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고 신문·TV·벽보 등의 구인광고, 전 직장 사람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 인터넷·PC통신 등 전산망의 이용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장의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노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실업급여의 지급이 본인들의 구직활동 노력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10.4%만 동의하고 89.6%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4-6>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경우 “실업급여 때문에 구직활동의 노력이 감소했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0.6%,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9.8%로 긍정적 견해가 10.4%인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5.2%,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64.4%로 부정적 견해가 89.6%였다. “재취업할 의사가 없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구직활동에 나서게 되

〈표 4-6〉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N=1,002)
- 실업급여 때문에 구직활동 노력이 감소했다	0.6	9.8	64.4	25.2	100.0
- 실업급여 덕분에 시간을 갖고 나에게 적합한 직장을 알아볼 수 있었다	6.0	49.5	36.0	8.5	100.0
- 재취업할 의사가 없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였다	1.0	14.3	52.2	32.5	100.0
-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관계 없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였다	28.8	48.6	18.4	4.2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0%,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14.3%로 동의하는 응답자가 15.3%인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2.5%,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52.2%로 부정적 견해가 84.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고, 구직기간에 있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실업급여가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하겠다.

한편 “실업급여 덕분에 시간을 갖고 나에게 보다 적합한 직장을 알아볼 수 있었다”와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재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였다”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각각 55.5%와 77.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급여와 상관없이 구직활동을 해왔으며, 실업급여제도가 구직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정 정도 물질적·심리적 여유를 갖게 하여 구직활동의 내실을 기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 2000년 상반기 구직급여 신규 수급자의 구직급여 소진율

(단위: %)

	피보험기간			전 체
	6월~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30세 미만	62.2	64.5	66.9	64.5
30~49세	64.6	60.9	60.9	61.5
50세 이상	70.4	67.5	73.9	71.3
전 체	64.7	63.1	65.9	64.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제6권 제2호(2001 가을), 62쪽.

<표 4-7>에서 보면 2000년 상반기 구직급여 신규 수급자의 구직급여 소진율은 평균적으로 64.5%였다. 실업급여가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 구직활동을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한 이후의 구직활동 노력의 변화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 4-8>에서 보듯이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한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노력에 대해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

<표 4-8> 실업급여 소진 후의 구직활동 노력의 변화

(단위: %)

	구 성 비
- 종전보다 매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20.7
-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16.8
-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38.5
- 종전보다 소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12.8
- 종전보다 매우 소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11.1
-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0.3
전 체	100.0(N=77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다'는 응답은 37.5%로 종전보다 소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2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정급여일수의 구직급여를 소진한 이후에 구직활동을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급여가 구직활동 노력을 약화시키는 데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3절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는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비수급자는 자기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높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의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비수급자는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도 실업 초기에 재취업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제3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 및 영세기업으로부터의 이직자의 비율이 높다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은 비수급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exit rate)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1.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탈출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부터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실업으로부터 취업으로의 탈출률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료는 한국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2001. 11)」 자료이다. 본 자료는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된 것이다.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실제 지급받은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2주간의 대기기간과 2주간의 실업 인정 대상기간을 거쳐야만 실업급여가 최초로 지급된다. 따라서 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본 자료의 수급자 표본에 추출되려면 이직 후 한 달 동안은 재취직된 경험이 없어야 한다. 사전적으로 이직 후 한 달 동안은 재취직된 경험이 없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추출될 수 있는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취직 소요기간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대부분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43일이 지난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직 후 두 달 동안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한국노동연구원, 2001. 11)」 자료를 활용하여 실업으로부터 취업으로의 탈출률을 계산하면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해 비수급자의 이직 직후 탈출률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은 이직 후 첫 6개월 동안에 5% 전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동하다가 점점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비수급자의 탈출률은 첫 1개월에는 31.5%라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첫 3개월 동안에 58.6%가 취업을 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의 탈출률 16.5%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하여 비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빨리 재취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탈출률의 차이는 평균실업기간에 있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는 5.51개월, 비수급자는 2.45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3]은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실직기간 경과에 따른 탈출률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다.

Katz and Meyer(1990)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이직 후 탈

〈표 4-9〉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실업기간 경과에 따른 탈출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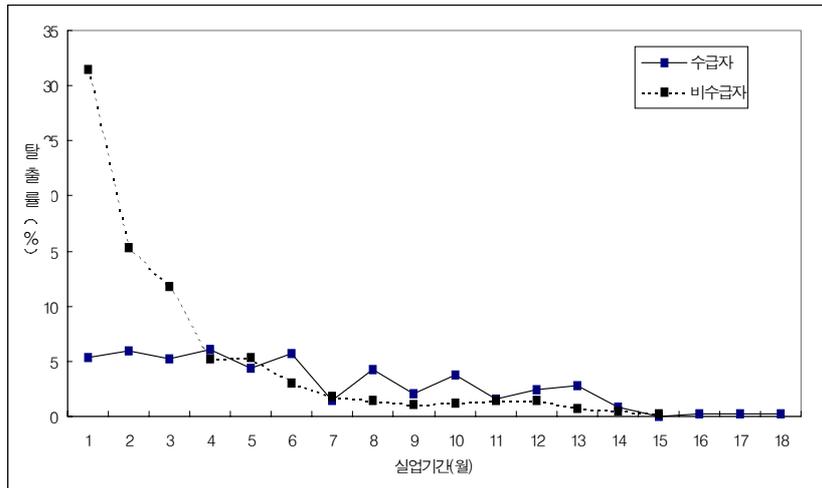
실업기간 (월)	수급자			비수급자		
	취업자	실직자	탈출률	취업자	실직자	탈출률
1	53	1,002	5.3	319	1,012	31.5
2	57	949	6.0	106	693	15.3
3	46	892	5.2	69	587	11.8
4	52	846	6.1	27	518	5.2
5	35	794	4.4	26	491	5.3
6	43	759	5.7	14	465	3.0
7	10	716	1.4	8	451	1.8
8	30	706	4.2	6	443	1.4
9	14	676	2.1	5	437	1.1
10	25	662	3.8	5	432	1.2
11	10	637	1.6	6	427	1.4
12	15	627	2.4	6	421	1.4
13	17	612	2.8	3	415	0.7
14	5	595	0.8	2	412	0.5
15 이상	4	590	0.7	1	410	0.2
평균 실업기간	5.51월			2.45월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출력 분석을 통해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할 시점을 전후하여 탈출률이 급상승하는 특성을 발견했다. 또한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45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예에서도 실업급여를 소진한 후 1개월 내에 재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4-9>와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탈출률이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여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한 시점을 전후하여 탈출률이 급상승하는 특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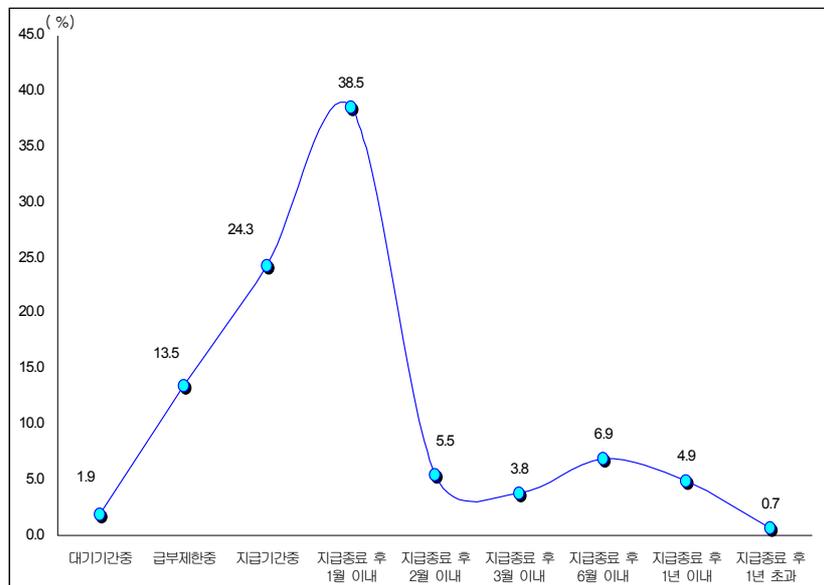
92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그림 4-3]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실업기간 경과에 따른 탈출률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그림 4-4] 일본의 45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 경과에 따른 재취업률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내부자료.

2. 고용보험 DB 자료를 활용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탈출률

앞서 살펴본 <표 4-1>은 이직 후 15~18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50.9%가 재취업을 한 경험이 있으며, 34.9%는 임금근로자로 재취업된 상태에 있고, 33.7%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취업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재취업된 비율이 33.7%에 불과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 재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7.8%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재취업한 비율을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로 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재취업한 것을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로 보고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탈출률을 계산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신청 후 첫 14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서 이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직 후 첫 10일 내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탈출자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표 4-10>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전체로 보면 탈출률이 가장 높은 때는 2.11%를 기록한 구직급여 신청 후 61~70일, 91~100일 구간이다. 또한 121~130일, 151~160일, 181~190일, 211~220일 구간의 탈출률도 약간 높은 편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탈출률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표 4-10>과 [그림 4-5]에서 [그림 4-8]까지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사람들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한 지 20여 일이 지난 111~120일이 되는 시점에 탈출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사람들은 51~60일 구간에서 탈출률이 가장 높았으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한 지 30여 일이 지난 151~160일이 되는 시점에 탈출률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및 180일인 사람들은 211~220일 구간에서, 210일인 사람들은 231~240일 구간에서 탈출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탈출률의 실업기간별 변화는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서 [그림

94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표 4-10〉 소정급여일수별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으로부터 취업으로의 탈출률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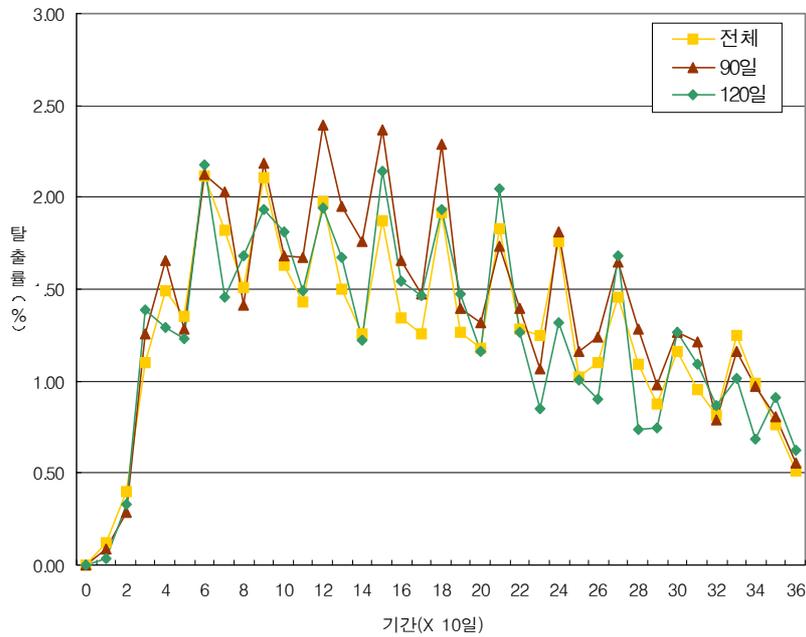
(단위: 명, %)

기간(×10일)	전 체			소정급여일수별 탈출률				
	실업유지자수	실업탈출자수	탈출률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0	23,812	0	0.00	0.00	0.00	0.00	0.00	0.00
1	23,812	29	0.12	0.09	0.03	0.13	0.18	0.00
2	23,783	95	0.40	0.29	0.33	0.24	0.22	0.24
3	23,688	260	1.10	1.26	1.38	1.39	0.94	0.72
4	23,428	349	1.49	1.65	1.29	1.16	1.09	0.36
5	23,079	313	1.36	1.28	1.23	1.42	1.66	0.24
6	22,766	481	2.11	2.12	2.17	2.26	1.65	1.09
7	22,285	405	1.82	2.03	1.45	1.64	1.71	0.37
8	21,880	331	1.51	1.41	1.68	1.38	1.47	0.12
9	21,549	454	2.11	2.18	1.93	2.34	1.85	0.99
10	21,095	343	1.63	1.68	1.81	1.52	1.28	0.25
11	20,752	297	1.43	1.67	1.49	1.20	1.14	0.75
12	20,455	404	1.98	2.39	1.95	1.93	1.60	1.01
13	20,051	300	1.50	1.95	1.67	1.08	1.50	0.63
14	19,751	249	1.26	1.76	1.23	0.89	1.19	0.64
15	19,502	365	1.87	2.37	2.14	1.78	1.20	0.26
16	19,137	258	1.35	1.65	1.54	1.12	0.96	0.26
17	18,879	238	1.26	1.47	1.47	1.23	0.83	0.39
18	18,641	358	1.92	2.29	1.93	1.85	1.06	0.65
19	18,283	232	1.27	1.40	1.48	1.48	0.58	1.04
20	18,051	213	1.18	1.32	1.17	1.33	0.90	0.79
21	17,838	326	1.83	1.73	2.04	2.41	1.95	1.33
22	17,512	224	1.28	1.40	1.27	1.13	1.25	0.40
23	17,288	216	1.25	1.07	0.85	0.84	1.22	0.95
24	17,072	300	1.76	1.81	1.32	1.88	1.85	1.91
25	16,772	172	1.03	1.16	1.00	0.76	0.68	0.56
26	16,600	183	1.10	1.24	0.90	1.06	0.78	0.70
27	16,417	239	1.46	1.65	1.68	1.39	1.52	0.42
28	16,178	177	1.09	1.28	0.74	0.73	1.29	0.42
29	16,001	140	0.87	0.98	0.74	0.90	0.76	1.14
30	15,861	184	1.16	1.26	1.26	1.21	1.22	1.15
31	15,677	149	0.95	1.21	1.09	0.75	0.77	1.02
32	15,528	126	0.81	0.79	0.86	0.76	0.73	0.74
33	15,402	192	1.25	1.17	1.02	1.19	0.89	0.44
34	15,210	151	0.99	0.97	0.68	0.52	0.37	0.74
35	15,059	115	0.76	0.81	0.91	0.89	0.90	0.30
36	14,944	77	0.52	0.55	0.62	0.90	0.59	0.30
미탈출자	-	-	14,843	4,131	3,994	3,411	1,863	663
전 체	-	-	23,812	6,949	6,383	5,357	2,780	838

자료 : 고용보험 DB.

4-4의 일본의 예 및 Katz and Meyer(1990)가 미국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할 시점을 전후하여 탈출률이 급상승하는 특성을 발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한 시점을 전후하여 탈출률이 급상승하는 특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그림 4-9]를 보면 [그림 4-4]의 일본의 경우와 대비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의 탈출률이 가장 높고 실업급여 종료 후 1월 이내의 탈출률은 매우 낮아 일본의 경우처럼 구직급여를 소진한 직후에 탈출률이 급상승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 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은 미미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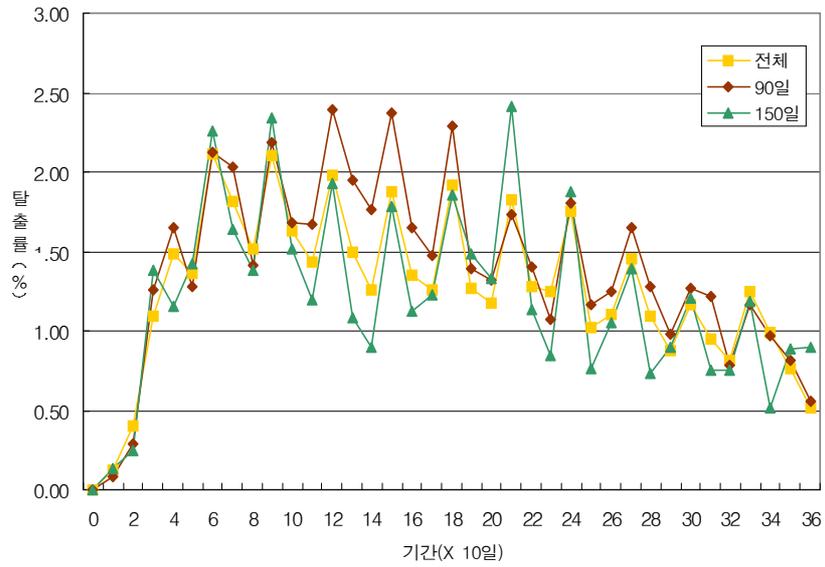
[그림 4-5] 소정급여일수별 탈출률(전체, 90일, 120일)



자료 : 고용보험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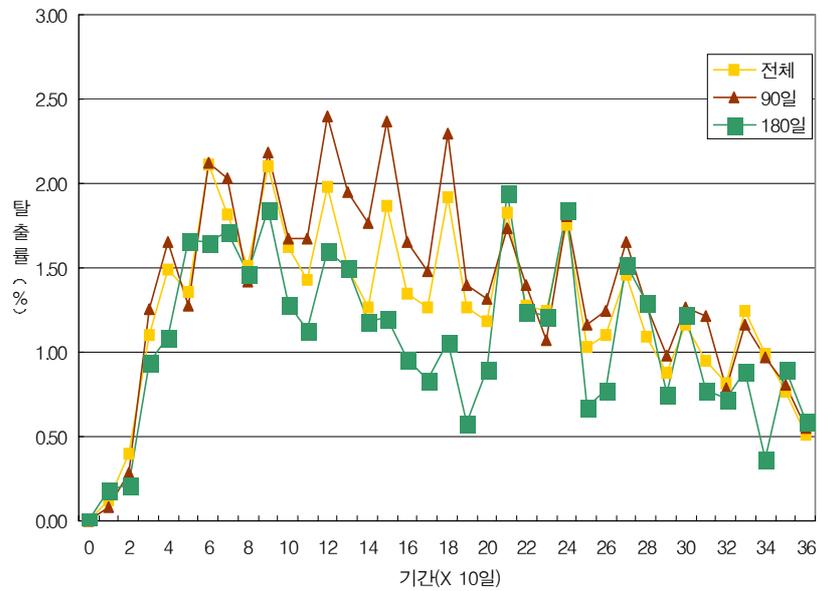
96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그림 4-6] 소정급여일수별 탈출률(전체, 90일, 15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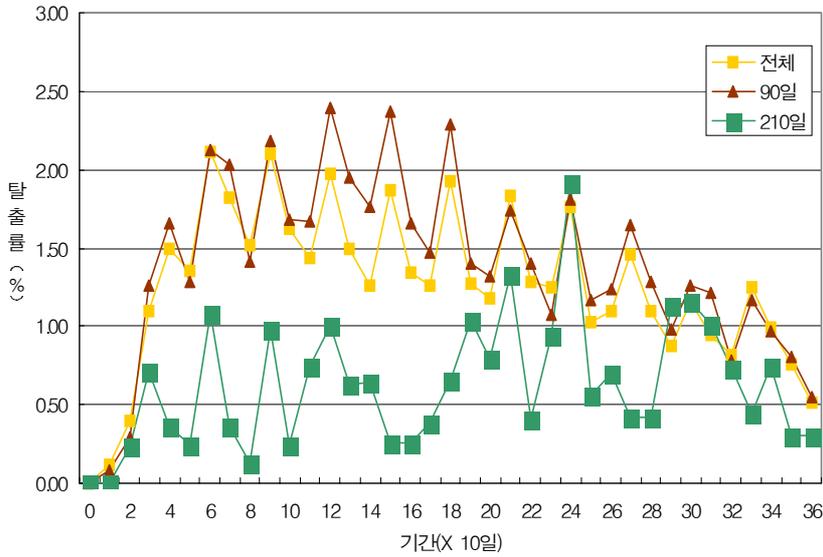
자료: 고용보험 DB.

[그림 4-7] 소정급여일수별 탈출률(전체, 90일, 18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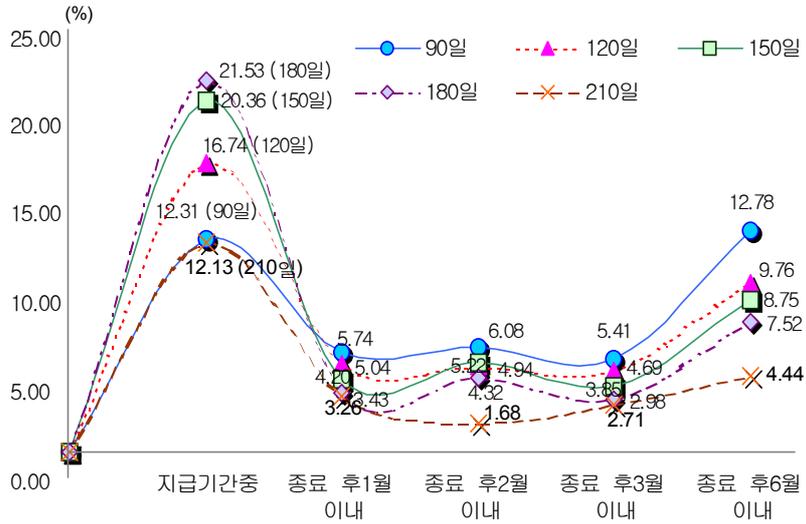
자료: 고용보험 DB.

[그림 4-8] 소정급여일수별 탈출률(전체, 90일, 210일)



자료: 고용보험 DB.

[그림 4-9] 소정급여일수별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으로부터 취업으로의 탈출률



주: 그림의 수치들은 <표 4-10>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이후 각 기간과 기간 사이 탈출률의 누적개념임.

제4절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1.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가. 가설의 설정

앞서 <표 4-1>에서 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50.9%인 데 반해, 비수급자 중 재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75.7%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직자의 재취업 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 외에도 성, 연령, 이직 전 임금, 가구소득, 이직사유, 이직 전 재취업 준비 여부, 취업 제의를 받은 횟수, 학력수준, 근속기간, 이직 전 직종 및 산업, 이직 전 사업장 규모, 부양가족 유무, 배우자 수입 여부, 취업알선을 받은 경험 유무, 지속적 구직활동 여부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변수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급여가 수급자의 재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이다.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실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실업기간이 길어 재취업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고 재취업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같은 이치로 배우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실업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유지를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어 재취업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정하고자 한다.

가설 4-1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재취업 경험이 적고 재취업률도 낮을 것이다.

가설 4-2 배우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취업 경험이 적고 재취업률도 낮을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계층인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인 남성, 청년층, 고학력자에 비하여 일단 실업이 되면 재취업도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3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인 남성, 청년층, 고학력자에 비하여 재취업 경험이 적고 재취업률도 낮을 것이다.

한편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률은 이직 후 본인의 태도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즉 이직하기 전부터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한 후에 이직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며, 스스로 재취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취업 경험이 많고 재취업률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구직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은 이직 후 취업 제의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재취업 경험이 많고 재취업률도 높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정하고자 한다.

가설 4-4 이직 전 재취업 준비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취업 경험이 많고 재취업률도 높을 것이다.

가설 4-5 이직 후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취업 경험이 많고 재취업률도 높을 것이다.

가설 4-6 이직 후 취업 제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재취업 경험이 많고 재취업률도 높을 것이다.

나. 가설의 검정

이상 설정된 가설에 대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재취업 경험 유무를 종속변수(경험 있음=1, 경험 없음=0)로 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11>에 나타나 있고, <표 4-12>는 재취업률에 관한 헤저드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실업급여가 재취업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표 4-11>에서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취업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4-12>에서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4-1이 통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2000년 4~6월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및 노동시장의 여건, 기업의 채용 및 고용조정 관행 등의 변화,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시점의 조사 결과만으로 실업급여가 수급자의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분석 결과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배우자의 수입은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수입이 없더라도 실업기간 동안에 생계의 위협을 덜 느끼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수입이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수입이 없으면 실업기간 동안에 생계의 위협을 크게 느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되고 배우자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배우자의 수입이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배우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재취업 경험이 적고 재취업률도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4-2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성별로는 실업급여 비수급자를 제외하면 여자의 재취업 경험이 남자에 비하여 낮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며, <표 4-12>에서는 여자의 재취업률이 남자에 비하여 높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계층별로는 50대 이상의 재취업 경험은 30대 이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40대는 30대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 4-12>에서는 30대 이하에 비하여 50대 이상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에서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학력자에 비해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의 재취업 경험 및 재취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인 남성, 청년층, 고학력자에 비하여 재취업 경험이 적고 재취업률도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4-3은 통계적으로 검정되지 못하였다.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직 전 재취업 준비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취업 경험이 많고 재취업률도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4-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직 후 지속적 구직활동이 재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실업급여 비수급자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5는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검정되었다.

이직 후 취업 제의를 받은 횟수가 재취업 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표 4-11>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4-12>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취업 제의 횟수가 많을수록 조사시점 현재의 재취업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취업 제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재취업 경험이 많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검증되었으나 “취업제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재취업률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만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근속기간이 재취업 경험 및 재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표 4-11>에서 보듯이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계층의 재취업 경험이 오히려 가구소득이 없는 계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가구소득이 많은 계층의 재취업 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이직 전 직종별로는 전문가 및 기능근로자에 비해 사무직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재취업 경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재취업 경험 가능성이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재취업 경험 가능성과 재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수림어업이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의 재취업 경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산업별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못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실업급여는 2000년 현재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배우자의 수입은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인 남성, 청년층, 고학력자에 비하여 재취업 경험이 적고 재취업률도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가설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이직

〈표 4-11〉 재취업 경험 유무에 대한 로짓분석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2.748**	0.599	-0.403	1.359	3.365	2.101
수급자	-1.003**	0.100				
여성	-0.143	0.254	-0.687	0.619	0.020	0.860
연령(30대 이하)						
40대	0.124	0.090	-0.074	0.222	0.171	0.305
50세 이상	-0.726**	0.107	-0.860**	0.260	-0.726**	0.363
학력(고졸)						
초,중졸 이하	0.043	0.092	0.359	0.245	0.023	0.304
전문대, 대졸	0.465**	0.087	0.133	0.193	0.527*	0.303
대학원 이상	0.501	0.390	-0.031	0.759	0.699	1.411
직종(전문가 및 기능근로자)						
고위임직원 등	-0.237	0.219	-0.738**	0.384	-0.019	0.878
사무직	-0.286**	0.090	-0.276	0.190	-0.351	0.316
농어업숙련근로자	0.038	0.657	-1.746	1.204	3.954	15.066
단순노무직	-0.270**	0.083	0.090	0.240	-0.376	0.274
산업(광공업 등)						
농수림어업	1.448**	0.669	-0.382	1.126	4.832	11.842
건설업	0.031	0.149	-0.142	0.281	0.171	0.545
금융 및 보험	-0.457**	0.181	-0.165	0.335	-0.647	0.64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248**	0.087	-0.119	0.217	0.314	0.295
규모(100~299인)						
10인 미만	0.097	0.111	0.010	0.279	0.099	0.368
10~99인	0.483**	0.104	0.048	0.258	0.598*	0.348
300~999인	0.190	0.142	0.339	0.325	0.120	0.476
1,000인 이상	0.363**	0.166	-0.061	0.371	0.430	0.574
건설공사	0.878**	0.217	0.537	0.537	0.948	0.717
이직 전 임금(로그)	-0.569**	0.099	0.234	0.224	-0.784**	0.341
정규직	-0.040	0.085	-0.182	0.252	-0.018	0.275
비자발적 이직	0.113	0.073			0.078	0.241
이직 전 재취업 준비	1.762**	0.114	0.807**	0.277	1.904**	0.388
가구주	0.993**	0.248	0.611	0.612	1.184	0.836
근속기간(월)	0.000	0.001	-0.003**	0.001	0.002	0.003
퇴직금 수령	-0.117	0.076	-0.314	0.189	-0.153	0.258
취업 제의 횟수(번)	0.171**	0.020	0.079**	0.032	0.212**	0.075
부양가족(있음)	-1.263**	0.239	-0.070	0.501	-1.619*	0.893
가구소득(없음)						
천만 원 미만	1.228**	0.240	-0.730	0.540	1.767**	0.824
천만 원~5천만 원 미만	1.400**	0.215	0.053	0.464	1.808**	0.744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34**	0.216	-0.281	0.467	2.012**	0.750
1억 원 이상	1.455**	0.227	-0.101	0.484	1.935**	0.788
배우자 수입(있음)	-0.812**	0.078	-0.248	0.202	-0.864**	0.258
취업알선 경험(있음)			0.098	0.176		
N	1,360		762		598	
-2Log Likelihood	5849.765		920.835		534.596	
R ²	0.23		0.16		0.23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하며, 상정한 변수들의 결측치로 관찰치가 1,360명임.

2) 수급자는 비자발적 이직자만이 제도요건에 부합되므로 이직사유변수를 제외함.

3) 비수급자는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받은 경험이 없으므로 취업알선 경험변수를 제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4-12〉 재취업률에 관한 해저드 분석 결과

	전 체		수급자		비수급자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수급자	-0.897***	0.059				
여성	0.471***	0.131	-0.464	0.470	0.184	0.415
연령(30대 이하)						
40대	0.022	0.040	-0.175	0.139	0.061	0.130
50세 이상	-0.205***	0.049	-0.563***	0.165	-0.194	0.158
학력(고졸)						
초,중졸 이하	-0.014	0.046	0.218	0.163	0.032	0.146
전문대, 대졸	0.193***	0.039	0.175	0.121	0.225**	0.123
대학원 이상	0.027	0.142	0.235	0.519	0.250	0.439
직종(전문가 및 기능근로자)						
고위임직원 등	-0.136	0.096	-0.620*	0.283	-0.283	0.309
사무직	-0.135***	0.043	-0.072	0.126	-0.192	0.136
농어업숙련근로자	0.350	0.237	-1.111	1.020	0.483	0.741
단순노무직	-0.028	0.041	-0.068	0.155	-0.135	0.128
산업(광공업 등)						
농수림어업	0.632***	0.195	0.178	0.722	0.522	0.605
건설업	0.050	0.067	-0.117	0.184	0.099	0.219
금융 및 보험	-0.365***	0.102	-0.235	0.236	-0.311	0.33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29	0.040	-0.056	0.145	0.039	0.124
규모(100~299인)						
10인 미만	0.056	0.057	-0.017	0.190	0.058	0.182
10~99인	0.215***	0.053	-0.051	0.177	0.219	0.169
300~999인	0.375***	0.077	0.092	0.214	0.140	0.246
1,000인 이상	0.282***	0.081	-0.024	0.256	0.275	0.253
건설공사	0.338***	0.097	0.293	0.325	0.222	0.308
근속기간(월)	0.000	0.000	-0.002***	0.001	0.000	0.001
정규직	-0.048	0.041	-0.054	0.159	-0.093	0.125
비자발적 이직	-0.210***	0.034			-0.103	0.106
이직 전 재취업 준비	0.636***	0.036	0.340***	0.156	0.733***	0.113
배우자 수입(있음)	-0.406***	0.036	-0.092	0.127	-0.421***	0.114
가구주	0.540***	0.130	0.491	0.468	0.597	0.412
부양가족(있음)	-0.344***	0.120	-0.018	0.352	-0.438	0.382
취업 제의 횟수	-0.006	0.007	0.034***	0.017	0.013	0.024
지속적 구직활동	1.265***	0.050	0.531***	0.163	-0.013	0.025
취업알선 경험(있음)			0.008	0.115		
N	1,371		770		601	
-2Log likelihood	70,123.895		4,611.313		5,155.397	
Chi-Square	2,301.766***		123.390***		144.434***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12명이며, 상정한 변수들의 결측치로 인해 관찰치가 1,371명임.

3) 수급자는 비자발적 이직자만이 제도요건에 부합되므로 이직사유변수를 제외함.

4) 비수급자는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 경험이 없으므로 취업알선 경험변수를 제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진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재취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의 재취업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구직자의 태도가 재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2. 취업알선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가. 이론모형

구직자는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가장 부합하는 직업을 찾기 위하여 직장탐색활동(job search activity)을 하게 된다. 이때 구직자는 많은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 및 근로조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보다 매력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구인자를 만날 가능성은 직장탐색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게 되나 구직기간 단위당 증가할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조건 수준은 체감하게 되므로 구직자가 직면하게 되는 구인자의 임금제시 곡선(wage offer curve)은 [그림 4-10]의 WO곡선과 같은 모양을 띠는 우상향(右上向)의 아래로 오편향한 형태를 보일 것이다.

한편 구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조건 수준은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구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acceptable wage) 수준은 구직자가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의중임금(reservation wage)과 추가적인 직장탐색활동 비용의 함수로 볼 수 있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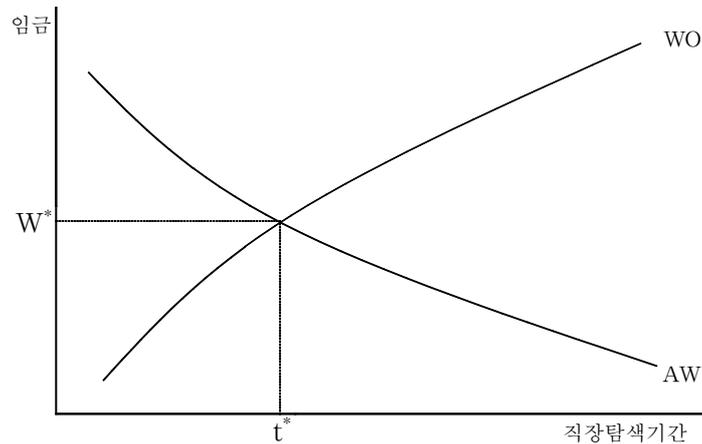
$$AW = f(W_r, MC), \quad f_1 > 0, \quad f_2 < 0$$

여기서 AW = 구직자의 수용가능 임금(acceptable wage)

W_r = 구직자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MC = 한계직장탐색비용(marginal job search cost)

(그림 4-10) 임금수준 및 직장탐색기간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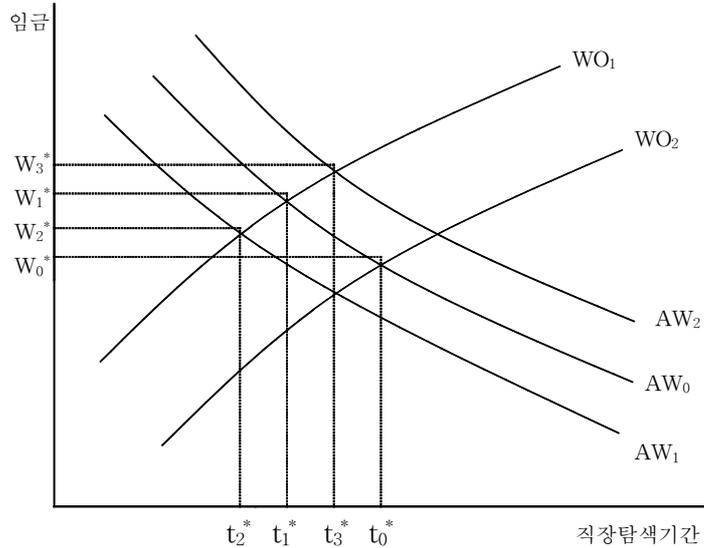
그런데 직장탐색기간이 길어질수록 탐색활동에 지친 나머지 구직자의 의중임금 수준은 감소하게 되고 한계직장탐색비용도 체증하게 되므로 구직자의 수용 가능 임금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구직자의 수용 가능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AW곡선은 [그림 4-10]의 AW곡선과 같이 우하향(右下向)의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구인·구직자의 의견이 일치하여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림 4-10]에서 WO곡선과 AW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져 임금수준은 W^* , 구직기간은 t^* 에서 결정되게 된다.

만일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공공직업안정기관에서 구인·구직자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방문을 통하여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을 보다 많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림 4-11]에서와 같이 WO곡선이 WO_0 에서 WO_1 으로 상방(上方)으로 이동하게 되어 종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직장을 보다 짧은 기간에 찾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노동시장 정보의 제공은 구직자가 시장임금과 무관하게 의중임금(W_r)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해 주고 구직활동의 한계비용을 감소시켜 주게 된다. 만일 의중임금 수준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직장탐색비용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면 [그림 4-

[그림 4-11] 고용정보제공이 구직자의 임금 및 직장탐색기간에 미치는 영향



11]에서 AW 곡선이 AW_0 보다 아래쪽으로 이동하여(AW_1) 구직기간을 t_1^* 보다 더 단축시키고(t_2^*) 임금수준도 W_1^* 보다 감소시키게(W_2^*)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AW 곡선이 AW_0 보다 위쪽으로 이동하여 (AW_2) 구직기간은 t_1^* 보다 길어지고(t_3^*) 임금수준은 W_1^* 보다 높아지게 (W_3^*) 될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제공과 집중적인 직업 상담 및 취업알선은 구직자에게는 보다 빠른 기간 내에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고 구인자에게도 보다 빠른 기간 내에 가장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하여 노동력의 적재적소 배치(job match)가 시장 기능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나. 가설의 검정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제공과 집중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은 재취업을 촉진하여 실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재취업 경험이 많고 재취업률도 높으며 실업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4-7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재취업 경험이 많고 재취업률이 높으며, 실업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운용 과정에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검정해 보기로 하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지난 2주 동안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는가를 확인받는 실업인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재취업에 필요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받고 직업상담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과정에서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표 4-11> 및 <표 4-12>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4-7이 통계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검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취업알선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즉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재취업 경험이 많고 조사시점 현재의 재취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는 사실은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서비스가 재취업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지만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알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2000년 4~6월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조사 결과를 활

용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및 노동시장의 여건, 기업의 채용 및 고용조정 관행 등의 변화,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만으로 우리나라 직업안정기관에서의 취업알선 서비스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2002년부터 취업담임자제도, 고용보험사업과 취업알선의 연계를 위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체계의 실시 등으로 현재의 취업알선 서비스는 2000년이나 2001년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3>은 어떤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과 상담서비스를 받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3>에서 보면 연령이 많은 사람들은 상담원의 권유에 의하건 본인이 원해서건 취업알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고, 남자는 여자에 비해 상담원의 권유와 본인이 원해서 취업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본인이 원해서 상담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과 상담이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과 중·장년층 이상에 대해서는 구인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인프라도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상담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젊은 남성과 같이 재취업이 용이한 집단에 대해서는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구인정보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장기실업의 확률이 높은 중·장년층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서비스 제공방법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계층에게 취업상담 서비스를 집중하고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취업상담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앞으로의 직업상담방식에 있어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2년 말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등 서비스 제공방식과 직업안정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점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러한 직업안정기관의 혁신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13> 취업상담 받은 사람에 대한 다항로지분석 결과

	상담원 권유 / 상담 받지 않음		본인이 원해서 / 상담 받지 않음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절편	-0.452(1.055)	0.668	0.472(0.942)	0.617
전 직장 임금(로그)	-0.160(0.211)	0.448	-0.322(0.189)*	0.089
연령(기준: 20대 이하)				
30대	0.116(0.271)	0.670	-0.270(0.254)	0.287
40대	-0.695(0.328)**	0.034	-0.634(0.286)**	0.027
50대 이상	-0.912(0.314)***	0.004	-0.758(0.271)***	0.005
지속적 구직활동 여부	-0.085(0.200)	0.670	0.408(0.191)**	0.033
남성	0.401(0.232)*	0.084	0.505(0.214)**	0.018
근속기간(기준: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0.102(0.254)	0.687	-0.255(0.223)	0.253
3년 이상 5년 미만	0.081(0.325)	0.803	-0.319(0.287)	0.267
5년 이상 10년 미만	0.033(0.353)	0.927	-0.520(0.311)*	0.094
10년 이상	0.081(0.398)	0.838	-0.792(0.372)**	0.033
사업장 규모(기준: 1000인 이상)				
1~29인	0.196(0.377)	0.603	-0.026(0.334)	0.939
30~99인	-0.391(0.421)	0.353	-0.192(0.357)	0.591
100~299인	0.521(0.411)	0.205	0.006(0.386)	0.988
300~999인	0.063(0.450)	0.888	0.243(0.385)	0.528
소정급여일수(기준: 90일)				
120일	-0.520(0.255)**	0.042	-0.094(0.232)	0.684
150일	-0.271(0.279)	0.332	0.041(0.256)	0.872
180일	-0.228(0.353)	0.517	0.328(0.309)	0.288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4-14〉 취업상담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와 취업상담 받은 이유의 교차빈도

(단위: 명, %)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했다	2 (3.2)	14 (22.6)	36 (58.1)	10 (16.1)	62 (100.0)
직업상담원의 권 유가 있었다	4 (4.4)	19 (21.1)	54 (60.0)	13 (14.4)	90 (100.0)
원해서 받았다	9 (4.6)	56 (28.4)	96 (48.7)	36 (18.3)	197 (100.0)
전 체	15 (4.3)	89 (25.5)	186 (53.3)	59 (16.9)	349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한편 취업상담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취업상담을 받은 이유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상담을 소극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받은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받은 사람이 취업상담의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취업을 위한 지속적 구직활동이 재취업에 도움이 되듯이 직업안정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구직자의 태도 또한 재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재취업된 직장의 질(quality)은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직장만족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직 후 재취업자(n=

1,019)의 이직 전 임금수준과 이직 후 재취업된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직 전 월평균임금수준은 136만 원, 이직 후 월평균임금수준은 133만 원으로 이직 전에 비하여 월평균임금이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의 이직 전후 임금수준을 성별로 보면 남성의 임금은 2.8% 하락한 반면, 여성의 임금은 0.3% 하락하여 이직 후 임금 감소폭은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39세 이하에서는 이직 후 재취업함으로써 임금이 상승한 반면, 40세 이상에서는 이직 후 재취업하면 임금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계층에 따른 임금의 변화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즉 30세 미만의 경우 14.2%가 증가한 반면 50세 이상은 23.7%가 감소하였다. 남자의 경우 30세 미만의 경우 재취업시 임금이 26.2%나 증가하였으나 40대는 9.7% 감소하고 50세 이상에서는 24.8%가 감소하여 연령계층별 임금변화율이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49세 이하에서 재취업시 임금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50세 이상은 재취업시 임금이 1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하여 이직 후 재취업에 따른 임금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고용보험 피보험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이직 전후 임금수준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월평균임금은 이직 전 153만 원에서 이직 후 재취업시 132만 원으로 13.7% 하락한 반면에, 비수급자의 월평균임금은 이직 전 125만 원에서 이직 후 재취업시 134만 원으로 7.2%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이직 후 재취업시 임금수준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성별·연령계층별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이직 전후의 임금변화를 <표 4-16>과 [그림 4-12]에서 살펴보면 남성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이직 전에 비해 15.0% 하락한 반면, 비수급자는 오히려 이직 전에 비해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의 30세 미만 연령층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떠나 이직 후 임금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50세 이상 남성 수급자의 이직 후 임금수준은 이직 전 임금수준의 거의 절반으로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의 이직 후 평균임금 감소율은 6.0%이나 40~49세 연

령계층만이 이직 후 임금수준이 이직 전에 비해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급자는 오히려 월평균임금이 3.3% 증가하였다.

〈표 4-15〉 재취업자의 성별·연령계층별 이직 전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
(단위: 만원, %)

	연 령	이직 전 임금	이직 후 임금	임금변화율
남 성	30세 미만	106.01	133.82	26.2
	30~39세	161.86	166.27	2.7
	40~49세	191.86	173.30	-9.7
	50세 이상	148.92	112.05	-24.8
	전 체	155.26	150.94	-2.8
여 성	30세 미만	88.70	89.36	0.7
	30~39세	97.94	98.27	0.3
	40~49세	72.70	72.75	0.1
	50세 이상	72.79	64.83	-10.9
	모름/무응답	-	-	-
전 체	86.00	85.74	-0.3	
전 체	30세 미만	97.05	110.82	14.2
	30~39세	152.31	156.11	2.5
	40~49세	162.07	148.17	-8.6
	50세 이상	138.23	105.43	-23.7
	모름/무응답	-	-	-
전 체	136.36	133.1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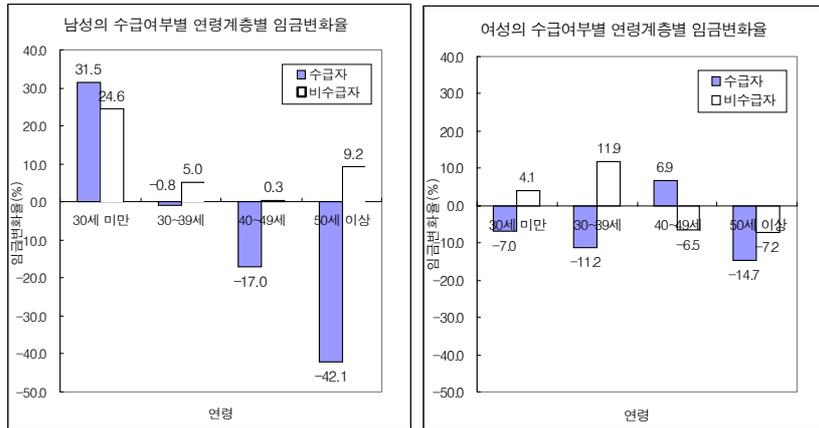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구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4-16〉 재취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이직 전후 월평균 임금수준의 변화
(단위: 만원, %)

	수급자			비수급자		
	이직 전 임금	이직 후 임금	변화율	이직 전 임금	이직 후 임금	변화율
남 자	172.03	146.22	-15.0	142.78	154.44	8.2
여 자	92.71	87.11	-6.0	82.24	84.97	3.3
전 체	152.97	132.01	-13.7	124.91	133.94	7.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11.

[그림 4-12]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 성별 이직 전후 임금변화율 비교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 · 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이직 전후 임금수준을 이직사유별로 보면, <표 4-17>에서 보듯이 재취업자 중 자발적 이직자의 이직 전 임금수준은 132만 원, 이직 후 임금수준은 134만 원으로 이직 후 임금이 1.7% 상승한 반면, 비자발적 이직자는 이직 전 임금이 141만 원, 이직 후 임금이 132만 원으로서 이직 후 월평균 임금수준이 5.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의 비율이 40.9%를 차지해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준비율 15.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재취업을 위한 사전준비를 함으로써 자발적 이직자의 이직 후 임금수준이 비자발적 이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의 경우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의 <표 4-16>과 [그림 4-12]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직 후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4-17>은 재취업시 임금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시 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 4~6월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 황덕순(2000)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는데, 이번에 2000년 4~6월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자

〈표 4-17〉 재취업자 중 이직사유별 이직 전후 월평균 임금수준

(단위: 만원, %)

	자발적 이직자			비자발적 이직자		
	이직 전 임금	이직 후 임금	변화율	이직 전 임금	이직 후 임금	변화율
여 성	86.68	85.84	-1.0	85.22	85.63	0.5
남 성	151.62	155.20	2.4	158.30	147.36	-6.9
전 체	131.75	133.98	1.7	140.58	132.39	-5.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재취업시의 임금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표 4-18>에 의하면 재취업시 임금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직 전의 임금수준이다. 이직 전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시의 임금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표 4-15>, <표 4-16>, [그림 4-12]에서는 재취업시의 임금수준이 성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표 4-18>은 성별에 따른 재취업시의 임금수준의 변화는 비수급자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취업시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오히려 여성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시 임금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학력수준이 재취업시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의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전문직종 및 숙련기능원 종사자에 비해 재취업시 임금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오히려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재취업시 임금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직 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상시근로자수가 100~299인 규모인 사업장에 비해 모든 사업장에서 재취업시 임금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 전의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재취업시의 임금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구분해서

〈표 4-18〉 재취업시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절편	1.533***	0.098	15.792	0.644	1.015	0.634	1.546***	0.307	5.037
실업급여 수급자	-0.066**	0.029	-2.253						
이직 전 임금(로그)	0.675***	0.021	32.440	0.847***	0.215	3.935	0.677***	0.065	10.464
여성	-0.072***	0.020	-3.526	0.467**	0.231	2.201	-0.078	0.063	-1.240
연령	0.000	0.001	-0.531	-0.0014	0.007	-0.202	-0.001	0.003	-0.282
학력(고졸)									
초·중졸 이하	-0.108***	0.023	-4.716	-0.109	0.241	-0.450	-0.103	0.073	-1.418
전문대, 대졸	0.105***	0.016	6.575	-0.095	0.162	-0.585	0.111**	0.050	2.225
대학원 이상	0.335***	0.056	5.983	-	-	-	0.347**	0.171	2.034
직종(전문직종 및 숙련기능원)									
고위임직원 등	0.056	0.048	1.168	-0.064	0.306	-0.162	0.049	0.154	0.317
사무직	-0.006	0.018	-0.329	0.089	0.170	0.523	-0.008	0.055	-0.148
농어업숙련근로자	0.020	0.126	0.161	-0.307	0.958	-0.320	0.037	0.409	0.091
단순노무직	-0.042**	0.019	-2.259	0.349	0.224	1.560	-0.047	0.057	-0.825
산업(광공업 등)									
농수림어업	0.095	0.105	0.907	-	-	-	0.129	0.331	0.390
건설업	0.008	0.055	0.155	0.172	0.418	0.412	0.014	0.176	0.082
금융 및 보험	-0.052	0.047	-1.111	-0.327	0.351	-0.931	-0.052	0.152	-0.343
부동산·사업서비스	-0.009	0.017	-0.547	-0.297	0.183	-1.627	0.002	0.053	0.034
사업규모(100~299)									
10인 미만	-0.094***	0.024	-3.986	-0.005	0.244	-0.022	-0.099	0.073	-1.357
10~99인	-0.046**	0.022	-2.117	-0.090	0.228	-0.394	-0.047	0.067	-0.701
300~999인	-0.083***	0.030	-3.084	0.257	0.279	0.922	-0.122	0.094	-1.190
1,000인 이상	-0.116***	0.033	-3.465	0.182	0.376	0.485	-0.133	0.103	-1.285
건설공사	-0.053	0.048	-1.116	-0.462	0.483	-0.959	-0.045	0.149	-0.300
정규직	-0.041**	0.018	-2.311	-0.112	0.217	-0.513	-0.048	0.055	-0.876
비자발적 이직	-0.091***	0.015	-5.958	-	-	-	-0.104**	0.047	-2.212
이직 전 재취업 준비	0.112***	0.016	7.106	-0.029	0.219	-0.132	0.114**	0.048	2.363
이전직장 근무기간(월)	0.000	0.000	-0.631	-0.001	0.001	-0.962	0.000	0.001	0.156
가구주	0.096***	0.019	4.977	0.441**	0.222	1.990	0.093	0.060	1.554
부양가족수	-0.005	0.005	-1.021	-0.070	0.053	-1.308	-0.003	0.015	-0.184
실업기간(월)	-0.003	0.002	-1.322	-0.015	0.020	-0.753	-0.001	0.006	-0.104
취업알선 이유(자기판단)									
N	1,204			179			731		
R ²	0.324			0.200			0.342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실태조사 표본(N=2,012) 중 재취업 경험자는 1,275명으로 이 중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임금정보가 있는 경우만의 관찰치는 1,204명임.

3) 수급자의 경우 해당 변수의 표본이 없거나 너무 적어 분석이 불가능한 것은 ‘-’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직 전 사업장 규모가 재취업시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이직 전의 산업 및 직종,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등은 재취업시의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사유는 재취업시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발적 이직자는 재취업시 임금이 증가하나 비자발적 이직자는 재취업시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재취업시 임금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주의 경우 재취업시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다만,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므로 나타났다. 이직 후 실업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취업알선을 받은 이유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담원 권유에 의해 취업알선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취업알선을 받은 사람의 임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 이직 전의 임금수준, 학력,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 여부 등이 재취업시의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재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이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직 후 첫번째로 취업한 직장애 조사시점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취업 경험자 중 이직 후 첫 일자리에서 조사시점 현재까지

<표 4-19> 이직 후 재취업 경험자 중 첫 직장 계속 근무 여부

(단위: %)

	첫 직장에서 계속 근무	첫 직장에서 계속 근무 안함
수급자 (N=510)	62.7	37.3
비수급자(N=765)	55.0	45.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실업급여 수급자는 62.7%, 비수급자는 55.0%로 나타나, 수급자의 이직 후 첫 직장 계속 근무 비율이 비수급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 궁합(job matching)에 있어서는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다소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재취업된 직장에서의 계속 근무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해 보면 <표 4-20>에서 보듯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첫 직장 계속 근무 가능성이 높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고용안정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검정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20>은 여성,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사무직 근로자, 농수림업 종사자, 100~299인 사업장에 비해 99인 이하 사업장 및 30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공사 근로자 등은 재취업시 고용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며, 남성, 대학원 이상 학력자, 고위임직원, 고임금근로자,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 등은 재취업시 고용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취업시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사람 중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 고용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간제(part-time) 근로자보다는 전일제(full-time) 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 고용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 중 조사시점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재취업된 사람의 비율을 보면 <표 4-21>에서 보듯이 실업급여 수급자는 78.0%, 비수급자는 78.8%로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고용안정성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표 4-20〉 재취업자의 재취업 후 첫 직장에서의 계속 근무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전 체		수급자		비수급자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유의수준
절편	1.123	0.873	7.564**	2.946	0.585	2.876
수급자	0.244	0.163				
여자	-0.677**	0.334	-1.062	1.187	-0.746	1.069
연령(30대 이하)						
40대	-0.146	0.109	0.472	0.390	-0.189	0.345
50대 이상	0.089	0.139	0.106	0.457	0.074	0.445
학력(고졸)						
초,중졸 이하	-0.436***	0.125	-0.888*	0.487	-0.426	0.395
전문대, 대졸	0.131	0.102	-0.351	0.369	0.189	0.324
대학원 이상	2.472**	1.026	-0.181	1.268	5.878	15.818
이직 전 직종(전문직종 및 숙련기능원)						
고위임직원등	1.034***	0.347	0.738	1.165	1.001	1.104
사무직	-0.328***	0.114	-0.251	0.343	-0.353	0.369
농어업숙련근로자	5.038	6.980	2.599	13.522	6.209	36.665
단순노무직	-0.065	0.101	0.579	0.511	-0.061	0.316
이직 전 산업(광공업 등)						
농수림어업	-4.529***	1.046	-1.140	1.552	-8.393	19.041
건설업	0.227	0.178	0.091	0.540	0.246	0.574
금융 및 보험	-0.065	0.282	0.947	0.793	-0.355	0.94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182*	0.109	-0.401	0.393	0.186	0.347
이직 전 사업장규모(100~299인)						
10인 미만	-1.263***	0.203	-0.125	0.554	-1.502**	0.684
10~99인	-1.274***	0.196	0.335	0.533	-1.502**	0.661
300~999인	-1.559***	0.233	-0.255	0.622	-1.844**	0.782
1,000인 이상	-1.123***	0.255	-0.123	0.784	-1.277	0.841
건설공사	-1.639***	0.277	0.031	0.871	-1.992**	0.913
이직 전 로그임금	0.255*	0.136	-0.889**	0.446	0.347	0.440
정규직	0.058	0.105	0.770	0.469	-0.008	0.329
비자발적 이직	0.190**	0.091	-0.720	0.475	0.271	0.287
이직 전 재취업 준비	0.392***	0.094	0.381	0.517	0.372	0.293
가구주	-0.933***	0.321	-1.284	1.199	-1.017	1.025
이직 전 근속기간(월)	0.001	0.001	0.002	0.003	0.001	0.003
퇴직금수령	0.022	0.094	0.507	0.351	0.003	0.298
부양가족(있음)	-0.671*	0.377	-0.955	1.433	-0.608	1.194
가구소득(없음)						
천만 원 미만	0.992***	0.369	1.130	0.949	1.328	1.364
천만 원~5천만 원	1.137***	0.345	-0.085	0.709	1.500	1.298
5천만 원~1억원	1.187***	0.346	0.547	0.749	1.533	1.300
1억 원 이상	1.758***	0.363	0.121	0.780	2.248*	1.357
배우자 수입(있음)	-0.129	0.095	-0.916**	0.360	-0.066	0.302
N	664		304		360	
-2Log Likelihood	3,796.146		285.766		382.618	
R ²	0.097		0.116		0.112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조사시점 현재 이직 후 재취업 첫 직장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는 741명이며, 상정한 변수들의 결측치로 인해 관찰치는 664명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4-21>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직장 고용형태

(단위: %)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수급자(N=350)	78.0	15.7	6.3
비수급자(N=530)	78.8	15.5	5.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4-22>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직장 근무시간 형태

	전일제 근무	시간제 근무
수급자(N=350)	89.4	10.6
비수급자(N=530)	91.9	8.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다. 또한 전일제 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도 <표 4-2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조사시점 현재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된 사람 중 전일제 근로형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89.4%, 비수급자가 91.9%로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고용안정성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후 재취업된 사람 중 조사시점 현재까지 다시 실업을 경험했던 사람의 비율을 비교해 보는 것도 고용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 4-23>은 재취업 경험자 중 재실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경험자 중 18.6%가 재실업을 겪은 반면, 비수급자는 재취업 경험자 중 21.1%가 재실업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이직 후 재취업 경험자 중 재실업자 비율

(단위: 명, %)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재취업 경험자(A)	1,275	510	765
재실업자(B)	256	94	162
재실업자 비율(B/A)	20.1	18.6	21.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4-24〉 재취업 경험자 중 재실업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전 체		수급자		비수급자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4.436***	0.846	-2.873	3.045	-4.595*	2.765
수급자	-0.287*	0.165				
여성	-0.166	0.354	-0.713	1.607	-0.396	1.156
연령(30대 이하)						
40대	0.141	0.116	-0.219	0.447	0.190	0.368
50세 이상	0.776***	0.145	1.260**	0.495	0.807*	0.470
학력(고졸)						
초,중졸 이하	0.997***	0.123	-0.257	0.449	1.110***	0.391
전문대, 대졸	0.134	0.113	-0.412	0.400	0.200	0.361
대학원 이상	0.294	0.403	-4.691	17.466	0.366	1.257
이직 전 직종(전문가 및 기능근로자)						
고위임직원 등	-0.287	0.313	0.832	0.738	-0.629	1.146
사무직	0.607***	0.110	-0.178	0.389	0.703**	0.351
농어업숙련근로자	2.097***	0.545	-3.981	36.668	2.292	1.726
단순노동직	-0.415***	0.117	0.289	0.461	-0.439	0.369
이직 전 산업(광공업 등)						
농수림어업	-4.825	3.887	-5.699	23.149	-4.913	11.890
건설업	-0.211	0.206	-0.318	0.567	-0.243	0.684
금융 및 보험	-1.040***	0.312	0.163	0.648	-1.489	1.16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262**	0.114	-1.258**	0.536	-0.244	0.360
이직 전 사업장 규모(100~299인)						
10인 미만	-0.809***	0.148	1.048	0.684	-0.918*	0.469
10~99인	-0.642***	0.134	1.200*	0.647	-0.796	0.422
300~999인	-1.203***	0.214	0.638	0.744	-1.409**	0.701
1,000인 이상	-0.248	0.197	1.874**	0.822	-0.314	0.624
건설공사	-1.910***	0.281	-1.054	1.263	-2.114**	0.894
이직 전 임금(로그)	0.839***	0.135	-0.015	0.468	0.949**	0.436
정규직	-0.270**	0.110	-1.031**	0.446	-0.237	0.349
비자발적 이직	0.197**	0.095	0.305	0.462	0.245	0.300
이직 전 재취업 준비	-0.429***	0.105	-0.285	0.548	-0.447	0.329
가구주	-1.067***	0.342	-0.040	1.597	-1.416	1.115
이전 직장 근속기간(월)	-0.003***	0.001	0.002	0.002	-0.004	0.003
퇴직금 수령	-0.610***	0.106	-0.457	0.361	-0.596*	0.341
취업 제의 횟수(번)	0.007	0.020	0.058	0.053	-0.004	0.068
부양가족(있음)	0.458	0.282	-1.529*	0.899	0.723	0.917
가구소득(없음)						
천만 원 미만	0.176	0.411	1.007	1.397	-0.004	1.349
천만 원~5천만 원 미만	-0.044	0.387	2.277*	1.251	-0.323	1.281
5천만 원~1억 원 미만	-0.253	0.389	2.257*	1.260	-0.527	1.287
1억 원 이상	-0.059	0.401	1.003	1.290	-0.269	1.326
배우자 수입(있음)	0.601***	0.099	1.595***	0.397	0.573*	0.313
N	807		367		440	
-2Log Likelihood	3621.953		267.397		361.267	
R ²	0.103		0.172		0.119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인 재취업 경험자는 1,275명이며, 상정한 변수들의 결측치로 인해 관찰치는 807명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따라서 재실업자 비율 측면에서 본 고용안정성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다.

<표 4-24>에서 이직 후 재취업 경험자 중 재실업된 사람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단 재취업이 되면 재실업 가능성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는 재실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50세 이상에서 재실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수준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재실업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농업 숙련근로자의 재실업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고 단순노무직은 재실업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재실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장에 비해 99인 이하의 사업장과 300~999인 사업장 및 건설공사의 재실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직 전의 임금이 높을수록 재취업시 재실업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고 정규직은 재실업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배우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재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직 후 재취업자 중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표 4-25>에서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임금, 근로조건, 근로내용이 맞지 않아서(각각 22.1%, 22.7%)’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각각 15.8%, 20.9%)’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 직장의 이직사유는 주로 비자발적 성격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이직 후 첫 직장의 이직사유는 주로 자발적 성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점은 흥미있는 일이다.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경우 ‘임금, 근로조건, 근로내용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2.7%로 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8.8%)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이는 재취업 과정에서 구인처에 대해 정확한 정보 없이 재취업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이 제공하는 노동시장 정보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25〉 이직 후 재취업한 첫 직장의 이직사유

(단위: %)

이직 사유	수급자 (N=190)	비수급자 (N=344)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15.8	20.9
자기 사업을 하려고	3.7	4.1
결혼, 육아, 가사, 거주지 변경, 노약자 간호, 자녀교육 등의 집 안 사정으로	2.1	4.7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9.5	7.3
징계 해고	0.0	0.9
학업, 병역 또는 휴식 등 기타 개인사정으로	0.5	7.6
임금, 근로조건, 근로내용이 맞지 않아서	22.1	22.7
직장내 왕따와 같은 차별적인 대우 또는 성적인 괴롭힘으로 인 한 이직	1.1	0.3
폐업, 도산(예정포함), 공사 중단	6.8	4.9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6.3	3.2
인원감축을 위한 명예퇴직, 권고사직	2.1	2.0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안 되어서	1.1	0.6
휴업, 임금체불, 회사 이전	4.2	2.0
임금 및 근로조건이 악화	3.7	4.9
회사의 경영악화 또는 감원이 예상되어	5.8	3.8
결혼·임신·출산·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이 있어서	1.1	0.6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10.0	8.1
기 타	1.6	1.5
전 체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다.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직 후 조사시점 현재 재취업된 직장의 만족도에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도 재취업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 4-26>과 [그림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취업한 현 직장의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

〈표 4-26〉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직장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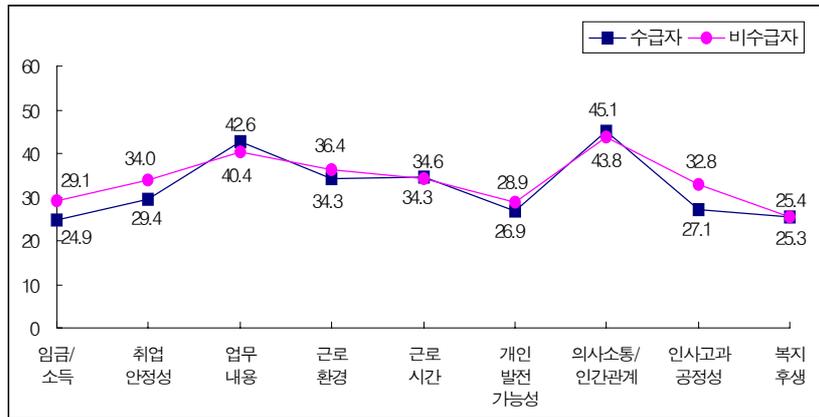
	만족 (매우 만족 +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 불만족)		보통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임금 또는 소득	24.9	29.1	33.4	29.1	41.7	41.9
취업의 안정성	29.4	34.0	20.3	22.1	50.3	44.0
하고 있는 일의 내용	42.6	40.4	15.1	16.4	42.3	43.2
근로환경	34.3	36.4	26.0	21.1	39.7	42.5
근로시간	34.6	34.3	24.9	23.0	40.6	42.6
개인의 발전 가능성	26.9	28.9	29.7	24.3	43.4	46.8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45.1	43.8	13.4	11.3	41.4	44.9
인사고과의 공정성	27.1	32.8	16.9	13.8	56.0	53.4
복지후생	25.4	25.3	28.9	22.8	45.7	25.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성, 근로환경,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사고과의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하여 비수급자의 만족도가 미세하나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지후생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만족도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재취업한 현재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너무 작아 직장만족도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재의 직장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보면 <표 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0.9%, ‘만족한다’는 응답이 29.1%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30.0%로 부정적인 평가 20.3%보다 높았다.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37.3%로서 부정적인 평가 15.9%보다 높았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직장만족도 점수를 비교하면 수급자가 3.09점, 비수급자가 3.21점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종합적인 직장만족도가 비수급자보다 다소 낮았다.

(그림 4-13)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직장 만족도



주: 각 항목에 대한 만족률(매우 만족 + 만족)만을 측정된 것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4-27>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직장에 대한 종합 만족도

(단위: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점수
수급자 (N=350)	0.9	29.1	49.7	18.9	1.4	3.09
비수급자 (N=530)	0.4	36.9	47.2	15.1	0.8	3.21

주: 평균점수는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4-28>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직장 유지 희망 여부

	수급자 (N=350)	비수급자 (N=530)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한다.	66.3	73.8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한다.	8.3	4.3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	1.4	0.9
현재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다른 일자리를 가지고 싶다.	6.3	2.8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	17.4	17.7
무응답	0.3	0.4
전 체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현직장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표 4-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는 66.3%이고 비수급자는 73.8%로서 수급자가 약간 낮고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약간 낮았다. 결국 재취업하여 있는 직장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차이가 미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장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규모와 특성

제1절 반복수급자의 규모 및 동향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계절적 실업자의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직 전 18월의 기준기간 중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있어야 실업이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 시행 당시에는 이직 전 18월의 기준기간 중 12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있어야 실업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대량실업에 직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신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들의 보호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1998년 2월 12일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1998년 3월 1일부터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이 각각 12월과 6월로 변경되었으며, 2001년 1월 1일부터는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이 각각 18월과 180일로 변경되었다.

둘째,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직 전 18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을 새로이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32조 제4항 제1호 및 제41조 제3항). 이 규정은 실업급여를 받은

〈표 5-1〉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규모 추이

(단위: 명, %)

	총 실업급여 신규수급자수 (A)	2회 이상 반복수급자수 (B)	반복수급자 비중 (B÷A)
1996	9,621	-	-
1997	45,557	9	0.2
1998	397,463	1,215	0.3
1999	280,035	6,228	2.2
2000	220,785	15,186	6.9
2001	282,520	27,832	9.9
전 체	1,235,982	50,470	4.1

주: 2001년 통계는 원자료의 한계로 11~12월 수치는 실제 수급자수보다 적게 계산되었음.

자료: 고용보험 DB.

적이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향이 강하다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이 채택한 것으로서 실업급여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실업급여 지급이 개시된 1996년 7월부터 2001년 말까지의 5년 반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사람은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만여 명으로서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4.1%에 해당된다. Meyer and Rosenbaum(1996)가 미국 5개 주의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979년부터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하여 수급한 사람의 비중이 40.1%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비중은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그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한 1998년 이후에는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복수급자의 비중이 급증하여 2001년에는 9.9%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문제는 주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5-2>는 실업급여 지급개시 이후 2001년까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횡수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최대 반복수급 횡수는 4회이며, 반복수급자의 96.7%가 실업급여를 2회 받은 자이다.

<표 5-2> 실업급여 반복수급 횟수별 인원 및 구성비

(단위: 명, %)

반복수급 횟수	구성비
2회	96.7
3회	3.2
4회	0.1
전 체	100.0

자료: 고용보험 DB.

<표 5-3> 반복수급자의 수급간 기간분포

2회 반복수급자의 초회 수급부터 반복수급까지 걸린 기간(평균 = 783.3일)			
기 간	인원(명)	비중(%)	누적비중(%)
1년 이내	3,383	7.2	7.2
1년~1년 6개월	8,769	18.5	25.7
1년 6개월~2년	9,731	20.6	46.3
2년~2년 6개월	9,706	20.5	66.8
2년 6개월~3년	7,822	16.5	83.3
3년~3년 6개월	5,066	10.7	94.0
3년 6개월~4년	2,036	4.3	98.3
4년 이상	782	1.7	100.0
전 체	47,295	100.0	100.0
3회 반복수급자의 초회 수급부터 세번째 수급까지 걸린 기간(평균 = 1088.2일)			
2년 이내	152	9.7	9.7
2년~2년 6개월	286	18.3	28.0
2년 6개월~3년	396	25.3	53.3
3년~3년 6개월	365	23.3	76.6
3년 6개월~4년	219	14.0	90.6
4년 이상	148	9.5	100.0
전 체	1,566	100.0	100.0

자료: 고용보험 DB.

<표 5-3>은 반복수급에 걸린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2회 반복수급자는 평균적으로 첫번째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지 783.3일 만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를 받은 지 약 2년 만에 두 번째의 수급신청을 했다. 누적빈도로는 46.3%가 2년 안에 두 번째 수급신청

청을 했고, 1년도 채 안 되어 신청한 사람도 7.2%가 있었다. 3회 반복수급자는 2회 수급자에 비해 그 기간이 짧아 3번째 수급신청을 하는 데에 평균 1,088일, 즉 약 3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실업급여를 3회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1년마다 실업급여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반복수급자의 특성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모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중요 쟁점 중의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 특히 선진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받으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생활하려는 경향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였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반복수급의 경향이 높은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특성에서 오는 잦은 노동이동의 결과일 수도 있고, 도덕적 해이의 결과일 수도 있다. 고용형태의 특성상 잦은 노동이동과 그에 따른 반복수급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로 노동이동이 잦은 청년층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낮은 임금의 저학력 계층의 근로자,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농림수렵업과 건설업 종사자들이 반복수급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반복수급이 발생한다면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를 받아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거의 차이가 없는 저임금 근로자와, 인력난이 심한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 등 생산관련 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들이 반복수급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추론에 대해 검정하

고자 한다.

<표 5-4>는 2001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 중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 사람과 두 번 이상 반복수급하게 된 사람들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수급 횟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ordered logit 모델을 구축하였다. 반복수급자는 모집단 전체를, 초회 수급자는 모집단의 10%를 임의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므로 반복수급자에 가중된 샘플임을 주의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먼저 이직 전 임금을 보면 예상과는 달리 이직 전 임금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근속기간은 짧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로 보면 90일인 사람들에 비해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반복수급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다시 말하면 소정급여일수가 짧은 쪽이 긴 쪽에 비해 반복수급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직사유는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경영상 해고로 이직한 사람들에 비해 정년퇴직자는 반복수급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고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로 이직한 사람들은 유의하게 반복수급 가능성이 높았다.

직종별로는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에 비해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농어업숙련근로자가 반복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앞서 전 직장의 임금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반복수급 가능성이 높았던 것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반복수급자는 노동이동이 잦은 청년층이나 숙련 정도가 낮고 임금이 낮은 주변노동력계층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중간계층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 비해 광공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반복수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노동이동이 잦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이직자들에 비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이직자들의 반복수급 가능성

〈표 5-4〉 반복수급자 특성 분석(Ordered-Logit Model)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절편1	9.077***	0.358	0.000
절편2	13.874***	0.366	0.000
이직 전 임금(로그)	0.617***	0.032	0.000
이전 직장 근속기간(월)	-0.001***	0.000	0.000
연령	0.096***	0.002	0.000
소정급여일수(90일)			
120일	-0.366***	0.028	0.000
150일	-1.571***	0.040	0.000
180일	-3.804***	0.067	0.000
210일	-6.588***	0.259	0.000
이직사유(경영상 해고)			
자발적 이직	-0.092	0.069	0.183
휴업 등	0.097	0.069	0.160
권고사직 등	0.004	0.048	0.931
정년	-0.334**	0.144	0.020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0.098 [†]	0.059	0.095
이직 전 직종(장치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371***	0.086	0.000
전문가	0.313***	0.087	0.0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0.306***	0.080	0.000
사무직원	0.430***	0.076	0.000
서비스, 판매근로자	-0.095	0.086	0.272
농어업숙련근로자	0.577***	0.134	0.000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0.101	0.077	0.191
단순노무직	0.001	0.077	0.992
이직 전 산업(도소매·숙박음식점업)			
농수림어업	0.205	0.135	0.130
광공업	0.238***	0.039	0.000
건설업	0.352***	0.049	0.000
금융 및 보험업	0.479***	0.076	0.0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329***	0.040	0.000
기타산업	-0.268***	0.046	0.000
이직 전 사업장 규모(1000인 이상)			
30인 미만	-0.264***	0.060	0.000
30~99인	0.024	0.062	0.696
100~299인	0.006	0.066	0.930
300~999인	-0.052	0.072	0.466
남성	0.243***	0.029	0.000
학력(중졸 이하)			
고졸	-0.119***	0.043	0.005
전문대졸	0.257***	0.055	0.000
대졸	0.075***	0.052	0.147
대학원졸	-0.391	0.109	0.000
-2Log-Likelihood	51,079.568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고용보험 DB.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반복수급 가능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학력별로는 기준이 되는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자는 반복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의 반복수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제6장 미취업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제1절 미취업자의 특성

앞서 제4장의 <표 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2000년 4~6월의 기간 중에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1,002명과 비수급자 1,010명을 200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추적조사하여 조사시점 현재의 취업상태를 비교·분석한 바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58.5%가 미취업 상태에 있는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는 40.3%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직 후 14~1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이직자의 미취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직 후 조사시점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지 그 특성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1. 미취업자의 특성 1 : 빈도분석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이직자(N=2,012명) 중 이직한 후 14~17개월이 경과한 2001년 9월 1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는 993명으로 응답자의 49.4%를 차지하였고, 이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59.0%, 비수급자는 41.0%였다. 그런데 이직 후 조사시점 현재 재취업해 있는 사람(N=1,019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40.7%, 비수급자는 59.3%였다(표 6-1 참조). 따라서 재취업자와 미취업자를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로 비교해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미취업자 비율이 높고 재취업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1〉 미취업자의 특성

(단위: %)

		재취업자	미취업자
실업급여 수급여부별	수급자	40.7	59.0
	비수급자	59.3	41.0
성별	남성	72.7	52.7
	여성	27.3	47.3
연령계층별	20세 미만	0.4	0.4
	20~24세	8.9	8.4
	25~29세	21.8	20.7
	30~39세	32.2	28.9
	40~49세	18.4	19.5
	50~59세	15.2	16.7
	60세 이상	3.0	5.4
학력별	초졸 이하	5.0	13.2
	중졸	9.1	9.5
	고졸	42.4	42.9
	전문대·대졸	42.0	33.5
	대학원 이상	1.5	0.9
이직 전 직종별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9	4.3
	전문가	4.6	2.7
	기술공 및 준전문가	12.8	9.1
	사무직원	28.4	33.3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 시장판매근로자	8.6	8.3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0.4	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18.5	18.0
	장치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2.9	3.3
	단순노무직	20.9	20.4

<표 6-1>의 계속

		재취업자	미취업자
이직 전 산업별	농수림어업	0.6	0.3
	제조업	36.0	35.0
	광공업, 전기·가스	0.6	0.2
	건설업	10.5	9.5
	도소매, 숙박	14.3	14.1
	운수·창고 및 통신	5.2	6.0
	금융 및 보험	3.8	6.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1.5	19.6
	공공국방, 교육, 복지등	7.5	8.8
이직 전 사업장 규모별	5인 미만	14.0	15.2
	5~9인	12.9	11.8
	10~29인	21.8	18.5
	30~49인	9.4	9.0
	50~69인	5.6	6.3
	70~99인	4.1	5.5
	100~299인	12.0	14.0
	300~499인	4.0	4.2
	500~999인	6.0	5.1
	1,000인 이상 건설공사	6.9 3.2	8.2 2.1
이직 전 직 장 근속기간별	6개월 미만	28.0	22.7
	6개월 이상~1년 미만	17.8	16.3
	1년 이상~3년 미만	28.3	30.4
	3년 이상~5년 미만	9.8	12.6
	5년 이상~10년 미만	9.4	10.8
	10년 이상	6.7	7.2
이직사유	자발적 이직	47.9	41.6
	비자발적 이직	52.1	58.4
고용형태	비정규직	18.2	19.9
	정규직	81.8	80.1
이직 전 재 취업 준비	준비 안함	72.4	89.8
	준비함	27.6	10.2
전 체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6-2〉 미취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재취업 경험 유무

(단위: 명, %)

	재취업 경험 있음	재취업 경험 없음	전 체
수급자	94(16.0)	492(84.0)	586(100.0)
비수급자	162(39.8)	245(60.2)	407(100.0)
전 체	256(25.8)	737(74.2)	993(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미취업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52.7%, 여성이 47.3%로서 취업자의 남성 비율 72.7%와 여성 비율 27.3%와 비교하여 볼 때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자에 비하여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6-1 참조). 이는 이직 후 여성의 재취업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미취업자의 연령계층별 분포를 재취업자의 연령계층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20~39세의 경우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의 비율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40세 이상에서는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6-1 참조). 이는 40대 이상의 중장년 및 고연령계층의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미취업자와 재취업자의 학력수준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의 경우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전문대 및 대졸 이상의 학력자는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의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6-1 참조). 특히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의 경우 미취업자 비율이 13.2%인 반면, 재취업자의 비율은 5.0%로서 그 격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직 전의 직종별로는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단순노무직의 경우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의 비율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의 경우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6-1 참조). 그러나 직종별 미취업 및 재취업자 비율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단순노무직의 경우 고용상태가 가장 불안정한 집단이지만 재취업자 비율이 미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약간 높다. 이는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실업이 되더라도 단순노무직으로의 재취업이 다른 직종에 비해 어려운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직 전의 산업별 재취업자 및 미취업자 비율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표 6-1 참조). 미취업자 비율이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부터 이직한 경우 재취업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직 전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재취업자 및 미취업자의 비율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표 6-1 참조). 그러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 비율이 낮은 반면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이직 전의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미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한 사람은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 비율이 높는데, 이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이직자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대기업 중에서도 500~999인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직 전의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별로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사람은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 비율이 낮은 반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6-1 참조). 즉 이직 전의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재취업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직사유별로 보면 자발적 이직자는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 비율이 낮은 반면, 비자발적 이직자는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 비율이 높은 수준임을 보이고 있다(표 6-1 참조). 즉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보다는 경영상의 사유와 같은 불가피한 사

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미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직 전의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 비율이 다소 낮은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사람은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6-1 참조). 즉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직 후 재취업이 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재취업자 및 미취업자 비율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직한 사람은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반면,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이직한 사람은 재취업자 비율에 비하여 미취업자 비율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6-1 참조). 즉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은 이직 후 재취업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이직 전 직장에서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표 6-3>에서 보면 재취업자는 136만 원, 미취업자는 128만 원으로서 재취업자에 비하여 미취업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가 재취업하는 데 있어서 희망하는 월평균 희망임금 수준은 102만 원으로서 이직 전의 임금수준인 128만 원보다 26만 원이나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재취업하기 위해 최소한 기대하는 월평균 의중임금 수준은 93만 원으로 희망임금 수준에 비해서는 9만 원, 이직 전의 임금수준에 비해서는 35만 원이나 낮게 나타났다. 즉 희망임금 수준이나 의중임금 수준이 이직 전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정도로

<표 6-3> 미취업자의 이직 전 월평균임금, 희망임금 및 의중임금

(단위: 만원)

	이직 전 월평균임금	월평균 희망임금	월평균 의중임금
재취업자	136.29	-	-
미취업자	128.31	101.63	93.48
전 체	132.35	-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6-4> 미취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성별 이직전 월평균임금과 의중임금 수준

(단위: 만원, %)

	수급자			비수급자		
	이직 전 임금	의중임금	임금변화율	이직 전 임금	의중임금	임금변화율
남 자	171.78	117.67	-31.5	130.15	123.63	-5.0
여 자	99.43	64.85	-34.8	96.95	62.60	-35.4
전 체	138.20	93.15	-32.6	114.00	93.94	-17.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눈높이를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취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로 이직 전의 월평균임금 수준과 의중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표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8만 원, 비수급자는 114만 원이었으며, 월평균 의중임금 수준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93만 원, 비수급자는 94만 원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이직 전의 임금격차는 컸으나 이직 후의 의중임금 수준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 의중임금의 변화율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직 전의 임금에 비하여 의중임금 수준이 32.6%나 감소하고, 비수급자는 17.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의중임금 수준이 이직 전 임금수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직 전의 임금에 비하여 의중임금 수준이 31.5%, 비수급자는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수급자의 경우 남자의 의중임금은 이직 전의 임금에 비하여 감소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약 35%의 임금 감소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이직 전의 월평균임금과 의중임금 수준을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연령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나 비수급자 모두 50세 이상의 연령계층이 이직 후 이직 전의 임금에 비하여 의중임금의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30세 미만의 연령계층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 연령계층은

〈표 6-5〉 미취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연령계층별 이직전 월평균임금과 의중임금 수준

(단위: 만원, %)

	수급자			비수급자		
	이직 전 임금	의중임금	임금변화율	이직 전 임금	의중임금	임금변화율
30세 미만	103.13	64.02	-37.9	100.32	74.76	-25.5
30~39세	125.02	93.46	-25.2	127.67	118.68	-7.0
40~49세	166.52	137.14	-17.6	136.77	127.76	-6.6
50세 이상	149.47	84.1	-43.7	101.75	67.84	-33.3
전 체	138.20	93.15	-32.6	114.00	93.94	-17.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이직 전의 임금에 비하여 의중임금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비수급자에 비하여 모든 연령계층에서 이직 전의 임금에 비하여 의중임금의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취업자의 이직 전의 임금에 대한 의중임금의 변화율을 이직 사유별로 보면,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발적 이직자는 -22.4%, 비자발적 이직자는 -30.1%로 비자발적 이직자의 임금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사유와 성별로 이직 전 임금수준에 대한 의중임금의 변화율을 보면, 자발적 이직자인 여성은 -39.4%로서 남성의 -12.1%에 비해 이직 전 임금에 비해 의중임금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자발적 이직자의 성별 임금변화율의 격차는 미미하나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직 전의 임금에 비해 의중임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미취업자 중 이직사유별 이직 전 월평균임금과 의중임금 수준

(단위: 만원, %)

	자발적 이직자			비자발적 이직자		
	이직 전 임금	의중임금	임금변화율	이직 전 임금	의중임금	임금변화율
남 자	135.69	119.24	-12.1	169.72	120.66	-28.9
여 자	96.45	55.47	-39.4	99.70	67.58	-32.2
전 체	117.68	91.35	-22.4	135.86	94.99	-3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2. 미취업자의 특성 II: 로짓분석

앞의 빈도분석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이직자가 이직 후 14~17개월이 경과한 조사시점 현재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빈도분석 결과 재취업자와 비교하였을 때 미취업자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성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 성, 연령, 학력, 근속기간,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 여부 등이었다. 기타 이직 전의 직종, 산업, 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이직사유 등은 재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빈도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6-1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미취업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6-2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취약계층인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 등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우위계층인 남성, 청년층, 고학력자에 비하여 미취업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6-3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에 비하여 미취업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상의 가설에 대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분석을 한 결과가 <표 6-7>이다.

<표 6-7>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미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취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던 것과 관련시켜 볼 때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 결국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미취업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6-1은 통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미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연령계층별로는 30세 미만에 비하여 50세 이상이 미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는 고졸 학력자에 비하여 중졸 이하의 학력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의 미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과 중·고령자는 남성과 청년층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취업 가능성이 높고 저학력자일수록 미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취약계층인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 등은 상대적 우위계층인 남성, 청년층, 고학력자에 비하여 미취업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6-2는 통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는가의 여부와 미취업 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나 비수급자 모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의 미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직한 경우 재취업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 6-3은 통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과 미취업 가능성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수록 미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의 직종별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서비스·판매직근로자, 농어업숙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에 비하여 단순노무직과 전문가, 준전문가, 기술공의 미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종 근로자의 미취업 가능성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이직자에 비하여 10~29인 사업장과 건설공사 이직자의 미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반면에 100~299인 사업장 이직자의 미취업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임금과 미취업 가능성의 관계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직 전 임금이 높을수록 미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급여 비수급자와 전체 평균에서는 이직 전의 임

<표 6-7> 미취업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미취업자=1, 취업자=0)

	전 체		수 급 자		비수급자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2.106***	0.345	1.622	1.065	-2.500**	1.118
수급자	0.503***	0.079				
여성	0.711**	0.066	1.195***	0.249	0.676**	0.210
연령(30세 미만)						
30대	0.132**	0.063	0.521**	0.226	0.110	0.201
40대	0.116	0.080	0.621**	0.272	0.085	0.256
50세 이상	0.750***	0.095	1.638***	0.305	0.673**	0.305
학력(고졸)						
중졸 이하	0.331***	0.074	-0.542**	0.235	0.419*	0.237
전문대, 대졸	-0.104*	0.054	-0.171	0.164	-0.096	0.173
대학원 이상	-0.580***	0.221	-0.007	0.737	-0.658	0.710
이직 전 직종(기타)						
사무직	0.141*	0.075	-0.278	0.220	0.212	0.243
기능원, 관련근로자	-0.007	0.081	-0.426*	0.249	0.016	0.262
단순노무직	-0.274***	0.077	-0.291	0.263	-0.268	0.245
전문가, 준전문가, 기술공	-0.466***	0.086	-0.497*	0.264	-0.495*	0.277
이직 전 사업장 규모(10인 미만)						
10~29인	-0.125*	0.066	-0.039	0.217	-0.141	0.212
30~99인	0.026	0.069	0.099	0.220	0.008	0.220
100~299인	0.196**	0.076	-0.024	0.249	0.212	0.242
300인 이상	-0.065	0.073	-0.222	0.230	-0.055	0.235
건설공사	-0.499***	0.162	-0.734	0.487	-0.519	0.521
이직 전 산업(기타)						
제조업	0.047	0.068	-0.072	0.226	0.048	0.217
건설업	-0.063	0.109	0.117	0.303	-0.103	0.359
도소매, 소비자용품	-0.209**	0.085	0.094	0.276	-0.249	0.270
금융 및 보험	0.012	0.142	0.327	0.342	-0.053	0.48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27	0.074	-0.185	0.247	0.058	0.236
이직 전 임금(로그)	0.520***	0.069	-0.349*	0.205	0.641***	0.222
정규직	-0.258***	0.057	-0.131	0.218	-0.281	0.178
비자발적 이직	-0.134***	0.049	-0.249	0.183	-0.126	0.156
이직 전 재취업 준비	-1.116***	0.057	-0.736***	0.236	-1.151***	0.179
가구주	-0.577***	0.071	-0.126	0.259	-0.616***	0.224
이직 전 근속기간(월)	0.001	0.001	0.003***	0.001	0.000	0.002
퇴직금 수령	-0.103**	0.052	0.034	0.163	-0.091	0.167
부양가족(있음)	0.232***	0.076	-0.317	0.267	0.308	0.240
가구소득(없음)						
천만 원 미만	-0.143	0.165	0.439	0.430	-0.296	0.544
천만 원~5천만 원	-0.184	0.148	0.141	0.372	-0.306	0.491
5천만 원~1억 원	-0.602***	0.150	0.387	0.374	-0.790	0.497
1억 원 이상	-0.553***	0.155	-0.004	0.386	-0.709	0.513
N	1,982		989		993	
-2Log Likelihood	12,073.72		1,182.99		1,199.12	
R ²	0.135		0.149		0.132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12명이며, 상정한 변수들의 결측치로 인해 관찰치는 1,982명임.

3) 직종변수 중 '기타'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서비스·판매직근로자, 농업·업숙련근로자 등이고, 산업변수 중 '기타'는 농수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 운수·창고·통신업 등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금의 높을수록 미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의 미취업 가능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자는 자발적 이직자에 비하여 미취업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경우에는 비가구주에 비하여 미취업 가능성이 낮았으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제2절 미취업자의 재취업 행태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 6-8>에서 보듯이 미취업자 중 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73.0%,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52.1%였다. 따라서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을 단념한, 즉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은 미취업 실업급여 수급자의 27.0%, 미취업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47.9%로서 전체 미취업자의 35.5%나 구직을 단념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구직단념자 중 취업할 의사가 있는 취업희망자, 즉 실망실업자는 미취업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구직단념자의 43.0%, 미취업 실업급여 비수급자 중 구직단념자의 48.7%로 구직단념자의 거의 절반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실망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취업자 중 고령 등을 이유로 취업을 완전히 포기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미취업 실업급여 수급자의 15.4%, 미취업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24.6%에 불과하고, 취업희망자는 미취업 실업급여 수급자의 84.6%, 미취업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75.4%에 이르고 있다. 미취업자 중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이처럼 매우 높다는 것은 미취업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를 보면 <표 6-9>에서 보는

〈표 6-8〉 미취업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 및 실망실업자 비율

미취업자 (N=993)	수급자 (59.0%, N=586)	적극적 구직활동자 (미취업 수급자의 73.0%, 미 취업자의 43.1%, N=428)	취업희망자 (미취업 수급자의 73.0%, N=428)
		구직단념자 (미취업 수급자의 27.0%, 미 취업자의 15.9%, N=158)	취업희망자 (미취업 수급자의 11.6%, 구직단념 자의 43.0%, N=68) 취업포기자 (미취업 수급자의 15.4%, 구직단념 자의 57.0%, N=90)
	비수급자 (41.0%, N=407)	적극적 구직활동자 (미취업 비수급자의 52.1%, 미 취업자의 21.3%, N=212)	취업희망자 (미취업 비수급자의 52.1%, N=212)
		구직단념자 (미취업 비수급자의 47.9%, 미취업자의 19.6%, N=195)	취업희망자 (미취업 비수급자의 23.3%, 구직단 념자의 48.7%, N=95) 취업포기자 (미취업 비수급자의 24.6%, 구직단 념자의 51.3%, N=1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6-9〉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1)

(단위: %)

		지속적으로 구직활동	간헐적으로 구직활동	구직활동 안함	전 체
실업급여 수급여부별	수급자	64.5	34.1	1.4	100.0
	비수급자	59.4	38.7	1.9	100.0
성별	남자	67.0	32.5	0.5	100.0
	여자	55.7	40.9	3.4	100.0
연령계층별	30세 미만	62.4	34.6	3.0	100.0
	30~39세	63.7	34.6	1.7	100.0
	40~49세	72.4	27.6	0.0	100.0
	50세 이상	56.6	42.0	1.5	100.0
학력별	초졸 이하	55.8	41.6	2.6	100.0
	중졸	63.5	36.5	0.0	100.0
	고졸	62.8	36.1	1.1	100.0
	전문대·대졸	65.0	32.7	2.3	100.0
	대학원 이상	66.7	33.3	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바와 같이 ‘이직 후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자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64.5%, 비수급자는 59.5%였으며,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다 말다(간헐적으로) 하였다’는 응답자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34.1%, 비수급자는 38.7%였고,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1.4%, 비수급자는 1.9%에 불과하였다. 즉 미취업자들의 대부분은 구직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를 성별로 보면 ‘이직 후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자가 남성은 67.0%, 여성은 55.7%이고,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남성은 0.5%, 여성은 3.4%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 30대, 20대, 50대의 순으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체적으로 고학력자일수록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를 보면 이직 후 조사시점 현재까지 구직활동을 한 기간을 모두 합한 총 구직활동 기간이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평균 5.6개월로 재취업자의 3.7개월보다 1.5배나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후 조사시점 현재까지 입사원서를 제출하였거나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본 구직횟수는 미취업자가 6.8회, 취업자가 5.9회로 미취업자가 1.2배 많았다. 구직활동 기간 중의 월평균 구직 횟수에 있어서는 미취업자가 1.2회, 취업자가 1.6회로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구직활동을 더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표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하였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 연령계층별로는 40세 이상,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에 ‘구직하여 보았으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여성의 경우 ‘가사일 때문에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50세 이상의 연령계층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자

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요약하면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는 재취업자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지만 미취업자들도 재취업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는 미취업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켜 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6-10>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II)

	총 구직활동기간(A)	구직횟수(B)	단위기간당 구직횟수(B/A)
미취업자	5.64개월	6.84회	1.21회
재취업자	3.70개월	5.94회	1.61회

주: 취업자는 첫 직장 구할 때까지의 구직활동 기간과 구직 횟수를 평균한 값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6-11>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교육·기술·경험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원하는 임금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원하는 시간만 일할 수 없어서	구직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했지만 일을 할 기회가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하려고	가사일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통학	기타
수급 여부별	수급자	9.2	15.8	4.6	25.0	2.0	2.0	10.5	17.1	0.7	13.2
	비수급자	22.7	5.7	10.2	22.7	5.7	1.1	5.7	13.6	1.1	11.4
성별	남자	20.0	13.3	6.7	29.6	4.4	2.2	0.7	14.1	1.5	7.4
	여자	6.7	10.5	6.7	17.1	1.9	1.0	19.0	18.1	0.0	19.0
연령 계층별	30세 미만	12.0	10.0	10.0	14.0	4.0	0.0	18.0	8.0	4.0	20.0
	30~39세	16.4	11.9	4.5	14.9	6.0	4.5	13.4	10.4	0.0	17.9
	40~49세	17.6	20.6	2.9	29.4	2.9	0.0	2.9	17.6	0.0	5.9
	50세 이상	12.4	10.1	7.9	34.8	1.1	1.1	2.2	23.6	0.0	6.7
학력별	초졸 이하	11.8	8.8	2.9	26.5	0.0	2.9	2.9	35.3	0.0	8.8
	중졸	13.0	0.0	13.0	39.1	4.3	0.0	0.0	21.7	0.0	8.7
	고졸	11.4	14.3	5.7	22.9	4.8	2.9	9.5	17.1	0.0	11.4
	전문대, 대졸	19.7	14.5	7.9	18.4	2.6	0.0	13.2	3.9	2.6	17.1
	대학원 이상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표 6-12>에서 보듯이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약 80%에 이르고 있으며, 40대 연령계층의 경우에는 자영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15.5%에 이르고 있다. 또한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무시간 형태는 약 88%가 전일제 근무를 원하였으나 여성은 19%가 시간제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7.2%에 비하여 2.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13 참조).

<표 6-12>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의 희망 고용형태

(단위: %)

		정규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전 체
수급 여부별	수급자	77.9	8.4	3.2	10.5	100.0
	비수급자	81.3	5.4	5.4	8.0	100.0
성별	남자	77.7	5.9	4.1	12.4	100.0
	여자	81.6	9.2	4.1	5.1	100.0
연령 계층별	30세 미만	89.9	5.7	0.0	4.4	100.0
	30~39세	83.6	3.3	1.4	11.7	100.0
	40~49세	76.4	3.4	4.7	15.5	100.0
	50세 이상	69.1	14.7	9.2	6.9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6-13>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무시간 형태

(단위: %)

		전일제근무	시간제근무	계
수급 여부별	수급자	87.0	13.0	100.0
	비수급자	89.1	10.9	100.0
성별	남자	92.8	7.2	100.0
	여자	81.0	19.0	100.0
연령계층별	30세 미만	88.2	11.8	100.0
	30~39세	90.4	9.6	100.0
	40~49세	91.2	8.8	100.0
	50세 이상	83.2	16.8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6-14>의 미취업자의 구직방법과 <표 6-15>의 재취업자의 구직방법을 비교해 보면 ‘친구·친지의 소개’에 의해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이 재취업자나 미취업자 모두 실업급여 수급 여부, 성, 연령, 학력 등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미취업자가 재취업자에 비하여 ‘친구·친지의 소개’에 의해 구직활동을 하는 응답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신문, TV, 벽보, 생활정보지 등의 구인광고’를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은 미취업자의 경우 두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구직방법으로 응답하였으나 재취업자의 경우에는 미취업자의 절반 정도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재취업자는 ‘전에 일하던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이 두번째로 높았다. ‘신문, TV, 벽보, 생활정보지 등의 구인광고’를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많이 활용하는 구직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와 30대 이하의 젊은층은 인터넷, PC통신 등 전산망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이나 사설직업안내소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은 재취업자와 미

<표 6-14>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단위 : %)

		학교/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친구/ 친지의 소개	공공직업 안내소를 통해서	사설직업 안내소를 통해서	신문/TV/ 벽보등의 구인광고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가족을 통하여	인터넷/ PC통신등 전산망을 통하여	자영업 준비	기타
수급	수급자	3.2	39.7	5.0	2.7	19.6	10.5	1.6	9.4	6.2	2.1
여부별	비수급자	3.4	33.6	3.7	2.3	21.5	11.7	1.3	15.4	5.0	2.0
성별	남자	1.8	40.4	4.3	3.2	19.6	13.1	1.1	7.0	7.7	1.8
	여자	5.5	32.4	4.8	1.7	21.5	7.8	2.0	19.1	2.7	2.4
연령 계층별	30세 미만	6.9	23.3	5.0	1.9	21.4	5.0	1.3	33.3	1.3	0.6
	30~39세	5.2	35.8	5.7	1.4	16.0	12.3	0.9	11.8	8.5	2.4
	40~49세	0.0	41.9	1.4	4.1	24.3	10.8	1.4	2.7	10.8	2.7
	50세 이상	0.9	45.6	5.1	3.2	21.2	14.3	2.3	2.3	2.8	2.3
학력별	초졸 이하	0.0	41.4	6.9	2.3	24.1	18.4	3.4	0.0	1.1	2.3
	중졸	0.0	45.3	6.3	3.1	17.2	15.6	1.6	3.1	4.7	3.1
	고졸	2.1	37.3	4.0	3.4	24.5	9.5	1.2	10.7	4.9	2.4
	전문대, 대졸 대학원 이상	6.8 0.0	33.6 42.9	4.0 0.0	1.6 0.0	14.8 14.3	9.2 14.3	1.2 0.0	19.2 28.6	8.4 0.0	1.2 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6-15〉 재취업자의 구직방법

(단위 : %)

		학교/학입/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친구/친지의 소개	공공직업 안내소를 통해서	사설직업 안내소를 통해서	신문/TV/벽보등의 구인광고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가족을 통하여	인터넷/PC통신 등전산망을 통하여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전일자리에서업무상알게 된 사람을 통해	기타
수급 여부별	수급자	17	32.6	23	37	11.7	10.9	20	46	86	17.4	46
	비수급자	21	31.1	23	1.7	11.7	9.8	26	6.4	13.2	16.4	40
성별	남자	1.8	31.7	2.4	2.9	9.7	11.0	2.3	4.4	10.8	18.9	7.1
	여자	2.3	31.7	1.9	1.5	16.4	8.4	2.7	8.8	12.6	11.8	1.4
연령 계층별	30세 미만	3.3	31.6	2.2	0.7	16.4	7.1	3.3	10.8	10.0	11.5	2.3
	30~39세	2.0	32.0	1.0	1.7	9.8	8.8	2.7	5.7	13.1	19.9	2.9
	40~49세	0.0	33.5	1.2	3.0	13.8	15.0	1.2	2.4	13.2	15.0	0.9
	50세 이상	1.4	29.3	6.1	6.8	4.8	13.6	1.4	0.0	8.2	22.4	2.6
학력별	초졸 이하	0.0	30.4	4.3	8.7	10.9	15.2	0.0	0.0	10.9	17.4	0.3
	중졸	0.0	31.8	3.5	11.8	9.4	11.8	0.0	0.0	10.6	15.3	1.4
	고졸	0.5	36.4	1.9	1.1	13.4	11.8	3.5	2.9	7.5	19.3	2.0
	전문대, 대졸	4.1	27.0	2.2	1.1	11.0	7.2	2.2	10.5	15.7	14.3	4.9
	대학원 이상	0.0	33.3	0.0	0.0	0.0	25.0	0.0	8.3	8.3	25.0	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취업자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취업자가 재취업자에 비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자 중 구직기간 동안 취업 제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45.0%, 비수급자의 36.1%였다. 취업 제의를 받아 본 횟수는 <표 6-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취업자가 재취업자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성, 연령, 학력에 따른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취업자 중 50세 이상 연령계층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에는 취업 제의를 받아본 횟수가 다른 계층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취업 제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한 이유로는 <표 6-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여 또는 수입이 적어서’, ‘적성·기능·경험 등과 맞지 않아서’,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서’ 등 임금조건이나 작업조건 등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6-16〉 취업 제의를 받아본 횟수

(단위: 회, 명)

		재취업자		미취업자	
		평균취업 제의 횟수	사례수	평균취업 제의 횟수	사례수
수급 여부별	수급자	3.51	217	1.68	438
	비수급자	2.23	372	1.11	299
성별	남성	2.71	422	1.52	443
	여성	2.67	167	1.35	294
연령별	30세 미만	2.65	178	1.5	159
	30~39세	2.74	216	1.77	213
	40~49세	2.85	105	1.76	148
	50세 이상	2.53	90	0.89	217
학력별	초졸 이하	2.76	25	0.43	87
	중졸	2.59	44	1.34	64
	고졸	2.61	245	1.6	328
	전문대, 대졸	2.85	263	1.65	250
	대학원 이상	1.67	12	1.14	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6-17〉 취업 제의를 거절한 이유

(단위: %)

		급여 또는 수입이 적어서	작업조건 이나 작업 환경이 나 빠서	직성·기능· 경험 등과 맞지 않아서	기업규모 가 작아서	일이 임시 적이어서	장래성이 없어서	더 좋은 직장 이나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수급 여부별	수급자	26.2	25.0	22.0	0.6	4.8	3.6	10.1	7.7
	비수급자	31.9	18.1	28.7	0.0	6.4	2.1	6.4	6.4
성별	남성	33.1	20.7	26.6	0.6	5.3	3.6	6.5	3.6
	여성	19.4	25.8	20.4	0.0	5.4	2.2	12.9	14.0
연령 계층별	30세 미만	16.4	28.4	22.4	0.0	6.0	4.5	14.9	7.5
	30~39세	32.6	20.0	23.2	1.1	5.3	3.2	6.3	8.4
	40~49세	39.2	13.7	27.5	0.0	3.9	2.0	9.8	3.9
	50세 이상	24.5	28.6	26.5	0.0	6.1	2.0	4.1	8.2
학력별	초졸 이하	11.1	22.2	11.1	0.0	11.1	11.1	22.2	11.1
	중졸	17.6	41.2	0.0	0.0	11.8	5.9	5.9	17.6
	고졸	29.8	22.9	26.0	0.8	3.8	3.1	6.9	6.9
	전문대, 대졸	30.4	19.6	25.5	0.0	5.9	2.0	10.8	5.9
	대학원 이상	0.0	0.0	100.0	0.0	0.0	0.0	0.0	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미취업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향후 재취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표 6-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나 비수급자 모두 ‘희망하는 조건대로 취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희망하는 조건을 낮추더라도 취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희망하는 조건을 낮추더라도 취업이 어려울 것이다’ 등의 부정적인 응답이 매우 높은 반면, ‘희망하는 조건대로 곧 취업이 될 것이다’, ‘희망하는 조건을 낮추면 곧 취업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이 앞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이, 30대 이하의 연령계층에 비해서는 40대 이상의 연령계층이,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에 비해서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재취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이직 전의 임금수준과 희망임금 및 의중임금을 <표 6-19>에서 비교해 보면 희망임금 수준이 이직 전의 임금수준에 비해 크게 낮고 의중임금 수준은 희망임금 수준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아 미취업자가 재취업을 위해 눈높이를 크게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업급여 비수급자보다는 수급자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30대와 40대 연령계층보다는 30세 이하와 50세 이상의 연령계층이, 대학원 미만의 학력자보다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가 이직 전의 임금수준에 비해 희망임금 및 의중임금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취업자들은 재취업을 위한 눈높이까지 크게 낮추어가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미취업자들이 생각하는 구직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그림 6-1]은 미취업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에 대해 동의한 비율이 각각 78.3%, 66.9%로 가장 높아 일자리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미취업자들이 재취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재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67.6%, 비수급자의 경우 42.5%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구조

<표 6-18> 미취업자 스스로 생각하는 재취업 가능성

(단위: %)

		희망하는 조건대로 곧 취업될 것이다	희망하는 조건대로 취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희망하는 조건을 낮추면 곧 취업될 것이다	희망하는 조건을 낮추더라도 취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희망하는 조건을 낮추더라도 취업을 어렵게 할 것이다
수급 여부별	수급자	5.5	30.4	13.5	24.7	26.0
	비수급자	11.0	31.8	18.4	25.1	13.7
성별	남성	6.1	31.4	11.5	25.7	25.3
	여성	10.2	30.3	21.4	23.5	14.6
연령별	30세 미만	12.6	34.6	22.6	24.5	5.7
	30~39세	10.8	39.9	19.7	19.7	9.9
	40~49세	4.7	33.8	15.5	27.0	18.9
	50세 이상	3.2	17.5	6.0	28.6	44.7
학력별	초졸 이하	4.6	14.9	6.9	24.1	49.4
	중졸	6.3	26.6	9.4	35.9	21.9
	고졸	6.1	35.4	17.1	22.6	18.9
	전문대, 대졸	11.2	31.6	18.4	25.6	13.2
	대학원 이상	14.3	28.6	0.0	14.3	42.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표 6-19> 미취업자의 월평균 희망임금 및 의중임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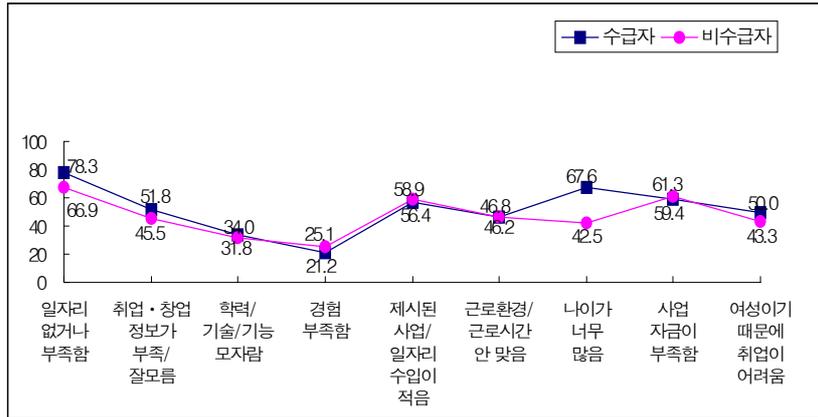
(단위: 만원, %)

		이직 전 임금	희망임금	의중임금	이직 전 임금대비 변화율	
					희망임금	의중임금
수급 여부별	수급자	138.20	105.25	93.15	-23.8	-32.6
	비수급자	114.00	96.38	93.94	-15.5	-17.6
성별	남성	155.15	130.84	120.05	-15.7	-22.6
	여성	98.39	69.10	63.90	-29.7	-35.0
연령별	30세 미만	101.39	74.30	70.68	-26.7	-30.3
	30~39세	126.04	115.56	103.18	-8.3	-18.1
	40~49세	154.62	137.77	133.39	-10.9	-13.7
	50세 이상	136.63	89.81	79.72	-34.3	-41.7
학력별	초졸 이하	98.10	69.16	63.10	-29.5	-35.7
	중졸	107.43	81.38	81.85	-24.2	-23.8
	고졸	123.86	98.47	92.58	-20.5	-25.3
	전문대, 대졸	147.04	122.26	108.55	-16.9	-26.2
	대학원 이상	299.89	131.67	123.33	-54.1	-58.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그림 6-1) 미취업자 스스로 생각하는 구직시의 장애요인

(단위 : %)



주: 구직시 어려움에 대해 각 항목에 대한 동의율(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을 측정함 것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자들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재취업은 매우 어려운 노동시장의 최근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연령에 의한 차별이 상당한 정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동의한 사람도 수급자의 경우 50.0%, 비수급자의 경우 43.3%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성에 의한 채용의 차별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수급자의 51.8%, 비수급자의 45.5%에 이르고 있어,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효율화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7장

결론 및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실업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해 주는 사회학습망(social learning ne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과정에서도 선진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였으며, 실업인정 과정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제도의 시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효과와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내어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 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업급여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실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급률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실업급여 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시행 과정에서 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비수급자와 비교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가 아니면 사회적 상위계층인가를 분석하였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과 재취업 행태는 비수급자와 과연 다른가, 다르다면 어떠한 점에서 어느 정도 다른가, 그리고 실업급여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구직활동 노력을 약화시키고 실업기간을 늘리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 서비스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선진국에서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이직 후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장기간 미취업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행태는 재취업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6가지 관점에서 고용보험 DB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추적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의 주요 결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50%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받은 실제 실업급여의 금액은 이직 전 임금의 약 45%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의 기간 중에 지급된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66.4%가 받았으며, 실업급여의 평균 지급일수는 35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수와 수급률은 실업자수 및 실업률과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청년층에 비하여 중·고령자

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성과 연령 측면에서는 여성과 중·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에 실업급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과 학력수준 측면에서는 저임금·저학력의 사회적 한계계층보다는 고임금·고학력의 사회적 상위계층이 구직급여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특별연장급여의 수혜자는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 등인 것으로 나타나, 특별연장급여는 한계실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실업을 당하지 않은 피보험자와 실업은 되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비수급자에 비하여 노동시장에서 성, 연령, 학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한계근로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예상과는 다소 다른 결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계층별로는 30대 이하에 비해 40대와 50대 이상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자에 비해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이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고졸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고졸자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종별로는 예상과는 달리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고, 고위임직원과 사무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계직종의 근로자보다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직종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을 수령한 이직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직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청년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예상했던 바다. 그러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보다도 고학력자인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으며,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단순노무직보다도 더 높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주로 대기업과 금융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고임금·고학력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계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실업 발생의 위험과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특정시점에 구조조정이 활발한 업종의 중장년층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의 위험이 특히 높고 이들은 근속기간도 길고 비자발적 실업자들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998년 이후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던 금융업의 40세 이상의 고연령·고학력·고임금자는 실업 위험이 매우 높았고, 이들은 장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비자발적 실업자일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확률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시행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30인 이상 사업의 상용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고용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외환위기 이후에 30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적용은 200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white collar) 근로자들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높고 단순노무직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한계계층의 근로자들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실업급여 발전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이해는 가지만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고용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수혜자들을 보면 사회적 상위계층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국 조기재취직수당은 그 성격상 일반 구직급여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재취업이 용이한 저연령·고학력의 남성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조기재취직수당이 모든 수급자들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판단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없었더라도 조기에 재취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노동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계층에게 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연유한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사회적 한계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실업급여의 적용이 이루어지면 실업급여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기능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와 재취업 행태, 그리고 재

취업의 질에 있어서는 비수급자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실업기간은 비수급자에 비하여 길고 재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급여의 부작용이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2000년 4~6월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및 노동시장의 여건, 기업의 채용 및 고용조정 관행 등의 변화,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시점의 조사 결과만으로 실업급여가 수급자의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분석 결과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직 후 재취업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이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각각 87.1%, 82.7%로서 재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직 후 구직방법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에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35.6%이고 비수급자는 80.3%였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으로부터 취업으로의 탈출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해 비수급자의 이직 직후 탈출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평균실업기간에 있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는 5.51개월, 비수급자는 2.45개월로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실업급여 비수급자는 수급자에 비하여 조기에 재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과는 달리 구직급여를 모두 소진한 시점을 전후하여 탈출률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발견되지는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실업급여의 운용을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실업급여의 지급이 본인들의 구직활동 노력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10.4%만 동의하고 89.6%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실업급여 덕분에 시간을 갖고 나에게 보다 적합한 직장을 알아볼 수 있었다’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55.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급여 수급과 상관없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왔으며, 실업급여제도가 구직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물질적·심리적 여유를 갖게 하여 구직활동의 내실을 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한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노력에 대해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은 37.5%로 ‘종전보다 소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2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정급여일수의 구직급여를 소진한 이후에 구직활동을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급여가 구직활동 노력을 약화시키는 데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업급여가 재취업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 가능성의 성별 차이를 보면, 재취업 경험은 남성이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재취업 가능성은 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50대 이상의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 가능성은 30대 이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였으나 40대는 30대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학력별 재취업 경험 및 재취업 가능성은 고졸자에 비

하여 전문대 및 대졸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직 후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이 재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후 취업 제의를 받은 횟수가 재취업 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 제의 횟수가 조사시점 현재의 재취업 가능성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재취업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취업한 직장의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근로환경,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사고과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하여 비수급자의 만족도가 미세하나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지 후생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만족도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취업한 현재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너무 작아 직장만족도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재의 직장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다소 낮았다.

결국 실업급여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재취업의 행태, 그리고 재취업된 직장의 질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기간과 재취업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실업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길고 재취업 가능성도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앞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고학력자, 정규직, 고임금근로자 등 사회적 우위계층이 더 높다는 사실과 연계

해서 생각해 볼 때 실업급여의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최소화하여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수준, 소정급여일수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은 물론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노동시장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수준, 소정급여일수 등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조심스럽고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실업급여제도를 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실업급여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4

일선 직업안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 서비스가 재취업 촉진이라는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는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취업알선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태도와 자세도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실업인정 과정의 내실화가 시급한 과제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저연령·고학력의 남성이 주로 취업알선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취업알선 서비스가 필요한 여성과 중·고령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과 상담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알선 서비스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지난 2주 동안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는가를 확인받는 실업인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재취업에 필요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받고 직업상담도 받게 된다. 그런데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알선 서비스의 효과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업인정시 취업알선 창구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은 경험 여부에 대해 ‘전혀 소개받은 적이 없다’라는 응답이 65.2%나 되었으며, ‘가끔 소개받았다’라는 응답이 32.9%, ‘자주 소개받았다’라는 응답은 1.9%로서 실업인정 과정에서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3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취업알선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취업알선을 받은 이유로는 ‘스스로 판단하여 취업알선을 받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상담원의 권유’는 25.8%,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7.8%로서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취업알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업인정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취업알선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취업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현행 취업알선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젊은 남성과 같이 재취업이 용이한 집단에 대해서는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구인정보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장기실업 확률이 높은 중·고령층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서비스 제공 방법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계층에게 취업상담 서비스를 집중하고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취업상담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직업상담방식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2년 말부터 직업안정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방식 및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점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러한 직업안

정기관의 혁신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고용안정, 상담 공간 등 시설의 확충, 상담원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상담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한계근로자를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실업자 프로파일링(profiling)제도의 시행, 인터넷을 통한 노동시장 정보제공 시스템인 work-net의 혁신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인프라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주목할 점은 취업상담을 소극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받은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받은 사람이 취업상담의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구직자의 태도 또한 재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일부 계층이 실업급여를 자주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지급이 개시된 1996년 7월부터 2001년 말까지의 5년 반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은 약 5만여 명으로서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4.1%에 해당된다. Meyer and Rosenbaum(1996)이 미국 5개 주의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979년부터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의 비중이 40.1%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비중은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그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9.9%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문제를 주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개시 이후 2001년까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횟수별 분포를 보면 최대 반복 횟수는 4회이며, 반복수급자의 96.7%가 실업급여를 2회 받은 자이다. 반복수급에 걸린 기간을 보면 2회 반복수급자는 평균적으로 첫번째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지 약 2년 만에 두 번째의 수

급신청을 했다. 3회 반복수급자는 2회 수급자에 비해 그 기간이 짧아 세 번째 수급 신청을 하는 데에 평균 3년 정도가 걸려 대체로 1년에 1회 정도 수급했음을 알 수 있다.

누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았는가를 분석한 결과 이직 전 임금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근속기간은 짧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로 보면 90일인 사람들에 비해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반복수급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다시 말하면 소정급여일수가 짧은 쪽이 긴 쪽에 비해 반복수급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직사유별로는 경영상 해고자에 비해 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 종료로 이직한 사람들이 유의하게 반복수급 가능성이 높았다. 직종별로는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에 비해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농어업 숙련근로자가 반복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에 비해 광공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반복수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노동이동이 잦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이직자들에 비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이직자들의 반복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반복수급 가능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자가 반복수급 가능성이 낮았으나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반복수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노동이동이 잦은 청년층이나 교육수준과 숙련 정도가 낮고 임금이 낮은 주변노동력계층이 아니라 전 직장의 임금이 비교적 높고 연령이 많으며 전문대학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회적 중간계층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반복수급자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이 되더라도 재실업의 위험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안정된 직업으로의 취업알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업자 직업훈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와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

미취업자 중 고령 등을 이유로 취업을 완전히 포기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미취업 실업급여 수급자의 15.4%, 미취업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24.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미취업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재취업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업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취업자의 특성을 보면 실업급여 비수급자보다는 수급자가, 성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연령계층별로는 30세 미만에 비하여 30세 이상 미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 미취업 가능성을 보면 고졸 학력자에 비하여 중졸 이하의 학력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취업 가능성이 높고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미취업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는가의 여부와 미취업 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의 미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는 재취업을 위해 의중임금을 이직 전의 임금에 비해 크게 낮추고 재취업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의 절대적인 부족, 학력·기술·기능의 부족, 연령 및 성에 의한 차별, 취업·창업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재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성 및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효율화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를 본격적으로 분석

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매우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 나타난 문제점 중의 상당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해소된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고용보험제도의 부분적인 변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일중·최공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추계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4.
- 유길상·김정우·안기정, 『일본의 고용보험제도Ⅱ: 2001년 개편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2002.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 _____, 『실업급여 미수급자 실태조사』, 2001. 11.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 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 황덕순, 「실업급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유길상 외(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113~157쪽, 2000. 12.
- Albrecht, James and Bo Axell, “An Equilibrium Model of Search Un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2, 1984, pp. 824-840.
- Atkinson, Anthony B. and John Micklewright,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9, No. 4, Dec. 1991, pp. 1679-1727.
- _____, “Income Maintenance for the Unemployment in Britain and the Response to High Unemployment”, *Ethics*, Vol. 100, 1990, pp. 569-585.
- Barron, Jonh M., and Wesley Mellow, “Search Effort in the Labor Market”,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4, 1979, pp. 389-404.
- Ben-Horin, Moshe and Dror Zuckerman, “The Effect of Unem-

- ployment Insurance on Unemployment Duratio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5, 1987, pp. 386-390.
- Bjorklund, Aners,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in Sweden, 1965-1976”,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 80, 1978, pp. 421-439.
- Burdett, Kenneth and Dale Mortensen, “Search, Layoffs, and Labor Market Equilibriu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8, 1980, pp. 652-672.
- Burdett, Kenneth, “Unemployment Insurance Payment as a Search Subsidy : A Theoretical Analysis”, *Economic Inquiry*, Vol. 17, 1979, pp. 333-343.
- Burgess, Paul L., and Jerry L. Kingston, “UI Benefit Effects on Compensated Unemployment”, *Industrial Relations*, Vol. 20, 1981.
- Burtless, Gray, “Unemployment Insurance and Labor-Supply: A Survey”, in Hansen, Lee and James Byers(eds), *Unemployment Insurance*,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0.
- Chapin, Gene, “Unemployment Insurance, Job Search, and the Demand for Leisure”, *Western Economic Journal*, Vol 9, March 1971, pp. 102-107.
- Clark, Kim and Lawrence Summers, “Unemployment Insurance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in Baily, Martin(ed), *Workers, Jobs, and Infla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2.
- Classen Kathleen P., “The Effect of Unemployment Insurance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and Subsequent Earning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30, No. 4, July 1977, pp. 371-389.
- Corson, Walter and Walter Nicholson, *An Examination of Declining UI Claims During the 1980s*,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1988.
- Danziger, Shwldon, Robert Haveman, and Robert Plotnick, “How

- Income Transfer Programs Affect Work, Saving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9, 1981, pp. 975-1028.
- Davidson, Carl, and Stephen A. Woodbury,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Implications of the Reemployment Bonus Experiment”, Draft paper prepared for the Advisory Council on Unemployment Compensation, 1995.
- Ehrenberg, Ronald G., and Ronald L. Oaxaca, “Unemployment Insurance, Duration of Unemployment, and Subsequent Wage Gai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6, No. 5, December 1976, pp. 754-766.
- Ehrenberg, Ronald G., and Robert S. Smith, *Modern Labou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3rd Ed.) 1988.
- Feldstein, Martin, “The Economics of the New Unemployment”, *the Public Interest*, Vol. 33, Fall 1973.
- _____, “The Effect of Unemployment Insurance on Temporary Lay off Un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December 1978, pp. 834-846.
- Fields, Gary S., “Direct Labor Market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Relations*, Vol. 16, No. 1. February 1977, pp. 1-14.
- Flemming, John, “Aspects of Optimal Unemployment Insurance: Search, Leisure, Savings and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0, 1978, pp. 403-425.
- Haber, William and Merrill G. Murray,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American Economy ; An Historical Review and Analysis*, 1966.
- Ham, John C., and Samuel A. Jr. Rea, “Unemployment Insurance and Male Unemployment Duration in Canada”,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5, 1987, pp. 325-353.
- Hamermesh, Daniel S., “Entitlement Effects, Unemployment Insurance

- and Employment Decisions”, *Economic Inquiry*, Vol. X V II, July 1979, pp. 317-332.
- _____, *Jobless Pay and the Econom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 Holen, Arlene and Stanley A. Horowitz, “The Effect of Unemployment Insurance and Eligibility Enforcement on Unemployment”,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1974.
- Johnson, George and Richard Layard, “The National Rate of Unemployment: Explanation and Policy”, (Eds: Orley Ashenfelter and Richard Layard), *The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2, 1986.
- Katz, Lawrence and Bruce Meyer, “The Impact of the Potential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1, 1990, pp. 45-72.
- Kim, Iljoong, “The Effectiveness of a Reemployment Bonus as an Incentive Contract”, *Economics Letters*, Vol. 39, 1992, pp. 345-352.
- Lancaster, Tony and Stephen Nickell, “The Analysis of Re-Employment Probabilities for the Unemployed”, *Journal of Royal Statistics Society, Part 2*, Vol. 143, 1980, pp. 141-152.
- Lippman, Steven and John McCall, *Studies in the Economics of Search*, Amsterdam: North Holland, 1979.
- Marston, Stephen T., “The Impact of Unemployment Insurance on Job Search”, Brooking Paper, Washington, DC. 1975, pp. 13-48.
- Meyer Bruce D.,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Spells”, *Econometrica*, Vol. 33, No. 1, 1995, pp. 757-782.
- Meyer Bruce D. and Dan T Rosenbaum, *Repeat Use of Unemployment Insurance*, NBER Working Paper No. 542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Jan. 1996.

- Moffitt, Robert, "Unemployment Insurance and The Distribution of Unemployment Spell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28, 1985, pp. 85-101.
- Moffitt, Robert and Walter Nicholson, "The Effect of Unemployment Insurance on Unemployment: The Case of Federal Supplemental Benefi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4, 1982, pp. 1-11.
- Mortensen, Dale, "Unemployment Insurance and Job Search Decision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30, 1977, pp. 505-517.
- Mortensen, Dale, "Job Search and Labor Market Analysis", in Asenfelter, Orley and Richard Layard(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II, North-Holland, 1986, pp. 849-919.
- Rothschild, Michael, "Models of Market Organization With Imperfect Information: A Surve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1973, pp. 1283-1308.
- Solon, Gary, "Work Incentive Effects of Taxing Unemployment Benefits", *Econometrica*, Vol. 53, No. 2. 1985, pp. 295-306.
- Tannery, Frederick, "Search Effort and Unemployment Insurance Reconsidered",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8, 1983, pp. 432-440.
- Topel, Robert and Finis Welch, "Unemployment Insurance: Survey and Extensions", *Economica*, Vol. 47, 1980, pp. 351-379.
- Usategui, Jose, "Finite Dur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Reservation Wages and Partipation in the Job Market", University del Pais Vasco, 1989.
- Welch, Finis, "What Have We Learned from Empirical Studies of Un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30, 1977, pp.225-239.

[부록]

실업급여 수급자 · 비수급자 추적조사 설문지

ID

--	--	--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1996년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실업급여사업의 평가 및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이직 후 생활실태와 직장경험을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취지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업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모아진 설문지는 전국적으로 수집된 다른 설문지와 함께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되어집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연락처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성재민 연구원(전화 02-782-0141, 교환번호 258, Fax 02-3775-2176)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1. 9.

한국노동연구원

응답자 구분	(1) 수급자	(2) 비수급자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	_____세	
지역	(1) 서울 (4) 인천 (7) 울산 (10) 충남 (13) 경북 (2) 부산 (5) 광주 (8) 경기 (11) 충북 (14) 전남 (3) 대구 (6) 대전 (9) 강원 (12) 경남 (15) 전북	
지역 구분	(1) 대도시	(2) 중소도시

주 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통/리/동	번지	호
아 파 트	아파트	동 호	전 화 번 호	()	-	
응답자 성명			방 문 횟 수	회		
면 접 일 시	월	일	시	분	면 접 시 간	시간
조 사 방 법	<input type="checkbox"/> 면 접 <input type="checkbox"/> 전 화 <input type="checkbox"/> 유 치 (해당되는 칸 모두 표시)		생 년 월 일	(양력, 음력) _____년 _____월 _____일		
개인 ID						
면접원성명	(인)		Supervisor 검증	(인)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한 질문(수급자·비수급자 공통)

1. 귀하께서는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하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질문 2로 가세요
 ② 아니오 → 질문 A1로 가세요
2.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 월
3.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_____년 ____ 월부터 _____년 ____ 월까지

A. 이직한 직장에 대한 설문(수급자·비수급자 공통)

- 지금부터의 질문은 귀하께서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한 직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직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 직장에 해당됩니다.
- A1. 귀하께서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한 그 직장에서 일하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_____년 ____ 월부터 _____년 ____ 월까지
 - A2.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한 그 직장에서의 이직 당시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 월 평균 _____만원(떡값, 휴가비 등을 비롯한 상여금

포함, 세금 제외)

A2-1.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한 그 직장에서 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았습니까?

- ① 예 → A2-1-1. 퇴직금은 얼마였습니까? _____만원
- ② 아니오

A2-2.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한 그 직장에서 이직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습니까?

- ① 예 → A2-2-1. 수당은 얼마였습니까? _____만원
- ② 아니오

A3.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한 그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p>용어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일하는 것이 가능한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 ○ 임시직 :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계약직이거나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어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 매일매일의 필요에 의하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어 근로하는 자

- ① 정규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A4.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한 그 직장에서의 근무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떤 것이었습니까?

<p>용어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제 근무 : 몇 시간이나 일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경우 ○ 시간제 근무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일을 시작할 때 몇 시간이나 일(근무)할 것인지 미리 정한 경우. 수시로 시간날 때마다 일하는 경우도 포함됨
--

- ① 전일제 근무 ② 시간제 근무 → A4-1로 가세요.

A4-1. 평소 시간제 근무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 ① 전일제 일자리를 찾기 전에 임시적으로
- ② 일거리가 없어서
- ③ 업무(사업)의 특성상
- ④ 육아
- ⑤ 가사
- ⑥ 학업
- ⑦ 건강 등의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 ⑧ 생활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 ⑨ 기타 _____

A5.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한 그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 ② 회사사정으로 그만두었다.

A5-1.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 ② 자기사업을 하려고
- ③ 결혼, 육아, 가사, 거주지 변경, 노약자 간호, 자녀교육 등의 집안사정으로
- ④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⑤ 징계해고
- ⑥ 학업, 병역 또는 휴식 등 기타 개인사정으로
- ⑦ 임금, 근로조건, 근로내용이 맞지 않아서
- ⑧ 직장 내 왕따와 같은 차별적인 대우 또는 성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
- ⑨ 폐업, 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 ⑩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A10. 귀하의 현재까지의 경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자영업을 오래 해왔다. ② 임금근로를 오래 해왔다.

A11. 현재까지 평생동안 취업하셨던 기간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A12.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하기 전에 실업급여제도에 관하여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예 → A12-1로 가세요 ② 아니오

A12-1. 실업급여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 ① 고용보험료를 낸 근로자가 실업이 되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고용보험료를 낸 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 B1으로 가세요

B. 이직 후 경제활동에 대한 설문(수급자·비수급자 공통)

B1. 귀하께서는 위에서 답하신 직장(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한 직장)으로부터 이직한 이후 첫 직장 또는 창업을 하기 전까지 취업제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인만 받아들이면 취업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소득이나 근무조건 등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간 경우만이 포함됩니다. 직장생활, 자영업, 아르바이트, 가족의 일을 무보수로 돕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회 → B1-1로 가세요 ② 아니다 → B2로 가세요

B1-1. 취업제의를 받은 곳에 취업을 하셨습니까?

- ① 그렇다 → B2로 가세요 ② 아니다 → B1-2로 가세요

B1-2.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급여 또는 수입이 적어서
- ②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서
- ③ 적성, 기능, 경험 등과 맞지 않아서
- ④ 기업규모가 적어서
- ⑤ 일이 임시적이어서 또는 장래성이 없어서
- ⑥ 더 좋은 직장이나 일자리(자영업 포함)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 ⑦ 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 ⑧ 육아문제로 인해서
- ⑨ 기타 _____

B2. 귀하께서는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한 이후 지금까지 한 직장을 일주일 이상 다닌 적이 있습니까?(직장생활, 자영업, 아르바이트, 가족의 일을 무보수로 돕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B3로 가세요

② 아니다 → 미취업자 설문(F1)으로 가세요

※ 앞으로의 모든 질문에서 일자리(임금근로, 자영업 창업, 무급으로 가족이나 친지의 사업을 도운 것 등 모두 포함)는 일주일 이상 다닌 곳만을 지칭합니다.

B3. 이직 후 「일주일 이상」 다닌 직장(일자리)은 몇 곳이나 됩니까?
()개소

※ 지금부터는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 후 첫 번째 일자리(임금근로, 자영업 창업, 무급으로 가족이나 친지의 사업을 도운 것 등 모두 포함)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B4. 귀하께서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하신 이후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구직활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이직 후 다음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 ②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다말다(간헐적으로) 하였다.

B4-1. 귀하께서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 후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구직활동을 한 기간을 모두 합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월 단위로 끊어서 답해 주십시오.

- _____개월(1주일에 한번이라도 했으면 1개월 구직활동 한 것임)

B4-2. 귀하께서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 후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몇 군데나 알아보았습니까?

(입사원서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알아본 횟수를 답하여 주십시오)

■ _____군데

B5. 귀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일자리는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한 이후 한달 이내에 구한 일자리입니까?

- ① 그렇다 → B5-1로 가세요
- ② 아니다 → B6로 가세요

B5-1. 귀하께서는 이 일자리를 어떻게 한달 이내에 구하셨습니까?

- ① 직장을 나오기 전부터 이미 취업약속 또는 준비하였던 일자리에 취업(창업)하였다.
- ② 직장을 나오기 전에 이미 취업약속 또는 창업준비가 되어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직을 대비하여 충분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기에 재취업(창업)할 수 있었다.
- ③ 이직에 대비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직하게 되었지만 이전 직장과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에 취업(창업)할 수 있었다
- ④ 이직에 대비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직하게 되었지만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창업)할 수 있었다.
- ⑤ 기타 _____

B6.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 후 처음으로 취업한 곳에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 B6-1로 가세요
- ② 아니다 → B7로 가세요

B6-1. 이곳에서 귀하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설문(C1)으로 가세요
 - ☞ 타인, 혹은 회사에 고용되어 돈을 받고 일하는 것. 직장,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모두 포함.
- ② 자기사업 → 자영업자 설문(D1)로 가세요
 - ☞ 개인사업, 프리랜서, 농림수산업 등을 포함.
- ③ 돈을 받지 않고 가족 또는 친지의 사업을 도움 → 무급가족 종사자 설문(E1)로 가세요

B7.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 후 첫 직장에서 귀하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임금근로자 → B8으로 가세요
 - ☞ 타인, 혹은 회사에 고용되어 돈을 받고 일하는 것.
직장,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모두 포함.
- ② 자기사업 → B12로 가세요
 - ☞ 개인사업, 프리랜서, 농림수산업 등을 포함.
- ③ 돈을 받지 않고 가족 또는 친지의 사업을 도움 → B13로 가세요

B8.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 후 첫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p>용어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 :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일하는 것이 가능한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 :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계약직이거나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어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 매일매일의 필요에 의하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어 근로하는 자

- ① 정규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B9.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 후 첫 직장에서의 근무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떤 것이었습니까?

<p>용어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제 근무 : 몇 시간이나 일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경우○ 시간제 근무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일을 시작할 때 몇 시간이나 일(근무)할 것인지 미리 정한 경우, 수시로 시간날 때마다 일하는 경우도 포함됨

- ① 전일제 근무 → B10으로 가세요
- ② 시간제 근무 → B9-1로 가세요

B9-1. 시간제 근무를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일제 일자리를 찾기 전에 임시적으로
- ② 일거리가 없어서
- ③ 업무(사업)의 특성상
- ④ 육아
- ⑤ 가사
- ⑥ 학업
- ⑦ 건강 등의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 ⑧ 생활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 ⑨ 기타 _____

B10. 2000년 4월~6월 사이에 이직 후 첫 직장에서의 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월 평균 _____만원 (떡값, 휴가비 등을 비롯한 상여금 포함, 세금 제외)

B11.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 후 첫 직장에 어떻게 취업하셨습니까?

- ①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 ② 친구, 친지의 소개
- ③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④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⑤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
- ⑥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⑦ 가족을 통하여
- ⑧ 인터넷, pc통신 등 전산망을 통하여
- ⑨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⑩ 전 일자리(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⑪ 기타 _____

→ B13으로 가세요.

B12.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 후 첫 사업(일)에서 얻은 소득은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소득 월 평균 _____ 만원 ② 적자(손해)를 보았다.

B13.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 후 첫 직장의 업종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본인은 금융업무를 보더라도 회사가 제조회사이면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 | | |
|----------------------|----------------|
| ① 농업, 수렵업 및 임업 | ② 어업 |
| ③ 광업 | ④ 제조업 |
| 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⑥ 건설업 |
| ⑦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⑧ 숙박 및 음식점업 |
| ⑨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⑩ 금융 및 보험업 |
| ⑪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
| ⑫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⑬ 교육 서비스업 | ⑭ 보건 및 사회복지업 |
| ⑮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
| ⑯ 가사 서비스업(예: 파출부) | ⑰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B14.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 후 취업한 첫 직장에서 귀하의 직종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 | |
|--------------------------|--------------|
| ①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② 전문가 |
|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 ④ 사무직원 |
| ⑤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 |
| ⑥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 |
| ⑧ 장치,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⑨ 단순 노무직 근로자 |

B15.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 후 취업한 첫 직장의 전체 종업원 수 (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제외)는 얼마나 됩니까?

-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 ~49인
- ⑤ 50~69인 ⑥ 70~99인 ⑦ 100~299인 ⑧ 300~499인
- ⑨ 500~999인 ⑩ 1,000인 이상 ⑪ 없음

B16.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 후 취업한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 ② 자기사업을 하려고
- ③ 결혼, 육아, 가사, 거주지 변경, 노약자 간호, 자녀교육 등의 집안사정으로
- ④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⑤ 징계해고
- ⑥ 학업, 병역 또는 휴식 등 기타 개인사정으로
- ⑦ 임금, 근로조건, 근로내용이 맞지 않아서
- ⑧ 직장 내 왕따와 같은 차별적인 대우 또는 성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
- ⑨ 폐업, 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 ⑩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 ⑪ 인원감축을 위한 명예퇴직, 권고사직
- ⑫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안 되어서
- ⑬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 ⑭ 임금 및 근로조건이 악화
- ⑮ 회사의 경영악화 또는 감원이 예상되어
- ⑯ 결혼·임신·출산·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이 있어서
- ⑰ 정년퇴직
- ⑱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 ⑲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 ⑳ 기타 _____

B17. 귀하께서는 지금 일자리(임금근로, 자영업, 무급으로 가족이나 친

지의 일을 돕는 것 포함)를 가지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 B18로 가세요
- ② 아니다 → 미취업자 설문(F1)으로 가세요

B18. 현재 일하시는 곳(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 _____년 _____월

B18-1. 귀하께서는 현재 일하시는 곳(직장) 바로 이전의 일자리를 떠난 뒤 현재 일하시는 곳(직장)에 취업하기까지의 구직활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이직 후 현재 일하는 곳(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 ②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다말다 (간헐적으로) 하였다.

B18-2. 귀하께서 직전 직장에서 이직한 후 현재 직장을 구할 때까지 몇 군데나 알아보았습니까? (입사원서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알아본 횟수를 답하여 주십시오)

■ _____군데

B19. 현재의 직장에서 귀하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설문(C1)으로 가세요
☞ 타인, 혹은 회사에 고용되어 돈을 받고 일하는 것. 직장,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모두 포함.
- ② 자기사업 → 자영업자 설문(D1)으로 가세요.
☞ 개인사업, 프리랜서, 농림수산업 등을 포함.
- ③ 돈을 받지 않고 가족 또는 친지의 사업을 도움 → 무급가족종사자 설문(E1)로 가세요.

C. 임금근로자 설문

- 수입(소득)을 얻기 위해 현재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에는 가장 주된 일(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2001년 8월 현재)

C1. 현재 일하시는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용어풀이

- 정규직 :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일하는 것이 가능한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
- 임시직 :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계약직이거나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어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 매일매일의 필요에 의하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어 근로하는 자

- ① 정규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C2. 현재 일하시는 직장에서의 근무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용어풀이

- 전일제 근무 : 몇 시간이나 일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경우
- 시간제 근무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일을 시작할 때 몇 시간이나 일(근무)할 것인지 미리 정한 경우, 수시로 시간날 때마다 일하는 경우도 포함됨

- ① 전일제 근무 → C3로 가세요
② 시간제 근무 → C2-1로 가세요

C2-1. 귀하께서는 계속 시간제 근무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C2-2. 귀하께서는 평소 시간제 근무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전일제 일자리를 찾기 전에 임시적으로
- ② 일거리가 없어서
- ③ 업무(사업)의 특성상
- ④ 육아
- ⑤ 가사
- ⑥ 학업
- ⑦ 건강 등의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 ⑧ 생활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포장마차 등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
- ⑨ 기타 _____

C3. 현재의 직장에서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 월 평균 _____만원(떡값, 휴가비 등을 비롯한 상여금 포함, 세금 제외)

C4. 현직장의 업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본인은 금융업무를 보더라도 회사가 제조회사이면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 ① 농업, 수렵업 및 임업
- ② 어업
- ③ 광업
- ④ 제조업
- 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⑥ 건설업
- ⑦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⑧ 숙박 및 음식점업
- ⑨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⑩ 금융 및 보험업
- ⑪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⑫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⑬ 교육 서비스업
- ⑭ 보건 및 사회복지업
- ⑮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⑯ 가사 서비스업(예: 파출부)
- ⑰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C5. 현직장에서 귀하의 직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② 전문가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4)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의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8) 인사고과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9) 복지후생	①	②	③	④	⑤

C9-1. 그럼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C10. 현재의 직장을 계속 다닐 생각이십니까?

- ①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한다
② 현재의 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한다
③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
④ 현재의 자리에 추가하여 다른 일자리를 가지고 싶다
⑤ 다른 자리로 바꾸고 싶다

C11. 귀하는 주된 직장 이외에 부업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C11-1로 가세요
② 아니오 → 2000년 4월~6월에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G1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H1으로 가세요

C11-1. 부업을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 가지

C11-2. 부업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만원

C11-3. 부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된 직장의 임금이 낮아서
- ② 장래의 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 ③ 취미 등 비경제적인 이유로
- ④ 기타 _____

C11-4. 앞으로도 부업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2000년 4월~6월에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G1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H1으로 가세요.

D. 자영업자 설문

- 수입(소득)을 얻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에는 가장 주된 일(사업)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2001년 8월 현재)

D1.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사업장에는 고용된 종업원이 있습니까? (임금·봉급을 받는 가족이나 친지도 고용된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 ① 있다 → D1-1로 가세요 ② 없다 → D2로 가세요.

D1-1. 그러면 고용된 종업원의 수는 평소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농번기나 바쁠 때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 모두 _____명

D2. 현재의 사업(일)에서 얻는 소득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소득 월평균 _____만원
 ②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D3. 현재의 사업은 어느 업종에 해당됩니까?

- | | |
|----------------------|--------------|
| ① 농업, 수렵업 및 임업 | ② 어업 |
| ③ 광업 | ④ 제조업 |
| 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⑥ 건설업 |
| ⑦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⑧ 숙박 및 음식점업 |
| ⑨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⑩ 금융 및 보험업 |
| ⑪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
| ⑫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⑬ 교육 서비스업 | ⑭ 보건 및 사회복지업 |
| ⑮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
| ⑯ 가사 서비스업(예: 파출부) | |

⑰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D4. 귀하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 ① 그렇다 → D5로 가세요
- ② 그렇지 않다 → D4-1로 가세요

D4-1. 그러면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어떠한 것입니까?

- ① 가능하면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이다
- ② 가능하면 부업을 가질 생각이다
- ③ 여건이 된다면 취직을 할 생각이다
- ④ 기타 _____

D5. 귀하는 주된 사업 이외에 부업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D5-1로 가세요
- ② 아니오 → 2000년 4월~6월에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G1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H1으로 가세요.

D5-1. 부업을 몇 가지나 하고 계십니까? () 가지

D5-2. 부업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만원

D5-3. 부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된 직장의 임금이 낮아서
- ② 장래의 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 ③ 취미 등 비경제적인 이유로
- ④ 기타 _____

D5-4. 앞으로도 부업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000년 4~6월에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G1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H11으로 가세요.

E. 무급가족종사자 설문

(2001년 8월 현재)

E1. 귀하께서는 일주일에 며칠 정도 일을 하십니까? 또 일하시는 날의 경우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십니까?

- 일주일에 _____ 일
- 하루 평균 _____ 시간

E2. 귀하께서 현재 일하는 사업장(일터)에는 고용된 종업원이 있습니까?(임금·봉급을 받는 가족 또는 친지도 고용된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 ① 있다 → E2-1로 가세요
- ② 없다 → E3로 가세요.

E2-1. 그러면 고용된 종업원의 수는 평소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농번기나 바쁠 때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 모두 _____ 명

E3. 현재 일하시는 곳의 업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본인은 금융업무를 보더라도 회사가 제조회사이면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 ① 농업, 수렵업 및 임업
- ② 어업
- ③ 광업
- ④ 제조업
- 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⑥ 건설업
- ⑦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⑧ 숙박 및 음식점업
- ⑨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⑩ 금융 및 보험업
- ⑪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⑫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⑬ 교육 서비스업
- ⑭ 보건 및 사회복지업
- ⑮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⑯ 가사 서비스업(예: 파출부)
- ⑰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E4. 귀하께서는 무보수로 이 사업을 계속 도울 계획이십니까?

- ① 그렇다 → 2000년 4~6월에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G1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H1으로 가세요
- ② 그렇지 않다 → E4-1로 가세요

E4-1. 그러면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어떠한 것입니까?

- ① 가능하면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이다.
- ② 여건이 된다면 취직을 할 생각이다.
- ③ 이곳에서 유급으로 전환될 것이다.
- ④ 기타 _____

E4-2. 그렇다면 현재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2000년 4~6월에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G1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H1으로 가세요.

F. 미취업자 설문

(2001년 8월 현재)

F1. 귀하께서는 가장 최근에 있던 직장에서 이직하신 뒤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F2로 가세요 ② 없다 → F3으로 가세요

F2. 가장 최근에 있던 직장에서 이직하신 이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 오셨습니까?

- ① 이직 후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 F2-2로 가세요
②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다말다(간헐적으로) 하였다 → F2-1로 가세요
③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 F2-1로 가세요

F2-1. 귀하께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의 교육, 기술, 경험에 적합한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② 원하는 임금수준에 맞는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③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④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자리(직장)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⑤ 구직결과를 기다림
⑥ 실업급여를 모두 받고 취업하려고
⑦ 가사일때문에
⑧ 건강상 이유로
⑨ 통학
⑩ 기타 _____

F2-2.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있던 직장에서 이직 후 현재까지 구직활동을 한 기간을 모두 합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월 단위로 끊어서 답해 주십시오.

- □□ 개월(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했으면 1개월 구직활동 한 것임)

F2-3.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있던 직장에서 이직 후 현재까지 몇 군데나 알아보았습니까? (입사원서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알아본 횟수를 답하여 주십시오)

- □□ 개소

F2-4. 귀하께서는 가장 최근에 있던 직장에서 이직하신 뒤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의 교육, 기술, 경험 등이 취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 ② 본인이 희망하는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사업주가 제시하는 수준과 너무 차이가 커서
- ③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 자체가 너무 부족하여
- ④ 가사일때문에
- ⑤ 건강상의 이유로
- ⑥ 학교나 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 ⑦ 연로, 퇴직, 심신장애로 쉬기 위해
- ⑧ 당분간 쉬고 싶어서
- ⑨ 기타 _____

F3. 직장 또는 자영업으로 취업 또는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F4로 가세요 ② 아니오 → F13으로 가세요

F4.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⑤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 ⑥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 ⑦ 기타 _____

F6. 새로운 일자리(직장)에서의 수입은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까?

- 월 평균 □□□ 만원(떡값, 휴가비 등을 비롯한 상여금 포함, 세금 제외)

F6-1. 새로운 일자리(직장)에서의 수입은 적어도 얼마는 되어야 일하겠습니까?

- 월 평균 □□□ 만원(떡값, 휴가비 등을 비롯한 상여금 포함, 세금 제외)

F7. 새로운 일자리(직장)를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주세요) □□□

- ①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② 친구·친지의 소개
- ③ 공공직업안내소(워크넷 포함)를 통해서
- ④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⑤ 신문·TV·벽보·생활정보지 등의 구인광고
- ⑥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⑦ 가족을 통하여
- ⑧ 인터넷·하이텔 등 전산망을 통하여
- ⑨ 자영업 준비
- ⑩ 기타 _____

F8. 귀하께서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시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할 경우는 '① 생활비를 벌려고'에 해당합니다)

- ① 생활비를 벌려고
- ②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 ③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 ④ 자신의 발전을 위해
- ⑤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 ⑥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 ⑦ 기타 _____

F9. 일거리(직장)를 구하기 위해 구직기간 동안 몇 군데나 알아보았습니까?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간 횟수를 답하여 주십시오)

■ □□ 회

F10. 구직기간 동안 일거리 또는 직장을 제의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전제하에 소득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간 경우만이 포함됩니다.)

- ① 있다 → F10-1로 가세요
- ② 없다 → F11로 가세요.

F10-1. 몇 번이나 제의를 받았습니까?

■ □□ 번

F10-2. (가장 최근에 받은 제의에 대해)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급여 또는 수입이 적어서
- ②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서
- ③ 적성, 기능, 경험 등과 맞지 않아서
- ④ 기업규모가 적어서
- ⑤ 일이 임시적이어서
- ⑥ 장래성이 없어
- ⑦ 더 좋은 직장이나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 ⑧ 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 ⑨ 육아문제로 인해서
- ⑩ 기타 _____

F11. 취업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희망하는 조건대로 곧 취업될 것이다.
- ② 희망하는 조건대로 취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 ③ 희망하는 조건을 낮추면 곧 취업될 것이다.
- ④ 희망하는 조건을 낮추더라도 취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 ⑤ 희망하는 조건을 낮추더라도 취업이 어려울 것이다.

F12. 다음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 들입니다. 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임금 근로를 희망하시는 분은 (8)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9)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직상의 어려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3) 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①	②	③	④	⑤
(4) 경험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6)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이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F13. 가장 최근에 있던 직장에서 이직 후 얼마의 기간 동안 부채를 지지 않고 퇴직금 및 저축(예금, 주식, 보험 포함)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 ① 3개월 이하 ② 4~6개월 이하
- ③ 7~9개월 이하 ④ 1년
- ⑤ 1년 이상

→ 2000년 4~6월에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G1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H1으로 가세요.

- ③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기 위해서
- ④ 금방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⑤ 자영업 준비를 위해서
- ⑥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까다롭고 귀찮아서
- ⑦ 우선 구직활동을 해본 후 나중에 천천히 신청하려고
- ⑧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체면에 손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 ⑨ 기타 _____

G2-3.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퇴직금
- ② 그동안 해 놓은 저축 등으로
- ③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수급해서
- ④ 친지 및 친구 등의 도움
- ⑤ 금융기관 융자
- ⑥ 사채를 통해
- ⑦ 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 ⑧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의 참가로
- ⑨ 공공근로, 자영업창업지원, 가계안정자금대부 등 정부의 실업대책사업을 통해
- ⑩ 배우자 등 가구원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서

G3. 귀하께서는 법으로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워서 수급하셨습니까?

- ① 예 → G3-1로 가세요 ② 아니오 → G3-6으로 가세요

G3-1.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워서 수급하게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 ② 일자리를 제의는 받았지만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

- ③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없어서
- ④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고 취업하기 위해서

G3-2.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워서 수급하신 뒤의 생계는 어떤 방법으로 유지하셨습니까?

- ① 퇴직금
- ② 그동안 해 놓은 저축 등으로
- ③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수급해서
- ④ 친지 및 친구 등의 도움
- ⑤ 금융기관 융자
- ⑥ 사채를 통해
- ⑦ 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 ⑧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의 참가로
- ⑨ 공공근로, 자영업창업지원, 가계안정자금대부 등 정부의 실업대책사업을 통해
- ⑩ 배우자 등 가구원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서

G3-3.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워서 수급하신 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만원

G3-4.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워서 수급하신 뒤(또는 거의 수급이 끝나갈 때쯤부터)의 귀하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노력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종전보다 매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 ②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 ③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 ④ 종전보다 소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 ⑤ 종전보다 매우 소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G3-5.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한 이후 재취업한 경우) 귀하는 실업급

여를 소진한 이후 얼마 만에 새로운 직장(자영업 포함)에 취업
하였습니까? □□□ 주 → G4로 가세요.

G3-6. 실업급여를 정해진 일수만큼 받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임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어서
- ② 자영업을 시작해서(자영업 준비 포함)
- ③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구직활동의 의지가 떨어져서
- ④ 정해진 날짜마다 출석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적어가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 또는 귀찮음 때문에
- ⑤ 고용안정센터의 불친절, 인격 모독 등을 참을 수 없어서
- ⑥ 기타 _____

G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연장급여수급기간 제외)

- ① 매우 짧다 ② 짧은 편이다 ③ 적당하다
- ④ 긴 편이다 ⑤ 매우 길다

G5. 실업급여액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적은 편이다 ③ 적당하다
- ④ 많은 편이다 ⑤ 매우 많다

G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주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서 지
난 2주 동안의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
다. 귀하는 이러한 구직활동을 확인받는 실업인정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G6-1로 가세요 ② 아니오 → G7로 가세요

G6-1. 가장 불편한 점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서식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다.
- ② 담당자에 따라 실업인정기준이 다르다.
- ③ 상담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 ④ 상담원이 지나치게 불친절했다.
- 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빈도가 너무 잦다.
- ⑥ 고용안정센터가 너무 먼 곳에 있었다.
- ⑦ 개방된 공간에서 상담원과의 상담이 불편했다.
- ⑧ 연령이나 종전의 직업과 관계없이 너무 경직적이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 ⑨ 피용자로서 재취업하는 것만 인정하고 자영업, 창업 준비활동을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⑩ 알아볼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었는데도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가야만 했다.
- ⑪ 원하지 않는데도 반드시 취업상담을 받아야 했다.
- ⑫ 기타 _____

G7.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행하는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실업인정) 이 일자리를 열심히 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G8. 귀하께서는 실업인정시 지난 2주간 몇 회의 구직활동을 해올 것을 요구받으셨습니까? □□회

G9.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때, 취업알선창구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소개받았다. → G9-1로 가세요.
- ② 가끔 소개받았다. → G9-1로 가세요.
- ③ 전혀 소개받은 적이 없다. → G10로 가세요.

G12-1.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까?

- ① 퇴직금
- ② 그동안 해 놓은 저축 등으로
- ③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수급해서
- ④ 친지 및 친구 등의 도움
- ⑤ 금융기관 융자
- ⑥ 사채를 통해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 ⑧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의 참가로
- ⑨ 공공근로, 자영업창업지원, 가계안정자금대부 등 정부의 실업대책사업을 통해
- ⑩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 중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서

G13. 귀하께서는 지난 2000년 4월~6월에 이직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1주일 이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G13-1로 가세요
- ② 없다

G13-1.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은 어떻게 됩니까?(두 개 이상 받은 경우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훈련기간 : ____년 ____월 ____일~____년 ____월 ____일
- 훈련시간 : 훈련기간 중 1주일에 평균 ____일, 훈련받은 날에 하루 평균 ____시간

G13-2. 귀하는 훈련을 수료하셨습니까?

- ① 수료
- ② 중도탈락
- ③ 현재 훈련을 받는 중

G14. 귀하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상담원의 권유

- ⑧ 더이상 구직활동을 할 생각이 없어서
- ⑨ 자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 ⑩ 실업자대부, 공공근로 등 다른 실업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 ⑪ 기타 _____

H3. 2000년 4~6월 사이에 이직 후 실직기간에 생계는 어떤 방법으로 유지하셨습니까?

- ① 퇴직금
- ② 그동안 해 놓은 저축 등으로
- ③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수급해서
- ④ 친지 및 친구 등의 도움
- ⑤ 금융기관 융자
- ⑥ 사채를 통해
- ⑦ 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 ⑧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의 참가로
- ⑨ 공공근로, 자영업창업지원, 가계안정자금대부 등 정부의 실업대책사업을 통해
- ⑩ 배우자 등 가구원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서

H4. 귀하께서는 지난 2000년 4~6월에 이직 후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1주일 이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H4-1로 가세요.
- ② 없다

H4-1.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은 어떻게 됩니까?(두 개 이상 받은 경우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훈련기간 : ____년 ____월 ____일 ~ ____년 ____월 ____일
- 훈련시간 : 훈련기간 중 1주일에 평균 ____일, 훈련받은 날에 하루 평균 ____시간

I. 경제활동상태변화 종합(수급자·비수급자 공통)

II. ___님의 2000년 이직 이후의 경제활동상황을 매 월별로 보기에 따라 분류해 주십시오.

※ 동일한 달에 여러 상태가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상태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 (1) **취업** :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상태(임금근로, 자영업이나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경우 포함)
 (2) **실업** : 본인이 해당 월에 1회 이상 일자리를 구해본 상태
 (3) **비경제활동** : 취업도 아니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있지 않는 상태

II-1. 2000년 4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2. 2000년 5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3. 2000년 6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4. 2000년 7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5. 2000년 8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6. 2000년 9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7. 2000년 10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8. 2000년 11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9. 2000년 12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10. 2001년 1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11. 2001년 2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12. 2001년 3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13. 2001년 4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14. 2001년 5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15. 2001년 6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16. 2001년 7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II-17. 2001년 8월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 J1으로 가세요.

▶ 과거 2년제 교육대학교는 현재로 소급하여 '4년제 대학교'로 구분합니다.

J10-1. 그 학교를 마치셨나요? 이수 여부를 답해 주십시오.

- ① 졸업 ② 수료 ③ 중퇴
- ④ 재학중 ⑤ 휴학중

J10-2. 학교에서 전공은 다음 중 어떤 계열에 해당합니까?

- ① 인문사회계열(인문고 및 법학전공포함)
- ② 예체능계열 ③ 사범계열
- ④ 경상계열(상고 및 경제·경영학 전공)
- ⑤ 농수산계열(농수산고 및 농·수산학 전공)
- ⑥ 공업계열(공고 및 공학전공)
- ⑦ 자연계열 ⑧ 의약계열

J11. 귀하는 기사나 기능사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예 → J11-1로 가세요.
- ② 아니오

J11-1. 자격등급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기사1급 ② 기사2급
- ③ 다기능기술자 ④ 기능사1급
- ⑤ 기능사2급 ⑥ 기능사보
- ⑦ 기타 _____

J11-2. 귀하는 자격증과 유관 분야에서 주로 근로해 오셨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